

연구보고 96-10

國民法意識調査研究(IV)

法専門家の 法意識調査 研究

1996. 12.

研究者 : 朴相哲(首席研究員)
 金日煥(先任研究員)
 崔哲榮(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刊辭

法意識(legal consciousness)에 관한 개념은 용어 자체가 지니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법의식 조사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변화의 양상과 이에 따른 法治主義 정착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치주의’라는 마차가 파행을 그리지 않고 온전히 운행되기 위해서는 ‘合法性’과 ‘正當性’이라는 두 바퀴가 잘 작동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의식’이라는 마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법의식의 현주소와 변화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다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입법 및 법집행 방향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국민법의식조사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법의식변화의 양상과 이에 따른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법의식 못지 않게 바로 법관계자, 즉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 법학도, 기타 법률종사자의 법의식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의 제정·법의 해석 및 적용·법의 집행의 방향은 주로 이들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국민법의식에 대한 조사가 완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1991년과 1994년의 국민법의식조사에 이어 1996년도에는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에 있어서는 법관계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들의 입법과정 및 법집행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파악하며 일반국민에 대한 법관계자의 요망사항과 입법의견을 집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향후 한국인의 법의식 및 법률문화이론의 정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법의식제고 및 법치주의의 확립방안을 찾게 하며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설문지의 작성과 현장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의 분석을 위해 애써주신 연구담당자와 현장조사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韓國法制研究院長
法學博士 朴松圭

目 次

I. 序 論	13
1. 法意識과 法治主義	13
1) 法意識調査研究의 目的	13
2) 法專門家의 法意識調査必要性	15
2. '96法專門家法意識調査의 內容·方法·過程	18
1) 調査의 內容	18
2) 調査의 方法 및 過程	18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21
1. '94國民法意識調査와 比較	21
1) 價値觀 變化의 比較	22
2)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의 比較	24
3) 法生活의 比較	26
4)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의 比較	43
5)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의 比較	48
2. 法專門家 法意識의 特徵	55
III. 社會變動과 價値觀의 變化	59
IV. 法專門家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	65
1. 法에 대한 印象	66
2. 紛爭解決方法으로서의 法의 選擇	68
3. 脫法行爲者에 대한 評價	70
V. 法專門家의 法生活	73

1. 法生活과 法的 經驗	73
1) 法認知 經路	74
2) 法認知 欲求	77
3) 法教育	80
4) 法的 經驗	85
5) 法知識	88
2. 遵法精神과 權利意識	92
1) 遵法精神	93
2) 告發精神	107
3) 權利意識	114
3. 法의 使用能力	117
1) 法의 使用能力	118
2) 紛爭의 解決方法	121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125
1.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126
2. 司法權의 獨立	132
3.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139
 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145
1. 現實에 맞지 않는 法	146
2. 選舉改革과 選舉法	152
3. 憲法改正의 問題	156
4. 21世紀에 대비한 法制發展方向	158
 VIII. 結論 : 綜合的 評價	161

【부 록】

I. 조사의 개요	167
II. 응답자의 특징	168
III. 기본빈도표	170
IV. 교차집계표	190
V. 설문지	239

표 목 차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가치관 변화의 비교	23
【표 3】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의 비교	24
【표 4】 법생활과 법적 경험의 비교	27
【표 5】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의 비교	32
【표 6】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비교	41
【표 7】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비교	44
【표 8】 사법권의 독립 비교	47
【표 9】 사법제도의 개혁	48
【표 10】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비교	50
【표 11】 여성의 법률상 지위	59
【표 12】 여성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60
【표 13】 법에 대한 인상	66
【표 14】 법에 대한 연령·직업·소득·성향별 인상	67
【표 15】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68
【표 16】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69
【표 17】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70
【표 18】 탈법행위자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71
【표 19】 법인지 경로	74
【표 20】 연령·직업·소득별 법인지 경로	75
【표 21】 법인지 욕구	77
【표 22】 법인지 욕구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77
【표 23】 법교육	80

【표 24】 법교육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82
【표 25】 법적 경험	85
【표 26】 소송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86
【표 27】 연령·직업·소득·지역규모별 응답	87
【표 28】 법지식	88
【표 29】 연령·직업·소득·지역규모별 법지식	89
【표 30】 준법질서	93
【표 31】 준법질서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95
【표 32】 분야별 법준수도	99
【표 33】 분야별 법준수도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100
【표 34】 고발정신	107
【표 35】 고발정신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107
【표 36】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109
【표 37】 범죄에 대한 성·연령·소득·성향별 반응	110
【표 38】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령·소득·성향별 반응	113
【표 39】 권리의식	114
【표 40】 권리의식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115
【표 41】 법의 사용능력	118
【표 42】 법의 사용능력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119
【표 43】 분쟁의 해결방법	121
【표 44】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122
【표 45】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26
【표 46】 입법과정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128
【표 47】 사법권의 독립	132
【표 48】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134
【표 49】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연령·직업별 반응	137

【표 50】 법집행기관에 대한 반응	139
【표 51】 법집행기관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140
【표 52】 현실에 맞지 않는 법	146
【표 53】 현실성 없는 법분야에 대한 연령·계층·소득·직업별 반응 ...	147
【표 54】 동성동본금흔 및 낙태규정에 대한 연령·소득· 직업별 반응	148
【표 55】 선거개혁과 선거관계법	152
【표 56】 선거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연령·직업·소득별 반응	153
【표 57】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우선순위	156
【표 58】 헌법을 개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령·직업·소득·계층별 반응	157
【표 59】 21세기에 대비한 법제발전방향	158
【표 60】 21세기 법제발전방향에 대한 (연령·직업·소득·계층별 반응)	159

I. 序論

1. 法意識과 法治主義

1) 法意識調査研究의 目的

法意識(legal consciousness, Rechtsbewußtsein, conscience juridique)에 관한 개념은 용어 자체가 지니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개념인 法感情(legal feeling, Rechtsgefühl), 法文化(legal culture, Rechtskultur)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나누어져 있어서 개념정의에 있어서 정론적인 입장은 없다.¹⁾ 그러나 국민법의식조사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법의식변화의 양상과 이에 따른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의식과 법감정 또는 법문화를 개념상 구분짓는 것은 조사의 목적상 별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서 법의식의 개념을 가급적 넓게 해석하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평가적·감정적인 심리상황 즉, 법적 인식·법적 가치판단·법감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짓는 것이 무난하다. 이 경우 법의식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법의 인지를 기초로 하여 실정법 및 일반적 법상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계층상황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견해의 채색판²⁾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식은 정치적 공개작업에 의하여, 입법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사회제도에 의하여, 대중매체에 의하여, 그리고 집단적 계층문화의 구성원에 의하여 표현됨과 동시에 법적 공동체의 합의의 중심축 내지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광범위하게 공감하는 법의식이 존재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사회의 작동장치로서의 수많은 법제도들은 일정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지만 그것의 정당한 사회적 가치의 유지는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통적인 인식과 노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법치주의라는 원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

1)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94 國民法意識調査研究, 16면 이하 참조.

2) Von András Sajó, "Rechtsbewußtsein oder Meinungen vom Recht?", Rechtstheorie 12 (1981) S.30f.

I. 序論

하여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양축 외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法治主義’라는 마차가 달리기 위하여는 ‘合法性’과 ‘正當性’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法意識’이라는 마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법의식은 결국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며 동시에 그 힘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이므로 법치주의 원리의 정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국민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 비롯된다. 만약 법의식의 현주소와 변화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다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입법 및 법집행 방향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法意識은 法制度와는 달리 급변하지 않으며 역사와 사회변동에 따라 형성되어 가는 특성을 갖는다. 법제도의 근대화 내지 선진화는 그 유도가 가능하나 법의식까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법제도와 법의식간의 괴리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법의식조사연구의 제일차적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법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불가결하다. 가정 및 학교교육은 물론 대중언론매체·국가기관의 입법 및 법집행·법선언 등도 각각 법의식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도 결국 그 사회의 가치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되어 지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1년과 '94년의 國民法意識調査에서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그 동안의 평가와 기존조사 결과³⁾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 유교적 문화유산과 전통, 일제식민화과정, 해방과 민족분단, 60년대 이후 근대화과정과 70년·80년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둔 법의식조사로서 法意識의 現在性을 도외시

3)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1968, 11); 이태재, “우리나라 법의식에 관한 소고”, 『최해태박사학갑기념논문집』(사회과학 1, 1969. 3);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국제문화재단, 1975. 12);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연세대학교, 1982); 이근식 외 3인,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의식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연구논총』(새마을연구회, 1982); 차용석 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2); 어인의 외 6인, “법의 민주화와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김영철, “농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조』(1973. 5. 6).

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법의식 형성과정은 근대법제의 도입 및 발전과정과 비교할 때 그 속도나 발전방향에 있어서 동일한 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의식 조사가 법제도적 측면에서와 같이 固有性과 近代性의 비교에 집착한 나머지 法意識의 社會性 조명에 소홀한 점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법치주의 이념의 실현은 법제도와 법의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즉, 법의식은 법제도가 작용하기 위한 배경 또는 여건을 형성한다. 특히 서구적인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국민생활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법의식의 현대화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가 되고 있다. 요컨대 법의식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법치주의의 실현여부가 좌우되며, 법치주의는 국민의 법의식수준과 비례관계를 맺으면서 실현될 것이다.

2) 法專門家의 法意識調査必要性

이미 '94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법의식조사연구는 국민법의식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유형이외에도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정법령에 대한 국민의 반응조사, 법관계자의 법의식 및 입법의견조사, 주요 법령 제정시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사전여론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법의식조사는 국제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차원의 법의식조사비교 연구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남북한 주민간의 법의식 비교조사나 해외동포의 법생활 내지는 법의식에 관한 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설명된 것처럼 법의식은 정치적 공개작업에 의하여, 입법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사회제도에 의하여, 대중매체에 의하여, 그리고 집단적 계층문화의 구성원에 의하여 표현됨과 동시에 법적 공동체의 합의의 중심축 내지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광범위하게 공감하는 법의식이 존재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야말로 참다운 법치사회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法의 支配'는 법치국가가 지니는 강점으로서 정

I. 序論

상적인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한다.

결국 국민법의식조사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법의식변화의 양상과 이에 따른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의식 못지 않게 바로 법관계자(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각부처 법제담당자, 법학도, 기타 법률종사자)의 법의식 또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에 관건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입법·법적용·법해석의 방향은 주로 이들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⁴⁾ 비로소 국민법의식의 조사가 완결된다. 이를 위하여 법관계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들의 입법과정 및 법집행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반국민에 대한 법관계자의 요망사항과 입법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전문가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고찰해 보아야만 한다. 우선 우리 주변에는 법을 다루거나 법률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관계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넓은 의미의 법관계자에는 법원이나 검찰의 직원, 경찰, 법무사 뿐만 아니라 교도관이나 심지어는 원고나 피고와 같은 소송인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법원이나 검찰의 직원, 경찰, 법무사와 같이 실무상 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판사나 검사 또는 교수와 같은 “법전문가”로부터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법무서류의 작성 및 법무서류의 제출대행과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한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무경력자인 법무사가 취급한다. 이렇게 법무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소송절차나 법무서류 및 등기·공탁사건은 방대함에도 변호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변호사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사는 위에 언급된 사항만을 다룰 수 있을 뿐, “상담”, “자문” 등의 업무는 그 업무내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넓은 의미의 법관계자에는 “법전문가”가 포함되나, 이들이 하는 업무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전문가”란 법적

4) 법조인의 법의식과 관련된 기존조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들은 법관계자의 사회적 배경이나 속성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Yi Chang-Hyon, "Sociological Approaches on Lawyers in Korea", Korea Journal (October, 1972); 유상호, "한국판사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사법행정』(1971. 3~5); 이석진, "한국법관의 실태조사", 『사법연구자료』, 제3집(1976. 2).

분쟁을 해결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배우며, 시험제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여서, 이렇게 획득한 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의뢰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렇게 법적 절차나 지식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알고,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조언 및 상담 등을 하는 법전문가들이 법치국가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⁶⁾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의식조사란 보통 “일반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분야의 조사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법의 수용자인 일반국민의 법의식조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조사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우선 일반국민이 자기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손쉽고 풍부하게 구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정치질서형성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사회가 실질적인 법치주의사회이다. 이렇게 법률의 생활화와 전문화가 민주법치국가건설을 위하여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서로 보충해야 한다면,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의식 못지 않게 바로 법관계자, 특히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병행하여 조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서구법을 계수한 나라에서는 현실과 법의 괴리가 매우 넓다. 그렇다면 이를 막연히 “일반국민”이 법에 무지하여서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법전문가가 이러한 괴리현상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 또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구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일반국민”과 “법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 또한 법치주의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원이 최초로 본격적이고 심도있게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조사하게 되었다.

5) 법전문가의 비판적인 설명에 관하여는 Roger Cotterrel, *The Sociology of Law*, Butterworths, 1984, p.189 이하 참조.

6) 이에 관하여는 Niklas Luhmann,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 Suhrkamp, S. 173 이하 참조.

1. 序論

2. '96法專門家法意識調査의 内容·方法·過程

1) 調査의 内容

본 연구는 '한국법전문가'의 '1996년' '법의식'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96 본조사의 설문내용은 그 항목이나 구성에서 '91조사 및 '94조사와 많은 부분은 일치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간 법의식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이 법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외 많은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하였다.

'96본조사의 조사영역은 크게 1)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2) 법전문가의 법생활, 3) 법전문가의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4) 법전문가의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 네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및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인상·법규범력의 좌표 및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몇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법전문가법의식의 행동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생활화의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법생활과 법적 경험(법인지경로·법인지욕구·법교육·법적 경험·법지식),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준법정신·권리의식),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등이다.

셋째, 법전문가의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를 묻고자 국회와 행정부를 법정립기관, 행정관청·경찰서·검찰청·법원 등을 법집행기관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넷째, 현행법령에 대한 법전문가의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 헌법·선거법·민법·형법 등에 관한 문제를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2) 調査의 方法 및 過程

설문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원이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의 교수 및 법조인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하는 방식을 철칙으로 하

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법전문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5급 이상의 각종 행정공무원과 사법연수원생, 박사과정학생이 조사대상이었다.⁷⁾ 현지조사에서는 본원의 연구진과 지방대학 법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심층조사원으로, 해당 조사지역의 대학생들이 면접조사원으로 수고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에서는 설문문항별 교차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독립변수로서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성·연령·학력·직업·본인 및 가족의 한달평균소득·혼인여부·종교·성장지(만 20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 및 지역 및 규모·직종종사기간·생활수준·성향 등을 설정하였다.⁸⁾ 여기에서 수집된 설문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별 교차분석에 무가치한 문항은 버리고 일부조정이 필요한 변수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는데 이는 본 조사에 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단위 : %(명)

항목 특성	구 분									합계		
	분 포											
연 령	20대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50대 이상		100.0 (797)	
	15.8(126)		24.9(198)		23.9(191)		24.6(196)		10.8(86)			
직 업	교수등	선관위	당 정 책 위 원	국 회 공 무 원	행 정 공 무 원	판 사	검 사	변 호 사	사 법 연 수 원 생	박 사 과 정	100.0 (800)	
	18.7 (150)	6.3 (50)	2.5 (20)	10.0 (80)	12.5 (100)	6.3 (50)	6.3 (50)	12.5 (100)	12.5 (100)	12.5 (100)		

7) 다만 여기서 설명해야만 할 것은 사법연수원생과 박사과정학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사법연수원생과 박사과정학생은 아직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곧 법전문가가 될 예비법전문가이기에 이러한 예비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조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8) 부록II 응답자의 특성을 참조할 것.

I. 序論

항목 \ 특성	구 분					합계			
	분포								
종사기간	5년미만		5~9년		10~9년		20년이상	100.0	
	40.0(317)		23.4(186)		26.9(213)		9.7(77)	(793)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100.0		
	22.3(176)	23.5(185)	31.8(251)	11.4(90)	4.7(37)	6.3(50)	(789)		
계층의식	상		중		하		100.0		
	15.8(126)		73.0(582)		11.2(89)		(797)		
성향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100.0		
	15.7(125)		57.2(455)		27.1(216)		(796)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이하		100.0		
	55.0(437)		23.3(185)		21.7(172)		(794)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1. '94國民法意識調査와 比較

1994년의 국민법의식조사연구는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라는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와 기존의 법의식조사결과¹⁸⁾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조사당시 우리 사회는 문민정부의 수립을 계기로 8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民主化의 轉換期가 定着期에 들어서고 참여적 시민문화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민주화과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혁을 일으켰으며, 이는 국민법의식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양승두교수의 1965년 조사, 임희섭교수의 1972년 조사, 그리고 이근식교수 외 3인의 1981년 조사¹⁹⁾와 '91조사를 비교·검토한 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둘째, 권리의식이 신장된 반면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며 셋째,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법치주의 실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고 권리의식의 신장은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이어질 때 사회의 탈·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집결되어 법치주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준법정신의 결여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국민법의식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후기산업사회문화의

18)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1968, 11); 이태재, "우리나라 법의식에 관한 소고", 『최해태박사화갑기념논문집』(사회과학 1, 1969. 3);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국제문화재단, 1975. 12);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연세대학교, 1982); 이근식외 3인,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의식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연구논총』(새마을연구회, 1982); 차용석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2); 어인의외 6인, "법의 민주화와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김영철, "농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조』(1973. 5. 6).

19)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기존의 조사와 '91조사의 비교에 있어서 변화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전국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할 것, ② 설문내용이 법의식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물음일 것, ③ 시대변천에 따른 법의식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위의 세 조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법경시풍조와 기존제도 및 질서에 대한 부정일변도 현상과 맞물릴 경우 사회혼란은 증폭되고 법치국가 실현은 요원하여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시민의 건전한 비판정신의 소생과 활성화가 강조되어야 하며, 이것이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과 조화를 이룬다면 법치주의의 정착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예상과 진단이 가능하였다.

'91 및 '94조사에 있어서 그 진단항목으로 크게 1)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2)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3) 국민의 법생활, 4)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5)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비하여 '96본조사의 조사영역은 크게 1)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2) 법전문가의 법생활, 3) 법전문가의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5) 법전문가의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 네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문내용과 응답의 단순빈도를 '96본조사와 비교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價値觀 變化의 比較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한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항을 비교하여 볼 때 기본빈도의 분포는 '94조사와 반대로 '96본조사의 경우 여성의 취업 및 승진에서 법률상 불리하다는 항목이 49.3%였고 그렇지 않다는 항목이 50.7%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응답이 나온 것은 조사대상 법전문가들이 거의(95.6%) 남성이고²⁰⁾ 이들이 법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불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법전문가들은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남녀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20) 94년조사 대상자는 남자가 53%, 여자가 47%였다.

【표 2】 가치관 변화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여성의 지위	<p>8.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가 가장 그 렇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정치참여</td><td>11.0(219)</td></tr> <tr><td>2) 재산상속</td><td>10.2(202)</td></tr> <tr><td>3) 취업 및 승진</td><td>60.3(1198)</td></tr> <tr><td>4) 가정에서의 역할</td><td>15.7(311)</td></tr> <tr><td>5) 요즈음은 대체로 평등하다.</td><td>4(27)</td></tr> <tr><td>6) 기타</td><td>1.5(30)</td></tr> </table>	1) 정치참여	11.0(219)	2) 재산상속	10.2(202)	3) 취업 및 승진	60.3(1198)	4) 가정에서의 역할	15.7(311)	5) 요즈음은 대체로 평등하다.	4(27)	6) 기타	1.5(30)	<p>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그렇다</td><td>61.8(740)</td></tr> <tr><td>2) 그렇지 않다</td><td>38.2(457)</td></tr> </table> <p>나)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정치참여</td><td>8.8(65)</td></tr> <tr><td>2) 재산상속</td><td>5.6(41)</td></tr> <tr><td>3) 취업 및 승진</td><td>69.3(511)</td></tr> <tr><td>4) 가정에서의 역할</td><td>14.0(103)</td></tr> <tr><td>5) 기타</td><td>2.3(17)</td></tr> </table>	1) 그렇다	61.8(740)	2) 그렇지 않다	38.2(457)	1) 정치참여	8.8(65)	2) 재산상속	5.6(41)	3) 취업 및 승진	69.3(511)	4) 가정에서의 역할	14.0(103)	5) 기타	2.3(17)
1) 정치참여	11.0(219)																											
2) 재산상속	10.2(202)																											
3) 취업 및 승진	60.3(1198)																											
4) 가정에서의 역할	15.7(311)																											
5) 요즈음은 대체로 평등하다.	4(27)																											
6) 기타	1.5(30)																											
1) 그렇다	61.8(740)																											
2) 그렇지 않다	38.2(457)																											
1) 정치참여	8.8(65)																											
2) 재산상속	5.6(41)																											
3) 취업 및 승진	69.3(511)																											
4) 가정에서의 역할	14.0(103)																											
5) 기타	2.3(17)																											

구 분	'96 법 전문가 조 사														
	<p>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그렇다</td><td>49.3(393)</td></tr> <tr><td>2) 그렇지 않다</td><td>50.7(404)</td></tr> </table> <p>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p> <table> <tr><td>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td><td>16.6(64)</td></tr> <tr><td>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찰저</td><td>17.1(66)</td></tr> <tr><td>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td><td>24.4(94)</td></tr> <tr><td>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td><td>40.8(157)</td></tr> <tr><td>5) 기타</td><td>1.0(4)</td></tr> </table>	1) 그렇다	49.3(393)	2) 그렇지 않다	50.7(404)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16.6(64)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찰저	17.1(66)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24.4(94)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40.8(157)	5) 기타	1.0(4)
1) 그렇다	49.3(393)														
2) 그렇지 않다	50.7(404)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16.6(64)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찰저	17.1(66)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24.4(94)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40.8(157)														
5) 기타	1.0(4)														

2)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의 比較

'91년 및 '94년의 조사는 법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으로 알고 이를 생활화하려는 인지적·평가적·감정적 태도에 대한 설문으로서 법에 대한 인상, 법규범력의 좌표,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의 다섯 가지 문항을 선택하였는데 '96본조사에서는 법규범력의 좌표,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등을 제외하고 세 가지 문항을 조사하였다.

기본인도의 분포에서 눈에 띄는 것은 '96본조사가 '94 및 '91 조사와 약간 다르다는 것인데, 특히 법전문가에게서는 법이 편파적이라는 응답이 줄어들고 공평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한층 더 엄격하다는 점이다. 결국 여기서 법에 대한 인상이나 존재가치에 관한 판단을 비교한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일반국민은 법에 관하여 편파적이거나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많이 갖는 반면에, 법전문가는 법이 공평하고,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과 법을 다루거나 적용하는 법전문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인상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 국민이든, 법전문가이든 법에 대한 인상으로 “권위적”이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표 3】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에 대한 인 상	<p>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공평하다 13.4(267) 2) 민주적이다 11.1(221) 3) 엄격하다 18.9(378) 4) 편파적이다 24.7(494) 5) 권위적이다 32.0(640)</p>	<p>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공평하다 13.0(156) 2) 민주적이다 12.8(153) 3) 엄격하다 19.1(229) 4) 편파적이다 24.9(298) 5) 권위적이다 30.3(363)</p>

구 분	'91 조사	'94 본 조사
법규범력의 좌 표	<p>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7.5(150)</p> <p>2)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76.7(1532)</p> <p>3)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8.8(176)</p> <p>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8)</p> <p>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3.2(64)</p> <p>6)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1.9(38)</p>	<p>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가통치를 위하여 8.2(98)</p> <p>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70.9(849)</p> <p>3) 사회개혁을 위하여 1.2(14)</p> <p>4) 분쟁해결을 위하여 2.2(26)</p> <p>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4.2(50)</p> <p>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3.4(161)</p>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p>3. 만약 이 세상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차라리 나을 것이다 3.3(66)</p> <p>2) 마찬가지일 것이다 7.5(149)</p> <p>3) 불편할 것이다 89.3(1785)</p>	<p>3. 만약 우리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차라리 나을것이다 1.3(16)</p> <p>2) 마찬가지일 것이다 3.4(41)</p> <p>3) 불편할 것이다 21.7(260)</p> <p>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73.6(882)</p>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p>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바람직하다 16.8(336)</p> <p>2) 합리적이다 32.3(645)</p> <p>3) 물인정하다 23.9(478)</p> <p>4) 불쾌하다 26.9(538)</p>	<p>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바람직하다 21.0(251)</p> <p>2) 합리적이다 30.4(364)</p> <p>3) 물인정하다 24.5(293)</p> <p>4) 불쾌하다 24.2(290)</p>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p> <p>1) 전적으로 동의한다 9.4(187)</p> <p>2) 대체로 동의한다 22.5(450)</p> <p>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6.0(520)</p> <p>4)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843)</p>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p> <p>1) 전적으로 동의한다 9.7(116)</p> <p>2) 대체로 동의한다 20.4(245)</p> <p>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0.8(369)</p> <p>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9.1(469)</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1. 선생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 공평하다 25.3(200) 2) 민주적이다 4.3(34) 3) 엄격하다 26.7(211) 4) 편파적이다 9.5(75) 5) 권위적이다 34.3(271)	
	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 바람직하다 10.7(85) 2) 합리적이다 36.2(288) 3) 물인정하다 32.3(257) 4) 불쾌하다 20.8(165)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6) 2) 대체로 동의한다 18.0(144)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5.5(284)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4(355)	
	4. 선생님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최고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게 바람직하다. 32.5(259) 2) 최고제한속도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하여야 한다. 67.5(537)	

3) 法生活의 比較

① 法生活과 法的 經驗

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관한 '94 및 '91조사와 '96본조사의 문항은 법인지 경로, 범인지 욕구 등에서 동일하지만, 법인지 경로에 전문서적이나 정기 간행물, 관보, 컴퓨터통신망을 추가하고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

세히 보는가,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단체등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를 문항의 삭제는 일상생활 중 국민의 법생활과 법전문가의 법생활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문은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문항으로서 이미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기본빈도의 분포에서, '94 및 '91조사와 달라진 점은 범인지의 경로가 신문·TV 등 대중매체에 의한 일반적인 인지경로보다는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문가로서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일반국민이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약관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비하여 오히려 법전문가들이 대충 보거나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회피심리에 있어 일반국민과 차이가 많아 소송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또한 법적 분쟁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법전문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94조사와 대비하여 일반국민보다 법전문가가 법교육실태에 관하여 더욱 비판적이었으나 특히 적절한 법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많은 응답이 이루어졌다.

【표 4】 법생활과 법적 경험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 인 지 경 로	<p>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p> <p>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4.9(1497)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2(184) 3) 책을 보고서 6.2(124) 4) 학교에서 배워서 4.1(81) 5) 사건을 겪고 나서 5.6(112)</p>	<p>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p> <p>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0.9(850)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1(109) 3) 책을 보고서 9.8(118) 4) 학교에서 배워서 3.4(41) 5) 사건을 겪고 나서 4.9(59) 6) 정부홍보물을 통하여 1.8(22)</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分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 인 지 목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21.2(423) 2) 대충 본다 59.6(1192) 3) 거의 보지 않는다 14.6(291) 4) 전혀 보지 않는다 4.7(94)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22.2(266) 2) 대충본다 55.6(667) 3) 거의 보지 않는다 16.0(192) 4) 전혀 보지 않는다 6.3(75)
	19. 귀하는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이나 소비자보호단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1) 자주 있었다 2.9(57) 2) 가끔 있었다 20.9(417) 3) 한번은 있었다 18.8(376) 4) 전혀 없었다 57.5(1148)	19.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1) 자주 있었다 2.8(34) 2) 한 두 번 있었다 33.0(396) 3) 전혀 없었다 64.1(769)
	21. 은행에 저축할 때 통장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27.6(551) 2) 대충 본다 46.9(937) 3) 안본다 21.1(42)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4.4(87)	2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33.6(403) 2) 대충 본다 44.8(537) 3) 안본다 18.1(217)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3.6(43)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79.5(1587) 2) 그렇지 않다 7.8(155) 3) 읽어본 적이 없다 12.7(253)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80.3(963) 2) 그렇지 않다 8.0(96) 3) 읽어본 적이없다 11.7(140)
		20. 다음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교 육		

구 분	'91 조사	'94 본 조사
법 교육		<p>1) 매우 잘되고 있다 1.8(22)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29.4(352) 3)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59.6(713) 4)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9.2(110)</p> <p>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15.7(187)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25.4(303)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7(68)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2.1(622) 5) 기타 1.1(13)</p>
법적 경험	<p>20. 다음은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p> <p>1) 있다 28.9(578) 2) 없다 71.1(1422)</p> <p>나) 만약 가본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p> <p>1) 행정소송 11.1(64) 2) 형사문제 25.9(149) 3) 즉심 11.5(66) 4) 증인 15.1(87) 5) 재산문제 17.4(100) 6) 보증문제 9.6(55) 7) 상속문제 1.2(7) 8)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 4.9(28) 9) 기타 3.3(19)</p>	<p>14.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신지요?</p> <p>1) 전혀 불편하지 않다 46.4(556) 2) 별로 불편하지 않다 32.2(386) 3) 약간 불편하다 18.5(222) 4) 매우 불편하다 2.9(35)</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1 조사	'94 본 조사
법적 경험	<p>34. 귀하는 금전관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37.0(739) 2)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다 13.8(275) 3) 나의 권리 위해서는 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9.6(590) 4) 재판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 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 19.1(382) 5) 기타 0.5(9)</p> <p>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원칙대로 하면 된다 66.3(1323)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18.5(369)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2.8(55)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11.3(226) 5) 기타 1.1(22)</p> <p>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6.3(1125)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13.1(262)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3(166)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4.0(280)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8.3(166)</p>	<p>34.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32.5(389) 2) 소송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 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 21.5(258) 3)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35.6(427) 4)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9.3(112) 5) 기타 1.0(12)</p> <p>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원칙대로 하면 된다 74.6(895)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15.1(181)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1.8(21)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7.0(84) 5) 기타 1.5(18)</p> <p>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0.9(611)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14.6(175)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7.8(93)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6.3(196)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10.4(125)</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 지식	<p>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table> <tr><td>1) 시집간 딸</td><td>0.6(11)</td></tr> <tr><td>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td><td>74.9(1497)</td></tr> <tr><td>3) 똑같다</td><td>19.9(398)</td></tr> <tr><td>4) 잘 모르겠다</td><td>4.7(93)</td></tr> </table>	1) 시집간 딸	0.6(11)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74.9(1497)	3) 똑같다	19.9(398)	4) 잘 모르겠다	4.7(93)	<p>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table> <tr><td>1) 시집간 딸</td><td>0.2(2)</td></tr> <tr><td>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td><td>66.1(793)</td></tr> <tr><td>3) 똑같다</td><td>29.1(349)</td></tr> <tr><td>4) 잘 모르겠다</td><td>4.7(56)</td></tr> </table>	1) 시집간 딸	0.2(2)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66.1(793)	3) 똑같다	29.1(349)	4) 잘 모르겠다	4.7(56)
1) 시집간 딸	0.6(11)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74.9(1497)																	
3) 똑같다	19.9(398)																	
4) 잘 모르겠다	4.7(93)																	
1) 시집간 딸	0.2(2)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66.1(793)																	
3) 똑같다	29.1(349)																	
4) 잘 모르겠다	4.7(56)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10. 선생님은 각종 법령을 주로 어떻게 알게 됩니까?													
	<table> <tr><td>1)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보고서</td><td>62.9(497)</td></tr> <tr><td>2) 신문이나 TV를 통해서</td><td>25.1(198)</td></tr> <tr><td>3) 관보를 보고서</td><td>9.2(73)</td></tr> <tr><td>4)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td><td>1.1(9)</td></tr> <tr><td>5) 각종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td><td>0.8(6)</td></tr> <tr><td>6) 기타</td><td>0.9(7)</td></tr> </table>	1)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보고서	62.9(497)	2)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25.1(198)	3) 관보를 보고서	9.2(73)	4)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1.1(9)	5) 각종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0.8(6)	6) 기타	0.9(7)	
1)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보고서	62.9(497)													
2)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25.1(198)													
3) 관보를 보고서	9.2(73)													
4)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1.1(9)													
5) 각종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0.8(6)													
6) 기타	0.9(7)													
	11. 특정 전문분야(유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전문가가 전문분야를 직접 연구하기 보다는 그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ble> <tr><td>1) 전적으로 찬성한다</td><td>17.3(138)</td></tr> <tr><td>2) 대체로 찬성한다</td><td>63.3(504)</td></tr> <tr><td>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td><td>17.5(139)</td></tr> <tr><td>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td><td>1.9(15)</td></tr> </table>	1) 전적으로 찬성한다	17.3(138)	2) 대체로 찬성한다	63.3(504)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7.5(139)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9(15)					
1) 전적으로 찬성한다	17.3(138)													
2) 대체로 찬성한다	63.3(504)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7.5(139)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9(15)													
	12.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법률자문에 응할 때 이들이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r><td>1) 매우 잘 알고 있다</td><td>0.4(3)</td></tr> <tr><td>2) 대체로 잘 알고 있다</td><td>17.5(140)</td></tr> <tr><td>3) 별로 알고 있지 않다</td><td>77.6(619)</td></tr> <tr><td>4) 전혀 모르고 있다</td><td>4.5(36)</td></tr> </table>	1) 매우 잘 알고 있다	0.4(3)	2) 대체로 잘 알고 있다	17.5(140)	3) 별로 알고 있지 않다	77.6(619)	4) 전혀 모르고 있다	4.5(36)					
1) 매우 잘 알고 있다	0.4(3)													
2) 대체로 잘 알고 있다	17.5(140)													
3) 별로 알고 있지 않다	77.6(619)													
4) 전혀 모르고 있다	4.5(36)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② 違法精神과 權利意識

법생활 중 준법정신과 고발정신 및 권리의식에 관한 기본빈도의 분포를 보면, 준법질서에서의 규칙준수에 대한 태도는 과거의 조사에서보다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94 및 '91조사는 법의 절차와 복잡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나 '96본조사에서 법전문가들은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누가 가장 잘 법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문항에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여 법전문가의 경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강한 반면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일반국민보다 높았다. 또한 기초질서 위반이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 및 법집행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의 수단으로서 높은 신고정신을 요구한 반면, 법전문가의 권리의식은 '94 및 '91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시급히 퇴치할 범죄로서 부정부패를 지적한 것은 공통되지만 법전문가들은 성폭행보다는 조직폭력배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지적하였고 분야별 법준수도에서는 정치 및 환경부문에서의 준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표 5】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준법질서	<p>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 <td>1) 그렇다</td> <td>17.6(352)</td> </tr> <tr> <td>2) 그렇지 않다</td> <td>82.4(1645)</td> </tr> </table> <p>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p> <table> <tr> <td>1) 법이 불공평하므로</td> <td>19.9(326)</td> </tr> <tr> <td>2)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td> <td>2.6(206)</td> </tr> </table>	1) 그렇다	17.6(352)	2) 그렇지 않다	82.4(1645)	1) 법이 불공평하므로	19.9(326)	2)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2.6(206)	<p>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 <td>1) 그렇다</td> <td>21.1(253)</td> </tr> <tr> <td>2) 그렇지 않다</td> <td>78.9(946)</td> </tr> </table> <p>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p> <table> <tr> <td>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td> <td>32.5(305)</td> </tr> <tr> <td>2) 법이 불공평하므로</td> <td>21.3(200)</td> </tr> </table>	1) 그렇다	21.1(253)	2) 그렇지 않다	78.9(946)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2.5(305)	2) 법이 불공평하므로	21.3(200)
1) 그렇다	17.6(352)																	
2) 그렇지 않다	82.4(1645)																	
1) 법이 불공평하므로	19.9(326)																	
2)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2.6(206)																	
1) 그렇다	21.1(253)																	
2) 그렇지 않다	78.9(946)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2.5(305)																	
2) 법이 불공평하므로	21.3(200)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준법질서	<p>3)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3.2(544)</p> <p>4)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1(395)</p> <p>5) 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10.4(170)</p> <p>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치인 61.8(1043)</p> <p>2) 공무원 11.0(186)</p> <p>3) 기업가 15.6(263)</p> <p>4) 지식인 2.4(41)</p> <p>5) 종교인 1.1(1)</p> <p>6) 근로자 1.2(21)</p> <p>7) 대학생 2.8(47)</p> <p>8) 농어민 4.0(67)</p>	<p>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9(234)</p> <p>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1.5(108)</p> <p>5) 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9.8(92)</p> <p>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치인 42.6(800)</p> <p>2) 공무원 14.2(267)</p> <p>3) 법조인 9.0(184)</p> <p>4) 교육자 4.8(86)</p> <p>5) 기업인 20.0(375)</p> <p>6) 근로자 1.0(18)</p> <p>7) 종교인 4.5(84)</p> <p>8) 대학생 2.2(42)</p> <p>9) 농어민 1.1(21)</p>
분야별 법준수도	<p>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가) 정치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4(27)</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6.0(316)</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8.6(1160)</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24.1(477)</p> <p>나) 행정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7(74)</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2.7(843)</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5.6(901)</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8.0(158)</p>	<p>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가) 정치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3(15)</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9.2(229)</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67.5(803)</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2.0(143)</p> <p>나) 행정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4.1(49)</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9.0(583)</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3.7(519)</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2(38)</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분 야 별 법준수도	<p>다) 경제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40)</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6.0(513)</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6.8(1119)</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5.2(299)</p> <p>라) 노사관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39)</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8.7(565)</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5.0(1081)</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4.3(282)</p> <p>마) 교 육 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8.2(163)</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1.7(1028)</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3.4(661)</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6.6(130)</p> <p>바) 교통질서</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0(59)</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2.9(652)</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7.6(942)</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6.6(328)</p>	<p>다) 경제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7(20)</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3.7(398)</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7.5(680)</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7.1(84)</p> <p>라) 노사관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4.0(47)</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3.3(513)</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6.5(550)</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6.3(74)</p> <p>마) 교 육 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3(39)</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8.7(460)</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1.1(608)</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7.0(83)</p> <p>바) 교통질서</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3(28)</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0.3(361)</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3.9(642)</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3.5(161)</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분야별 법준수도	<p>사) 행락질서</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7(34)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8.6(368)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6.9(928)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2.8(649)</p>	<p>사) 행락질서</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0.7(8)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5.9(190)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1.8(618)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1.6(377)</p>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준수	<p>12. 다음은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52.9(1053) 2) 그렇지 않다 47.1(939)</p> <p>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친한 사이라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0.2(378) 2) 벌칙이 약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16.5(155) 3) 이익이 없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9.3(275) 4) 생활이 바빠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6.8(64) 5) 의식이 부족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0(28) 6) 기타 4.3(40)</p>	<p>12.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60.5(723) 2) 그렇지 않다 39.5(473)</p> <p>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친한 사이라서 16.2(76) 2) 벌칙이 약해서 6.8(32) 3) 이익이 없어서 12.0(56) 4) 생활이 바빠서 59.0(276) 5) 기타 6.0(28)</p>
고발정신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p> <p>(【표 17】 참조)</p>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p> <p>(【표 17】 참조)</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1 조사	'94 본 조사
고발정신	<p>13. 귀하는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p> <p>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54.9(1098)</p> <p>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11.4(227)</p> <p>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33.7(674)</p> <p>14. 집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고 더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그럴 수도 있다 15.4(307)</p> <p>2)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56.1(1121)</p> <p>3) 탈세(양도소득세의 포탈)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28.6(571)</p> <p>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언제나 신고한다 48.6(971)</p> <p>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24.0(480)</p> <p>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5.1(101)</p> <p>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3.0(59)</p> <p>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19.4(388)</p>	<p>13.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p> <p>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63.5(762)</p> <p>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16.9(203)</p> <p>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19.6(235)</p> <p>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당연히 신고한다 65.2(782)</p> <p>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17.1(205)</p> <p>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3.8(46)</p> <p>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2.5(30)</p> <p>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11.4(137)</p>

구 분	'91 조사	'94 본 조사																																																																				
고발정신	<p>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가)</p> <table> <tbody> <tr><td>1) 부정부패</td><td>56.0(1116)</td></tr> <tr><td>2) 탈세</td><td>3.4(68)</td></tr> <tr><td>3) 부동산투기사범</td><td>24.1(481)</td></tr> <tr><td>4) 공해사범</td><td>16.0(318)</td></tr> <tr><td>5) 기타</td><td>0.5(10)</td></tr> </tbody> </table> <p>나)</p> <table> <tbody> <tr><td>1) 성폭행</td><td>18.9(377)</td></tr> <tr><td>2) 가정파괴범</td><td>50.0(997)</td></tr> <tr><td>3) 조직폭력배</td><td>21.8(425)</td></tr> <tr><td>4) 마약사범</td><td>8.8(176)</td></tr> <tr><td>5) 기타</td><td>0.9(18)</td></tr> </tbody> </table> <p>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body> <tr><td>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td><td>30.0(360)</td></tr> <tr><td>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td><td>12.2(146)</td></tr> <tr><td>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td><td>25.9(311)</td></tr> <tr><td>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td><td>24.2(290)</td></tr> <tr><td>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td><td>7.1(85)</td></tr> <tr><td>6) 기타</td><td>0.6(7)</td></tr> </tbody> </table>	1) 부정부패	56.0(1116)	2) 탈세	3.4(68)	3) 부동산투기사범	24.1(481)	4) 공해사범	16.0(318)	5) 기타	0.5(10)	1) 성폭행	18.9(377)	2) 가정파괴범	50.0(997)	3) 조직폭력배	21.8(425)	4) 마약사범	8.8(176)	5) 기타	0.9(18)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30.0(360)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24.2(290)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7.1(85)	6) 기타	0.6(7)	<p>16. 우리 사회에서 <u>가장</u>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가)</p> <table> <tbody> <tr><td>1) 부정부패</td><td>61.7(740)</td></tr> <tr><td>2) 탈세</td><td>6.2(74)</td></tr> <tr><td>3) 부동산투기사범</td><td>11.3(136)</td></tr> <tr><td>4) 환경사범</td><td>13.2(158)</td></tr> <tr><td>5) 경제사범</td><td>7.2(86)</td></tr> <tr><td>6) 기타</td><td>0.4(5)</td></tr> </tbody> </table> <p>나)</p> <table> <tbody> <tr><td>1) 성폭행</td><td>36.0(431)</td></tr> <tr><td>2) 조직폭력배</td><td>26.1(313)</td></tr> <tr><td>3) 마약사범</td><td>8.3(99)</td></tr> <tr><td>4) 강·절도사범</td><td>25.0(300)</td></tr> <tr><td>5) 음주운전</td><td>4.2(50)</td></tr> <tr><td>6) 기타</td><td>0.4(5)</td></tr> </tbody> </table> <p>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u>가장</u>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body> <tr><td>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td><td>30.0(360)</td></tr> <tr><td>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td><td>12.2(146)</td></tr> <tr><td>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td><td>25.9(311)</td></tr> <tr><td>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td><td>24.2(290)</td></tr> <tr><td>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td><td>7.1(85)</td></tr> <tr><td>6) 기타</td><td>0.6(7)</td></tr> </tbody> </table>	1) 부정부패	61.7(740)	2) 탈세	6.2(74)	3) 부동산투기사범	11.3(136)	4) 환경사범	13.2(158)	5) 경제사범	7.2(86)	6) 기타	0.4(5)	1) 성폭행	36.0(431)	2) 조직폭력배	26.1(313)	3) 마약사범	8.3(99)	4) 강·절도사범	25.0(300)	5) 음주운전	4.2(50)	6) 기타	0.4(5)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30.0(360)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24.2(290)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7.1(85)	6) 기타	0.6(7)
1) 부정부패	56.0(1116)																																																																					
2) 탈세	3.4(68)																																																																					
3) 부동산투기사범	24.1(481)																																																																					
4) 공해사범	16.0(318)																																																																					
5) 기타	0.5(10)																																																																					
1) 성폭행	18.9(377)																																																																					
2) 가정파괴범	50.0(997)																																																																					
3) 조직폭력배	21.8(425)																																																																					
4) 마약사범	8.8(176)																																																																					
5) 기타	0.9(18)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30.0(360)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24.2(290)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7.1(85)																																																																					
6) 기타	0.6(7)																																																																					
1) 부정부패	61.7(740)																																																																					
2) 탈세	6.2(74)																																																																					
3) 부동산투기사범	11.3(136)																																																																					
4) 환경사범	13.2(158)																																																																					
5) 경제사범	7.2(86)																																																																					
6) 기타	0.4(5)																																																																					
1) 성폭행	36.0(431)																																																																					
2) 조직폭력배	26.1(313)																																																																					
3) 마약사범	8.3(99)																																																																					
4) 강·절도사범	25.0(300)																																																																					
5) 음주운전	4.2(50)																																																																					
6) 기타	0.4(5)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30.0(360)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24.2(290)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7.1(85)																																																																					
6) 기타	0.6(7)																																																																					
권리의식	<p>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7.7(353)</p> <p>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1.3(425)</p>	<p>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8.1(217)</p> <p>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2.3(267)</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1 조사	'94 본 조사
권리의식	<p>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6(989)</p> <p>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11.4(227)</p> <p>24. 불량품(TV,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0.6(412)</p> <p>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48.8(975)</p> <p>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9.7(593)</p> <p>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1.0(19)</p> <p>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8(136)</p> <p>2) 치료비만 받는다 25.2(502)</p> <p>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2(861)</p> <p>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4.8(494)</p>	<p>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9(598)</p> <p>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9.8(117)</p> <p>24.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16.4(197)</p> <p>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48.9(587)</p> <p>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33.8(406)</p> <p>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8(10)</p> <p>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3(75)</p> <p>2) 치료비만 받는다 26.6(318)</p> <p>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3(517)</p> <p>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3.8(285)</p>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p>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그렇다 8.3(66)</p> <p>2) 그렇지 않다 91.7(730)</p> <p>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p> <p>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2.9(21)</p>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34.9(249)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39.6(282)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0.8(77)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11.8(84)		
	다) 다음 중 누가 <u>가장</u>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인	71.9(508)		
	2) 공무원	2.8(20)		
	3) 범조인	4.2(30)		
	4) 기업인	14.3(101)		
	5) 근로자	1.0(7)		
	6) 교육자	1.4(10)		
	7) 대학생	1.0(7)		
	8) 기타	3.4(24)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지켜 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 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 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 고 있지 않다
가) 정치부문	0.4(3)	3.8(30)	63.5(505)	32.3(257)
나) 행정부문	2.6(21)	67.9(540)	28.7(228)	0.8(6)
다) 경제부문	0.1(1)	25.8(204)	69.3(548)	4.8(38)
라) 노사부문	0.4(3)	31.9(252)	63.8(504)	3.9(31)
마) 교육부문	2.9(23)	65.2(514)	30.1(237)	1.8(14)
바) 교통부문	0.8(6)	19.6(155)	68.3(541)	11.4(90)
사) 환경부문		7.0(55)	70.9(560)	22.2(175)
	8. 선생님께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67.0(535)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17.5(140)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15.4(123)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가)													
	<table> <tbody> <tr><td>1) 부정부패</td><td>69.6(553)</td></tr> <tr><td>2) 탈세</td><td>11.3(90)</td></tr> <tr><td>3) 부동산투기사범</td><td>2.5(20)</td></tr> <tr><td>4) 환경사범</td><td>15.4(122)</td></tr> <tr><td>5) 공안사범</td><td>0.8(6)</td></tr> <tr><td>6) 기타</td><td>0.4(3)</td></tr> </tbody> </table>		1) 부정부패	69.6(553)	2) 탈세	11.3(90)	3) 부동산투기사범	2.5(20)	4) 환경사범	15.4(122)	5) 공안사범	0.8(6)	6) 기타	0.4(3)
1) 부정부패	69.6(553)													
2) 탈세	11.3(90)													
3) 부동산투기사범	2.5(20)													
4) 환경사범	15.4(122)													
5) 공안사범	0.8(6)													
6) 기타	0.4(3)													
	나)													
	<table> <tbody> <tr><td>1) 성폭행</td><td>21.1(165)</td></tr> <tr><td>2) 조직폭력배</td><td>48.0(376)</td></tr> <tr><td>3) 마약사범</td><td>11.9(93)</td></tr> <tr><td>4) 강·절도사범</td><td>10.9(85)</td></tr> <tr><td>5) 음주운전</td><td>6.3(49)</td></tr> <tr><td>6) 기타</td><td>1.9(15)</td></tr> </tbody> </table>		1) 성폭행	21.1(165)	2) 조직폭력배	48.0(376)	3) 마약사범	11.9(93)	4) 강·절도사범	10.9(85)	5) 음주운전	6.3(49)	6) 기타	1.9(15)
1) 성폭행	21.1(165)													
2) 조직폭력배	48.0(376)													
3) 마약사범	11.9(93)													
4) 강·절도사범	10.9(85)													
5) 음주운전	6.3(49)													
6) 기타	1.9(15)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body> <tr><td>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td><td>17.8(141)</td></tr> <tr><td>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td><td>7.2(57)</td></tr> <tr><td>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td><td>37.2(295)</td></tr> <tr><td>4)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법교육</td><td>25.5(202)</td></tr> <tr><td>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td><td>10.1(80)</td></tr> <tr><td>6) 기타</td><td>2.1(17)</td></tr> </tbody> </table>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17.8(141)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7.2(57)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37.2(295)	4)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법교육	25.5(202)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10.1(80)	6) 기타	2.1(17)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17.8(141)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7.2(57)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37.2(295)													
4)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법교육	25.5(202)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10.1(80)													
6) 기타	2.1(17)													
	13.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body> <tr><td>1) 매우 잘되고 있다</td><td>0.4(3)</td></tr> <tr><td>2) 대체로 잘되고 있다</td><td>8.5(68)</td></tr> <tr><td>3) 별로 되고 있지 않다</td><td>77.9(621)</td></tr> <tr><td>4) 전혀 되고 있지 않다</td><td>13.2(105)</td></tr> </tbody> </table>		1) 매우 잘되고 있다	0.4(3)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8.5(68)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77.9(621)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13.2(105)				
1) 매우 잘되고 있다	0.4(3)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8.5(68)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77.9(621)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13.2(105)													
	나) 선생님은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body> <tr><td>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지식</td><td>9.5(76)</td></tr> <tr><td>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td><td>30.4(243)</td></tr> <tr><td>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td><td>6.9(55)</td></tr> <tr><td>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td><td>53.2(425)</td></tr> <tr><td>5) 기타</td><td></td></tr> </tbody> </table>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지식	9.5(76)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30.4(243)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6.9(55)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3.2(425)	5) 기타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지식	9.5(76)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30.4(243)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6.9(55)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3.2(425)													
5) 기타														

(3) 法의 使用能力 및 紛爭의 解決方法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조사는 국민법의식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기본빈도의 분포에서 '96본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에서 일반국민보다 법전문가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띠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회피심리에 있어 일반국민과 차이가 많아 법전문가는 소송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또한 법적 분쟁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법전문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표 6】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의 사용능력	<p>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24. 불량품(TV,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 42】 참조)</p> <p>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34. 귀하는 금전관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42】 참조)</p> <p>9. 농촌에서의 수박이나 무우서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 <td>1) 엄연히 도둑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다</td> <td>3.8(76)</td> </tr> <tr> <td>2) 돈으로 변상받는 게 좋다</td> <td>11.8(236)</td> </tr> <tr> <td>3) 큰 피해가 아닌 한 용서하는 게 옳다</td> <td>84.4(1686)</td> </tr> </table>	1) 엄연히 도둑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다	3.8(76)	2) 돈으로 변상받는 게 좋다	11.8(236)	3) 큰 피해가 아닌 한 용서하는 게 옳다	84.4(1686)	<p>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24.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 42】 참조)</p> <p>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34.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42】 참조)</p> <p>9.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 <td>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td> <td>2.3(27)</td> </tr> <tr> <td>2) 치료비를 받는다</td> <td>16.6(199)</td> </tr> <tr> <td>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td> <td>81.1(971)</td> </tr> </table>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2.3(27)	2) 치료비를 받는다	16.6(199)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81.1(971)
1) 엄연히 도둑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다	3.8(76)													
2) 돈으로 변상받는 게 좋다	11.8(236)													
3) 큰 피해가 아닌 한 용서하는 게 옳다	84.4(1686)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2.3(27)													
2) 치료비를 받는다	16.6(199)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81.1(971)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分	'91 조 사	'94 본 조 사
분쟁의 해결방법	<p>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85.9(1718) 2)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5.3(105) 3) 변호사를 찾아간다 2.8(56)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6.0(120)</p> <p>27. 귀하는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고위층 인사 27.3(542) 2) 변호사 33.2(658) 3) 판·검사 21.3(423) 4) 면·동이나 구청직원 5.0(99) 5) 경찰관 9.1(181) 6) 도움되지 않는다 2.0(40) 7) 기타 2.0(39)</p>	<p>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84.4(1013) 2) 경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4.9(59) 3) 변호사를 찾아간다 3.4(41)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7.3(87)</p> <p>27. 귀하는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고위공무원 8.6(103) 2) 변호사 26.3(314) 3) 판·검사 25.4(303) 4) 담당행정공무원 22.3(267) 5) 경찰관 10.0(120) 6) 정치인 4.7(56) 7) 기타 2.7(32)</p>

구 分	'96 법 전 문 가 조 사
	<p>14. 선생님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p> <p>1) 자세히 본다 14.0(112) 2) 대충 본다 65.3(522) 3) 보지 않는다 20.8(166)</p> <p>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9.2(23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 47.7(379)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2.2(176)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9(7)</p>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42.1(335)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52.3(416)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4.3(34)
	4) 기타 1.4(11)

4)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의 比較

①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는 법관련기관에 대한 법전문가의 신뢰도를 묻는 것으로서 '91조사와 '94조사에 비교하여 '96조사의 설문내용은 상당히 변경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이 법전문가로서 입법예고제라든가 의원입법이라는 법제도 및 개념에 대한 사전이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법정립과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정립 및 집행기관의 공정성을 묻는 설문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일선관청 공무원의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설문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96본조사 결과 법문가들이 입법예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개선사항으로 예고수단의 다양화를 지적함으로써 그동안 입법예고제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의원입법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꼽아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법전문가가 입법예고된 법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여도 반영도가 낮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은 행정부의 입법예고제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있으며 입법과정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에서 입법, 행정관청의 법적용, 검찰의 법집행 및 법원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94조사 및 '91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었지만 파출소나 경찰서의 법적용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표 7】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비교

'91 조사	'94 본 조사
10.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표 30】 참조)	10.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표 30】 참조)
10. 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0】 참조)	10.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0】 참조)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1) 공정하다 5.8(115) 2) 대체로 공정하다 42.7(848)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39.4(782) 4) 공정하지 않다 12.1(240)	1) 공정하다 2.8(33) 2) 대체로 공정하다 40.5(483)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51.7(616)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5.0(60)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1) 공정하다 6.8(135) 2) 대체로 공정하다 50.0(991)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5.1(696) 4) 공정하지 않다 8.0(159)	1) 공정하다 3.4(40) 2) 대체로 공정하다 52.4(624)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41.7(497)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2.5(30)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1) 공정하다 4.6(92) 2) 대체로 공정하다 40.8(809)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41.7(827) 4) 공정하지 않다 12.9(255)	1) 공정하다 5.4(64) 2) 대체로 공정하다 45.7(544)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44.6(531)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4.3(51)
라) 경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라) 경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1) 공정하다 11.5(227) 2) 대체로 공정하다 50.4(996)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30.1(595) 4) 공정하지 않다 8.1(160)	1) 공정하다 8.3(99) 2) 대체로 공정하다 54.2(645)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34.3(408)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3.1(37)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 공정하다 19.7(391) 2) 대체로 공정하다 55.0(1090)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19.6(389) 4) 공정하지 않다 5.6(111)	1) 공정하다 11.7(139) 2) 대체로 공정하다 59.1(703)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26.6(317) 4) 공정하지 않다 2.6(31)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91 조사	'94 본 조사
28.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5.2(303) 2) 조금은 그렇다 30.8(614) 3) 별로 그렇지 않다 40.6(810) 4) 전혀 그렇지 않다 13.5(269)	28.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1.7(140) 2) 대체로 그렇다 26.1(313) 3) 별로 그렇지 않다 49.8(597) 4) 전혀 그렇지 않다 12.4(148)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5.2(303) 2) 조금은 그렇다 30.8(614) 3) 별로 그렇지 않다 40.6(810) 4) 전혀 그렇지 않다 13.5(269)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1.7(140) 2) 대체로 그렇다 26.1(313) 3) 별로 그렇지 않다 49.8(597) 4) 전혀 그렇지 않다 12.4(148)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p>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87.0(696) 2) 그렇지 않다 13.0(104)</p> <p>18. 우리나라의 입법예고제는 일반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법 전단계에서 법률상 문제를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부문을 <u>가장 먼저</u>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고대상법률의 확대 5.9(46) 2) 예고수단의 다양화 50.6(397) 3) 예고사항의 구체화 14.5(114) 4) 제출된 의견의 반영도 제고 23.7(186) 5) 입법예고 전담부서의 신설 4.7(37) 6) 기타 0.6(5)</p> <p>19.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중 의원입법이 전체의 입법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부문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회사무처내 입법지원부서 확충과 예산증액 20.7(164) 2) 입법지원을 위한 의원보좌관 확충 8.3(66) 3) 정당의 입법활동의 충실향상 22.0(175) 4)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 47.7(379) 5) 기타 1.3(10)</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1) 그렇다	7.1(57)			
	2) 대체로 그렇다	65.1(521)			
	3) 별로 그렇지 않다	26.4(211)			
	4) 전혀 그렇지 않다	1.4(11)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공정 하다	2) 대체로 공정 하다	3) 별로 공정 하지 않다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1.0(8)	58.0(461)	38.9(309)	2.1(17)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0.5(4)	62.3(496)	35.3(281)	1.9(15)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0.1(1)	33.6(267)	58.4(464)	7.8(62)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4.3(34)	54.8(434)	35.6(282)	5.3(42)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4.4(114)	76.7(607)	8.7(69)	0.1(1)	

② 司法權의 獨立

'96본조사의 사법권독립에 관한 설문내용은 '94 및 '91조사와 동일하였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즉 일반국민은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법률전문가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 또한 매우 흥미로운 조사결과였다. 결국 일반국민은 재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법전문가들은 아주 강하게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해온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일반국민과 법전문가들의 인식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일반국민과 법전문가간에 유사한 정도로 존재하였다. 이는 현재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볼수 있다.

【표 8】 사법권의 독립 비교

'91 조사	'94 본 조사
<p>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40.3(805)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3.9(1076)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93)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24)</p>	<p>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36.4(437)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6.9(682)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9(59)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21)</p>
<p>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바람직하다 78.8(1575) 2) 바람직하지 않다 21.2(423)</p>	<p>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바람직하다 76.6(918) 2) 바람직하지 않다 23.4(280)</p>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사
	<p>2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20.9(167)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65.5(523)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4(91)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17)</p>
	<p>2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바람직하다 19.5(156) 2) 바람직하지 않다 79.5(635)</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③ 司法制度의 改革

'96본조사에서는 최근 사법제도의 개혁 특히 변호사증원을 위한 사법시험선발인원의 증원과 소위 미국식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로써 “로-스쿨”的 도입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물기위해 적정한 사법시험선발인원의 숫자와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에 관한 설문을 제시하였다. 응답의 결과 사법시험선발인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300명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법조인의 양성방식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표 9】 사법제도의 개혁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문제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가) 현행(1996년) 사법시험선발인원은 500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법조인선발인원 숫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300여명	20.4(162)
	2) 500여명	24.7(196)
	3) 700여명	9.2(73)
	4) 1000여명	36.1(287)
	5) 기타	9.7(77)
	나) 이른바 “로-스쿨” 도입논쟁으로 인하여 현행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방식유지(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선발)	58.3(463)
	2) “로-스쿨” 방식도입(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39.5(314)
	3) 기타	2.1(17)

5)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의 比較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를 물기 위하여 '91조사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민

법상 동성동본금혼규정·가정의례준칙에관한규정등),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구성을 하였으며, '94조사에서는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관한 설문을 하였으나, '96조사에서는 정치·사회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규정과 노사관계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상의 동성동본혼인문제 외에 형법상의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 그리고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문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96본조사 결과 현행법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견해는 해당 법분야마다 각각 요구되어지는 법규범력의 제고방향에 관심을 두고 응답하였다. 선거법의 경우 법정선거비용이 현실성이 없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공천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등 다른 항목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분야로서 선거 및 정치관련부문이 두 번째인 환경부문에 비해 3배나 많이 지적됨으로써 가장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외에 민법상의 동성동본의 혼인여부에 대한 설문에 관하여는 '94 조사 및 '91조사와 '96본조사간의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국민은 보수적인 견해가 많아 동성동본의 금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약 43%였으나 법전문가의 경우 동성동본의 금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9%정도에 불과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은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형법상 낙태문제에 대하여는 대체로 허용하자는 의견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헌법개정에 관한 질문에서,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문으로는 정부형태로써 의원내각제와 4년중임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 못지 않게 통일정책부문이나 기본권부문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법전문가로서 헌법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에 관하여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법제의 발전은 어느 부문에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민주법치국가완성을 위한 법제기능을 최우선하였으며 다음으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법제의 정비를 꼽았다. 이에 비해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법제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법제정비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표 10】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비교

구 분	'91 조사	'94 조사																																																
현실에 맞지 않는 법	<p>35.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정치에 관한 법</td><td>25.2(500)</td></tr> <tr><td>2) 행정에 관한 법</td><td>6.5(130)</td></tr> <tr><td>3) 형사처벌에 관한 법</td><td>7.6(150)</td></tr> <tr><td>4) 경제에 관한 법</td><td>8.8(175)</td></tr> <tr><td>5) 조세에 관한 법</td><td>16.3(324)</td></tr> <tr><td>6) 노사관계에 관한 법</td><td>9.6(190)</td></tr> <tr><td>7) 농어촌에 관한 법</td><td>17.9(355)</td></tr> <tr><td>8) 친족상속에 관한 법</td><td>6.8(135)</td></tr> <tr><td>9) 기타</td><td>1.4(27)</td></tr> </table> <p>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 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td><td>29.0(580)</td></tr> <tr><td>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td><td>12.5(250)</td></tr> <tr><td>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td><td>52.3(1046)</td></tr> <tr><td>4) 판단이 서지 않는다</td><td>6.2(123)</td></tr> </table> <p>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 청첩장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하다</td><td>31.4(628)</td></tr> <tr><td>2)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td><td>61.5(1230)</td></tr> <tr><td>3) 판단이 서지 않는다</td><td>7.1(141)</td></tr> </table>	1) 정치에 관한 법	25.2(500)	2) 행정에 관한 법	6.5(130)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7.6(150)	4) 경제에 관한 법	8.8(175)	5) 조세에 관한 법	16.3(324)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9.6(190)	7) 농어촌에 관한 법	17.9(355)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6.8(135)	9) 기타	1.4(27)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9.0(580)	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2.5(250)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52.3(1046)	4) 판단이 서지 않는다	6.2(123)	1)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하다	31.4(628)	2)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61.5(1230)	3) 판단이 서지 않는다	7.1(141)	<p>35.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 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td><td>30.2(362)</td></tr> <tr><td>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td><td>13.1(157)</td></tr> <tr><td>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td><td>43.7(524)</td></tr> <tr><td>4) 동성동본결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td><td>13.0(156)</td></tr> </table> <p>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 청첩장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td><td>3.8(45)</td></tr> <tr><td>2)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 하다</td><td>35.2(422)</td></tr> <tr><td>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td><td>42.2(506)</td></tr> <tr><td>4) 법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td><td>18.9(227)</td></tr> </table>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2(362)	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3.1(157)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43.7(524)	4) 동성동본결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13.0(156)	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3.8(45)	2)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 하다	35.2(422)	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42.2(506)	4) 법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18.9(227)
1) 정치에 관한 법	25.2(500)																																																	
2) 행정에 관한 법	6.5(130)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7.6(150)																																																	
4) 경제에 관한 법	8.8(175)																																																	
5) 조세에 관한 법	16.3(324)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9.6(190)																																																	
7) 농어촌에 관한 법	17.9(355)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6.8(135)																																																	
9) 기타	1.4(27)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9.0(580)																																																	
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2.5(250)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52.3(1046)																																																	
4) 판단이 서지 않는다	6.2(123)																																																	
1)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하다	31.4(628)																																																	
2)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61.5(1230)																																																	
3) 판단이 서지 않는다	7.1(141)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2(362)																																																	
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3.1(157)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43.7(524)																																																	
4) 동성동본결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13.0(156)																																																	
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3.8(45)																																																	
2)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 하다	35.2(422)																																																	
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42.2(506)																																																	
4) 법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18.9(227)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p>35.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및 정치질서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 개혁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정신 50.0(599) 2)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13.1(157) 3)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 36.2(434) 4) 기타 0.8(9)</p>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p>38. 만약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경영진 27.1(542) 2) 근로자 2.5(50) 3) 정부 11.8(236) 4) 재야 및 운동권학생 4.8(95) 5)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2.0(1039) 6) 요즈음은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8(36)</p>	<p>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7(32)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7.4(686) 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7.1(444) 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8(34)</p> <p>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사용자 24.3(116) 2) 근로자 2.5(12) 3) 정부 16.1(77)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7.1(273)</p>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 약	<p>39. 중동의 걸프만전쟁 당시 실시되었던 차량 10부제 운행이 최근에 해제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보십니까?</p> <p>1) 차량소지자에 대한 재산권침해 이므로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9.0(180)</p> <p>2) 비상사태(걸프만 전쟁)가 끝났으므로 해제조치는 당연하다 11.9(238)</p> <p>3) 운행제한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계속 시행할만 했다 16.3(325)</p> <p>4)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상 계속 시행 할 만한 조치였다 54.7(1092)</p> <p>5) 5부제운행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8.1(162)</p>	
환경오염의 규제 방향		<p>3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69.8(837)</p> <p>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24.4(293)</p> <p>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4.8(57)</p> <p>4) 기타 1.1(13)</p>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p>25. 다음중 <u>가장</u> 현실에 맞지 않는 법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시오.)</p> <p>1) 선거 및 정치관련부문 37.4(554)</p> <p>2) 복지관련부문 9.4(139)</p> <p>3) 농어촌관련부문 3.3(49)</p> <p>4) 교육관련부문 6.1(91)</p> <p>5) 금융·조세관련부문 12.0(177)</p> <p>6) 중소기업관련부문 2.3(34)</p> <p>7) 노사관련부문 6.8(101)</p> <p>8) 환경관련부문 13.1(194)</p> <p>9) 건설·교통관련부문 9.6(142)</p>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가지를 고르십시오.)	
	1) 법정선거비용	33.4(505)
	2) 소·중·대선거구, 전국구 등 선거제도	8.2(124)
	3) 자원봉사자	6.9(105)
	4)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4.5(68)
	5) 후보자공천	13.0(197)
	6) 후보자재산공개	3.8(58)
	7) 사전선거운동	10.6(161)
	8)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11.8(178)
	9) 무소속입후보자에 대한 불평등	7.8(118)
	27.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9(47)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2.9(23)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66.5(532)
	4)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24.8(198)
	28.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22.6(181)
	2)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67.5(540)
	3)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균절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9.9(79)
	29.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u>우선적으로</u>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형태 부문(의원내각제 또는 4년중임 대통령제)	34.8(272)
	2) 통일정책 부문(영토조항 등)	26.5(207)
	3) 헌법재판소 위상의 재정립	12.9(101)
	4) 기본권 부문	22.5(176)
	5) 기타	3.3(26)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30. 선생님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발전방향이 다음중 어느 분야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민주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법제기능	30.7(243)
	2)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일법제 마련	17.7(140)
	3)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법제정비	16.9(134)
	4) 첨단과학 및 정보화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11.4(90)
	5)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법제 정비	23.1(183)
	6) 기타	0.3(2)

이와 같이 '91조사 및 '94조사와 '96본조사를 단순비교할 때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상이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인상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으며,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법의 기능과 역할로서 사회질서유지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을 선택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고, 법생활 중 법령정보를 알게 되는 경로가 세분화되고 인지욕구 또한 강하였으며, 법의 사용능력이나 분쟁의 해결방법에서 법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일반국민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의 목표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나 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동양적인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으나 입법과정에서의 소외감이나 입법관련기관의 입법작용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여 법전문가의 입법참여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선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96본조사에서 사회전반에 만연된 준법정신의 실종현상이 많이 개선되고 고발정신과 권리의식 또한 여전히 높아 법질서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법집행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에서도 법의 규범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법보다는 잘 지켜지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96본조사의 이러한 결과는 '94조사와 '91조사에서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기존의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평가에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 유효하였다는 것을 재확인하여 주는 것이

며, 향후 한국사회에서의 법의식제고와 법치주의 확립에 한 차원 높은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정 부분 일반국민과 법전문가간에 법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법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이나 국가기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과 이들에게 법을 적용하거나 다루는 법전문가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앞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2. 法專門家 法意識의 特徵

한국법제의 근대화²¹⁾는 갑오개혁을 그 기점으로 할 경우 10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서구적인 법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의미할 뿐 서구의 근대법제가 갖는 법정신 내지 법의식까지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법제의 근대화는 전통적인 법의식과의 갈등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유교적 규범문화로 말미암아 ‘法의 支配’보다는 법과 도덕의 중간영역에 자리잡은 ‘禮의 支配’의 발달이 과잉형성되었고 이는 근대법제의 도입에 대응될 만한 전통법제의 기반을 매우 취약하게 하였으며 향후 우리의 법현실에서 법의식과 법제도간의 괴리가 심할 수 밖에 없는 토양을 낳았다.

그러나 전통적 법의식은 사회의 가치관변화에 의하여 일대 수정을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조선총독부가 서구법을 모방하여 제정한 일본법을 勅令형식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서구의 법제도가 들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는 서구의 법제도를 탄생케 한 서구사회와는 사회구조 자체가 판이하였다. 일제식민지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시민사회로서 발전할 수 없었고 근대 서양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시민의식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일제식민통치는 한국전통사상이 스스로 근대적 자각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서구적 법의식과 봉건적 법사상 내지 법의식은 내재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60년대 이후 근대화 및 서구화과정에서 법제도와 전통적 법의식간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권위주의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국민의 자발적인 법의식 제고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21) 근대화의 개념은 인간화·공업화·서구화·탈봉건화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가 곤란하다. 여기에서의 근대화는 서구화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II. 法專門家의 法意識과 그 特徵

그러나 80년대 말 민주화과정에서 참여적 시민문화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가치관은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신분상승의 노력은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되었고 의무감이나 질서에의 복종의식이 줄어들었으며 정치적 참여요구가 다양화되었다. '대중민주주의'가 '참여형민주주의'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리의식은 상승된 반면 질서에의 복종의식이 저하되어 법과 질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법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었다. 그러나 참여의식 내지 권리의식의 신장은 시민의 비판정신을 고양시켜 작금의 준법정신의 부재 상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감지울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민의 법의식의 변화와 동요는 언제나 존재하며 법전문가의 법의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기간의 조망에 의하여 변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일정시간 관찰할 때 법의식의 변화가 아닌 동요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민법의식 변화추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은 법치주의 실현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의식조사란 보통 "일반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분야의 조사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법의 수용자인 일반국민의 법의식조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조사이다.

이와 같은 사항에 주목하여 법전문가의 법의식의 대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전문가에게서는 법이 편파적이라는 응답이 줄어들고 공평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한층 더 엄격하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법에 따르는 일반 국민과 법을 다루거나 적용하는 법전문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인상이 다소 다른 것이다.

둘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매우 좋게 보는 편이고 시간과 비용만 허락한다면 소송이라는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세째, '94 및 '91조사와 달라진 점은 일반국민과는 달리 법전문가의 법인지의 경로가 신문·TV 등 대중매체에 의한 일반적인 인지경로보다는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문가로서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94조사와 대비하여 일반국민보다 법전문가가 법교육실태에

관하여 더욱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적절한 법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94 및 '91조사는 법의 절차와 복잡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나 '96본조사에서 법전문가들은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누가 가장 잘 법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문항에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여 법전문가의 경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강한 반면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일반국민보다 높았다.

다섯째, 입법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며 일반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법전문가로서의 엘리트의식이 강하다.

여섯째, 법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법보다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II. 社會變動과 價值觀의 變化

국민법의식의 변화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가정 및 학교 교육은 물론 대중언론매체, 국가기관의 입법 및 법집행·법선언 등도 각각 법의식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요인들도 결국 그 사회의 가치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결코 편협한 접근방법은 아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어느 사회나 그 시대의 가치관은 법의식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와 그 변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수많은 법규법을 매개로 하여 작동되는 현대사회에서 규범력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의식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 특히 법전문가의 현주소를 진단하기에 앞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대표성과 적실성을 띠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의 지위

1.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가

【표 11】 여성의 법률상 지위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p>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 <td>1) 그렇다</td> <td>49.3(393)</td> </tr> <tr> <td>2) 그렇지 않다</td> <td>50.7(404)</td> </tr> </table>	1) 그렇다	49.3(393)	2) 그렇지 않다	50.7(404)
1) 그렇다	49.3(393)				
2) 그렇지 않다	50.7(404)				

III. 社會變動과 價値觀의 變化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16.6(64)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17.1(66)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24.4(94)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40.8(157)
	5) 기타	1.0(4)

【표 12】 여성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64.3	35.7
	② 30대 초반	198	49.5	50.5
	③ 30대 후반	189	49.2	50.8
	④ 40대	195	42.1	57.9
	⑤ 50대 이상	86	43.0	57.0
직 업	◎ 교수등	150	59.3	40.7
	① 선관위	50	36.0	64.0
	② 당정책위원회	20	45.0	55.0
	③ 국회공무원	80	48.8	51.3
	④ 행정공무원	99	35.4	64.6
	⑤ 판사	50	36.0	64.0
	⑥ 검사	48	37.5	62.5
	⑦ 변호사	100	47.0	5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60.0	40.0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60.0	40.0
	① 5년미만	316	58.5	41.5
	② 5~9년	185	47.6	52.4
	③ 10~19년	182	42.9	57.1
	④ 20년이상	107	37.4	62.6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57.4	42.6
	② 100~199만원		184	45.7	54.3
	③ 200~299만원		250	42.8	57.2
	④ 300~499만원		126	52.4	47.6
	⑤ 500만원이상		50	60.0	40.0
계층의식	① 상		126	51.6	48.4
	② 중		579	50.1	49.9
	③ 하		89	41.6	58.4
성 향	① 전보적		124	66.1	33.9
	② 중도적		455	43.7	56.3
	③ 보수적		214	50.9	49.1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5	53.6	46.4
	② 중소도시		185	45.9	54.1
	③ 읍·면 이하		171	42.1	57.9

문 항 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여성관련법 규정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② 여성의 권리 의식 부족 또는 법생 활의 불철저	③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④ 남녀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차이	⑤ 기타
연령	① 20대		77	19.5	11.7	23.4	45.5	
	② 30대 초반		97	16.5	18.6	19.6	42.3	3.1
	③ 30대 후반		90	17.8	17.8	24.4	40.0	
	④ 40대		81	9.9	18.5	28.4	42.0	1.2
	⑤ 50대 이상		38	23.7	18.4	28.9	28.9	
직업	◎ 교수등		92	22.8	15.2	26.1	34.8	
	① 선관위		18	11.1	11.1	27.8	50.0	1.1
	② 당정책위원		9	22.2		55.6	22.2	
	③ 국회공무원		39	12.8	20.5	17.9	46.2	
	④ 행정공무원		34	8.8	26.5	17.6	44.1	2.6
	⑤ 판사		18	16.7	5.6	11.1	66.7	2.9
	⑥ 검사		18	11.1	33.3	33.3	22.2	
	⑦ 변호사		41	24.4	14.6	19.5	41.5	
	⑧ 사법연수원생		57	10.5	10.5	26.3	52.6	1.7
	⑨ 박사과정		59	16.9	23.7	27.1	30.5	

III. 社會變動과 價值觀의 變化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여성관련법 규정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② 여성의 권리 의식 부족 또는 법생 활의 불철저	③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④ 남녀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차이	⑤ 기타
총 사 기 간	① 5년미만	176	17.6	15.3	23.9	42.6	0.6
	② 5~9년	87	14.9	19.5	26.4	36.8	2.3
	③ 10~19년	78	15.4	16.7	23.1	43.6	1.3
	④ 20년이상	42	19.0	21.4	21.4	38.1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97	16.5	16.5	22.7	44.3	
	② 100~199만원	84	11.9	15.5	26.2	42.9	3.6
	③ 200~299만원	107	18.7	19.6	24.3	37.4	
	④ 300~499만원	66	18.2	18.2	27.3	34.8	1.5
	⑤ 500만원이상	27	22.2	11.1	14.8	51.9	
계 총 의 식	① 상	62	12.9	17.7	30.6	37.1	1.6
	② 중	283	17.7	18.0	23.7	39.6	1.1
	③ 하	39	15.4	10.3	17.9	56.4	
성 향	① 진보적	79	20.3	17.7	13.9	44.3	3.8
	② 중도적	196	18.4	14.8	27.0	39.8	
	③ 보수적	107	11.2	20.6	26.2	41.1	0.9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227	15.9	18.5	23.3	41.0	1.3
	② 중소도시	84	14.3	16.7	25.0	42.9	1.2
	③ 읍·면 이하	71	21.1	14.1	26.8	38.0	

조사결과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차이를 지적하는 응답이 40.8%였으며 그 다음이 남성의 이해부족 또는 이기심팽배로 인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공동체는 과거 유교적 가족윤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서열의식과 禮 중심의 가족구조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합리성과 민주성이 존중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다만 '94조사와 비교할 때 여성의 법률상 불리한 대우에 관하여 응답자의 49.3%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원인은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 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욕구는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이를 수용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나 의식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법률상 여성의 지위상승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상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한 목표달성시점까지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제고문제와 여성에 대한 참여제고를 위한 법률상 우대문제는 분별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여성의 자기개발노력을 충족시키고 지원하는 교육기회 및 가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제공, 그리고 사회내 여성참여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편견의 개선노력과 같은 간접적 방법이 동등한 자기능력발휘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인 채용이나 가산점을 부여하여는 법제의 도입이라는 직접적 방법보다 별다른 사회적 충격없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소위 3D업종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라 일부 인기있는 직종에 치우쳐져 있다면 객관적 능력이 무시되는 인력운용으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국가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분단상황이라는 우리 나라의 특수성은 미국이나 다른 서구사회와 동일한 선상에서 사회내의 남녀차별을 억제 또는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V. 法專門家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

법의식이란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평가적·감정적 심리상황으로서 법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으로 알고 이를 지키고 생활화하려는 태도라고 넓게 정의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법의식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심리상태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인식·법적 가치판단·법감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법전문가법의식의 조사와 진단은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파악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진단하기 위하여 1) 법에 대한 인상,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법에 대한 인상

1.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1. 法에 대한 印象

'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어지는 단어나 느낌에 대한 질문에 법전문가 중 절반 이상 권위적(34.3%)이거나 엄격하다(26.7%)는 응답을 하여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응답을 하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에 따라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법에 관한 인상이 부정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법전문가에게서는 법이 편파적이라는 응답이 줄어들고 공평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법에 따르는 일반 국민과 법을 다루거나 적용하는 법전문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인상이 다소 다른 것이다.

【표 13】 법에 대한 인상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1. 선생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 공평하다	25.3(200)
	2) 민주적이다	4.3(34)
	3) 엄격하다	26.7(211)
	4) 편파적이다	9.5(75)
	5) 권위적이다	34.3(271)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6)
	2) 대체로 동의한다	18.0(144)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5.5(284)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4(355)

법에 대한 인상은 법적 문제 내지는 법적 경험과는 무관하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자의 법생활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위규범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

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조사결과의 문항간 교차분석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법에 대한 연령·직업·소득·성향별 인상

문 항 1. 선생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공평 하다	② 민주적 이다	③ 엄격 하다	④ 편파적 이다	⑤ 권위적 이다
연령	① 20대	126	19.0	4.0	31.7	7.9	37.3	
	② 30대 초반	197	24.0	2.0	23.9	10.2	39.6	
	③ 30대 후반	186	26.3	5.9	26.3	9.7	31.7	
	④ 40대	194	25.8	3.1	28.4	11.3	31.4	
	⑤ 50대 이상	85	31.8	9.4	23.5	5.9	29.4	
직업	◎ 교수등	148	33.1	5.4	18.9	10.8	31.8	
	① 선관위	48	10.4	2.1	37.5	16.7	33.3	
	② 당정책위원	19	15.8		26.3	21.1	36.8	
	③ 국회공무원	79	13.9	1.3	25.3	12.7	46.8	
	④ 행정공무원	99	22.2	3.0	35.4	7.1	32.3	
	⑤ 판사	50	40.0	10.0	36.0		14.0	
	⑥ 검사	50	38.0	4.0	36.0	2.0	20.0	
	⑦ 변호사	98	31.6	7.1	23.5	7.1	30.6	
	⑧ 사법연수원생	100	26.0	4.0	29.0	3.0	38.0	
	⑨ 박사과정	100	14.0	3.0	17.0	19.0	47.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5	22.9	3.8	27.9	9.5	35.9	
	② 5~9년	184	29.3	2.7	20.1	9.2	38.6	
	③ 10~19년	178	25.3	5.1	29.8	9.6	30.3	
	④ 20년 이상	107	25.2	6.5	29.0	10.3	29.0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22.2	2.8	25.6	9.1	40.3	
	② 100~199만원	183	21.9	4.9	27.3	10.4	35.5	
	③ 200~299만원	246	26.0	2.8	29.7	9.3	32.1	
	④ 300~499만원	126	31.0	7.1	21.4	8.7	31.7	
	⑤ 500만원 이상	50	30.0	8.0	30.0	6.0	26.0	

IV. 法專門家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공평 하다	② 민주적 이다	③ 엄격 하다	④ 편파적 이다	⑤ 권위적 이다
계 총 의식	① 상	125	28.8	4.0	28.0	6.4	32.8	
	② 중	575	25.4	5.0	25.9	8.9	34.8	
	③ 하	88	18.2		29.5	18.2	34.1	
성 향	① 진보적	124	16.9	4.8	16.9	17.7	43.5	
	② 중도적	451	28.4	4.0	28.4	8.4	30.8	
	③ 보수적	214	23.4	4.7	28.5	7.0	36.4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1	24.8	4.9	27.4	9.0	33.9	
	② 중소도시	182	24.2	3.8	24.7	8.8	38.5	
	③ 읍·면 이하	172	27.3	3.5	27.3	10.5	31.4	

특히 연령이 낮거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법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법의식에 있어서 계층간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법의식제고의 방향설정에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다.

2. 紛爭解決方法으로서의 法의 選擇

【표 15】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p>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table> <tr> <td>1) 바람직하다</td> <td>10.7(85)</td> </tr> <tr> <td>2) 합리적이다</td> <td>36.2(288)</td> </tr> <tr> <td>3) 물인정하다</td> <td>32.3(257)</td> </tr> <tr> <td>4) 불쾌하다</td> <td>20.8(165)</td> </tr> </table>	1) 바람직하다	10.7(85)	2) 합리적이다	36.2(288)	3) 물인정하다	32.3(257)	4) 불쾌하다	20.8(165)
1) 바람직하다	10.7(85)								
2) 합리적이다	36.2(288)								
3) 물인정하다	32.3(257)								
4) 불쾌하다	20.8(165)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합리적(36.2%)이거나 바람직하다(10.7%)

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법의식제고와 법치주의 실현에 매우 고무적 이랄 수 있다. '바람직하다' 또는 '합리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의식이 높고 법적인 해결방법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송회피심리에 있어 법전문가는 일반국민과 차이가 많아 소송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또한 법적 분쟁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법전문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표 16】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합리적이다	③ 몰인정하다	④ 불쾌하다
연령	① 20대	126	7.1	34.9	38.1	19.8
	② 30대 초반	197	9.6	37.1	31.0	22.3
	③ 30대 후반	191	10.5	39.3	31.9	18.3
	④ 40대	192	10.4	33.3	34.9	21.4
	⑤ 50대 이상	86	18.6	37.2	22.1	22.1
직업	◎ 교수등	149	17.4	45.0	17.4	20.1
	① 선관위	49	10.2	26.5	38.8	24.5
	② 당정책위원	20	15.0	15.0	50.0	20.0
	③ 국회공무원	80	7.5	27.5	41.3	23.8
	④ 행정공무원	99	9.1	29.3	31.3	30.3
	⑤ 판사	50	10.0	46.0	24.0	20.0
	⑥ 검사	49	4.1	38.8	38.8	18.4
	⑦ 변호사	99	10.1	45.5	31.3	13.1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0	31.0	42.0	17.0
종사 기간	⑨ 박사과정	100	9.0	36.0	34.0	21.0
	① 5년 미만	316	10.4	35.1	35.8	18.7
	② 5~9년	186	12.4	40.9	28.0	18.8
	③ 10~19년	178	7.3	37.1	30.9	24.7
	④ 20년 이상	108	13.9	28.7	33.3	24.1

IV. 法專門家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합리적이다	③ 몰인정하다	④ 불쾌하다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6	9.7	33.0	39.8	17.6	
	② 100~199만원	183	8.7	35.0	26.8	29.5	
	③ 200~299만원	249	10.4	34.1	33.3	22.1	
	④ 300~499만원	126	12.7	44.4	30.2	12.7	
	⑤ 500만원 이상	50	14.0	42.0	30.0	14.0	
계 총 의 식	① 상	126	8.7	42.1	31.7	17.5	
	② 중	577	11.3	36.6	31.5	20.6	
	③ 하	89	9.0	24.7	39.3	27.0	
성 향	① 진보적	123	13.0	32.5	28.5	26.0	
	② 중도적	453	10.6	39.1	30.9	19.4	
	③ 보수적	215	9.8	31.6	38.1	20.5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2	10.0	39.8	29.2	21.1	
	② 중소도시	185	10.3	31.9	38.9	18.9	
	③ 읍·면 이하	172	12.2	31.4	33.7	22.7	

3. 脫法行爲者에 대한 評價

【표 17】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p>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p> <table> <tr> <td>1) 전적으로 동의한다</td> <td>2.0(16)</td> </tr> <tr> <td>2) 대체로 동의한다</td> <td>18.0(144)</td> </tr> <tr> <td>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td> <td>35.5(284)</td> </tr> <tr> <td>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td> <td>44.4(355)</td> </tr> </table>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6)	2) 대체로 동의한다	18.0(144)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5.5(284)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4(355)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6)								
2) 대체로 동의한다	18.0(144)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5.5(284)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4(355)								

탈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불용적인 태도는 사회전반에 걸친 준법정신의 실종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의식이다. 특히 불법행위자에 대한 비판 및 고발정신은 이기적 권리의식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79.9%에 이르는데, 이는 법전문가의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8】 탈법행위자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연령	① 20대	126	4.0	15.1	42.9	38.1	
	② 30대 초반	198	1.0	20.2	31.3	47.5	
	③ 30대 후반	191	2.1	18.8	33.0	46.1	
	④ 40대	195	1.5	16.9	39.5	42.1	
	⑤ 50대 이상	86	2.3	16.3	32.6	48.8	
직업	◎ 교수등	149	0.7	15.4	30.9	53.0	
	① 선관위	50	2.0	22.0	40.0	36.0	
	② 당정책위원	20	20.0	15.0	25.0	40.0	
	③ 국회공무원	80	2.5	22.5	41.3	33.8	
	④ 행정공무원	100	1.0	16.0	39.0	44.0	
	⑤ 판사	50		4.0	34.0	62.0	
	⑥ 검사	50		8.0	44.0	48.0	
	⑦ 변호사	100		21.0	32.0	47.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15.0	43.0	41.0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6.0	31.0	27.0	36.0	
	① 5년 미만	317	3.2	20.5	35.0	41.3	
	② 5~9년	186	1.6	17.7	35.5	45.2	
	③ 10~19년	181	1.7	13.3	38.1	47.0	
	④ 20년 이상	108		18.5	33.3	48.1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2.3	20.5	36.9	40.3	
	② 100~199만원	185	2.2	20.0	37.3	40.5	
	③ 200~299만원	251	1.6	14.7	35.5	48.2	
	④ 300~499만원	126	3.2	16.7	31.0	49.2	
	⑤ 500만원 이상	50		16.0	34.0	50.0	

IV. 法專門家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총 의식	① 상	126	0.8	11.9	42.1	45.2	
	② 중	581	2.1	17.7	35.1	45.1	
	③ 하	89	3.4	28.1	30.3	38.2	
성 향	① 진보적	124	2.4	27.4	32.3	37.9	
	② 중도적	455	2.2	14.9	37.8	45.1	
	③ 보수적	216	1.4	19.0	33.3	46.3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6	2.1	15.8	37.2	45.0	
	② 중소도시	185	1.6	20.0	32.4	45.9	
	③ 읍·면 이하	172	2.3	21.5	36.0	40.1	

V. 法專門家의 法生活

현대사회에서 '법의 지배' 여부는 그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표식이기도 하다. 국가사회의·작동장치로서 수 많은 법규법들은 오늘날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 그 자체를 법생활화하며 그 때마다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 마치 정설인 양 받아들여져 왔다. 그 주요한 요인으로는 유교적 전통과 일제식민통치 및 파행적이었던 현정사의 경험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사회전반적인 구조적 변화와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정치적 민주화과정 등으로 대량소비·대량생산·정보화 등 다원사회로서의 사회변동이 이루어지고 참여적 시민문화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그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다. '전형화 속의 개성유지'는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사회지표로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될수록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의 지배와 법생활의 철저화가 요구되어진다. 특히 참여적 시민문화는 참여의식 내지 권리의식을 고양하고 법생활을 활성화시키는 풍토를 조성하여 국민법의식의 제고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국민처럼 법전문가법의식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준법정신 및 권리의식을 포함한 법전문가의 법생활화의 실태와 수준을 조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조사내용은 크게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등으로 요약된다.

1. 法生活과 法的 經驗

법의 생활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의식적·법제도적·사회적 차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분쟁해결의 방법이나 권리주장의 형식으로서 법을 선택하거나 활용하는데 주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치주의로 지향이 불가피한 우리 사회에서 법에 대한 무관심이나 법과의 충돌은 종국적으로 개인의 집단생활에서 갈등을 가져오고 사회적 평화를 해치기 쉽다. 그러므로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을 조사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사회의 안정성과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을

V. 法專門家의 法生活

확보하는 작업과 직결된다.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대한 평가는 크게 법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적 경험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위하여 1) 법인지 경로, 2) 법인지 욕구, 3) 법교육, 4) 법적 경험, 5) 법지식 등의 내용을 담은 몇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법인지 경로

1. 법령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 법인지 욕구

2.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저축할 때 통장의 약관을 보는가

3.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법교육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의 실태는 어떠하며보다 적절한 법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법적 경험

5.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 法認知 經路

【표 19】 법인지 경로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10. 선생님은 각종 법령을 주로 어떻게 알게 됩니까?	
	1)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보고서	62.9(497)
	2)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25.1(198)
	3) 관보를 보고서	9.2(73)
	4)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1.1(9)
	5) 각종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0.8(6)
	6) 기타	0.9(7)

조사결과 응답자의 62.9%가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보고서 법령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70.9%가 신문·TV 등 대중언론매체를 통하여 생활법률을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된 '94년의 조사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²⁹⁾ 이는 법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입법의 동향을 추적하고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현행법의 내용파악을 요구하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를 통하여 법전문가의 법인지의 경로가 신문·TV 등 대중매체에 의한 일반적인 인지경로보다는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문가로서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0】 연령·직업·소득별 법인지 경로

문 항 10. 선생님은 각종 법령을 주로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전문서적 이나 정기 간행물을 보고서	② 신문이나 TV를 통 해서	③ 관보를 보고서	④ 다른 사람 과 대화 를 통하여	⑤ 각종 캠 퓨터통신 망을 통 하여	⑥ 기타
연 령	① 20대 ② 30대 초반 ③ 30대 후반 ④ 40대 ⑤ 50대 이상		125 197 188 192 85	65.6 70.6 63.8 55.2 56.5	27.2 17.8 22.9 31.3 30.6	4.8 6.6 11.2 10.9 12.9	1.6 2.0 1.6 1.6 1.6	1.0 2.1 2.1 1.0 1.0

29) 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관한 '94 및 '91조사와 '96본조사의 문항은 법인지 경로, 법인지 욕구 등에서 동일하지만, 법인지 경로에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 관보, 컴퓨터통신망을 추가하고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는가,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단체등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들 문항의 삭제는 일상생활 중 국민의 법생활과 법전문가의 법생활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문은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문항으로서 이미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였다.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전문서적 이나 정기 간행물을 보고서	② 신문이나 TV를 통 해서	③ 관보를 보고서	④ 다른 사람 과 대화 를 통하 여	⑤ 각종 컴퓨터통신 망을 통 하여	⑥ 기타
직업	◎ 교수등	146	79.5	15.1	4.1		1.4		
	① 선관위	50	28.0	50.0	20.0	2.0			
	② 당정책위원	18	33.3	55.6	11.1			2.5	
	③ 국회공무원	79	32.9	49.4	13.9	1.3			3.0
	④ 행정공무원	100	49.0	23.0	24.0	1.0			8.3
	⑤ 판사	48	66.7	18.8	6.3				
	⑥ 검사	50	62.0	18.0	16.0	4.0			
	⑦ 변호사	99	76.8	18.2	4.0	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65.0	31.0	3.0	1.0			
	⑨ 박사과정	100	82.0	12.0	2.0	2.0	2.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5	66.0	25.1	6.0	1.3	0.6	1.0	
	② 5~9년	183	69.9	18.6	7.1	1.6	1.6	1.1	
	③ 10~19년	179	57.5	26.3	15.1		0.6	0.6	
	④ 20년 이상	106	49.1	35.8	12.3	1.9		0.9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73.9	21.0	2.8	1.7	0.6		
	② 100~199만원	184	56.0	28.3	12.5	1.1	1.1	1.1	
	③ 200~299만원	244	54.9	27.5	13.9	1.2	0.8	1.6	
	④ 300~499만원	126	67.5	24.6	7.1			0.8	
	⑤ 500만원 이상	50	76.0	16.0	4.0	2.0	2.0		
계층의식	① 상	124	71.8	22.6	4.0	0.8	0.8		
	② 중	574	61.1	25.6	10.1	1.2	0.9	1.0	
	③ 하	89	60.7	25.8	11.2	1.1		1.1	
성향	① 진보적	125	56.0	30.4	8.8	2.4	0.8	1.6	
	② 중도적	447	66.4	21.3	9.8	0.7	0.7	1.1	
	③ 보수적	214	59.3	30.4	7.9	1.4	0.9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3	64.0	24.7	8.3	1.4	0.9	0.7	
	② 중소도시	181	61.9	24.3	11.0	0.6	0.6	1.7	
	③ 읍·면 이하	170	61.2	27.1	10.0	1.2		0.6	

2) 法認知 欲求

【표 21】 법인지 욕구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14. 선생님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14.0(112)
2)	대충 본다	65.3(522)
3)	보지 않는다	20.8(166)
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87.0(696)
2)	그렇지 않다	13.0(104)

법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법생활의 철저화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며 법인지의 욕구가 강한 자는 고발정신이 높고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보장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조사결과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자세히 본다'는 응답이 14%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국민이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약관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비하여 오히려 법전문가들이 대충 보거나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표 22】 법인지 욕구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14. 선생님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자세히 본다	② 대충 본다	③ 보지 않는다
연령	① 20대	126	15.1	63.5	21.4
	② 30대 초반	198	13.6	69.7	16.7
	③ 30대 후반	191	15.7	71.2	13.1
	④ 40대	196	10.7	63.3	26.0
	⑤ 50대 이상	86	16.3	50.0	33.7
직업	◎ 교수등	150	21.3	59.3	19.3
	① 선관위	50	12.0	64.0	24.0
	② 당정책위원	20	25.0	55.0	20.0
	③ 국회공무원	80	7.5	70.0	22.5
	④ 행정공무원	100	6.0	67.0	27.0
	⑤ 판사	50	24.0	70.0	6.0
	⑥ 검사	50	2.0	88.0	10.0
	⑦ 변호사	100	15.0	64.0	2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6.0	66.0	28.0
	⑨ 박사과정	100	23.0	58.0	19.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7	15.8	65.9	18.3
	② 5~9년	186	12.9	67.2	19.9
	③ 10~19년	182	15.4	68.7	15.9
	④ 20년 이상	108	8.3	52.8	38.9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3.6	62.5	23.9
	② 100~199만원	185	11.9	70.8	17.3
	③ 200~299만원	251	11.2	66.9	21.9
	④ 300~499만원	127	19.7	62.2	18.1
	⑤ 500만원 이상	50	22.0	58.0	20.0
계층의식	① 상	126	15.1	66.7	18.3
	② 중	582	13.2	66.5	20.3
	③ 하	89	16.9	55.1	28.1
성향	① 진보적	125	14.4	59.2	26.4
	② 중도적	455	14.1	67.0	18.9
	③ 보수적	216	13.0	65.3	21.8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15.8	64.1	20.1
	② 중소도시	185	13.0	68.1	18.9
	③ 읍·면 이하	172	9.9	65.7	24.4

문 항 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95.2	4.8
	② 30대 초반	198	91.4	8.6
	③ 30대 후반	191	82.7	17.3
	④ 40대	196	87.2	12.8
	⑤ 50대 이상	86	75.6	24.4
직업	◎ 교수등	150	83.3	16.7
	① 선관위	50	92.0	8.0
	② 당정책위원	20	95.0	5.0
	③ 국회공무원	80	96.3	3.8
	④ 행정공무원	100	83.0	17.0
	⑤ 판사	50	78.0	22.0
	⑥ 검사	50	78.0	22.0
	⑦ 변호사	100	83.0	17.0
	⑧ 사법연수원생	100	95.0	5.0
	⑨ 박사과정	100	90.0	10.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7	91.5	8.5
	② 5~9년	186	87.6	12.4
	③ 10~19년	182	83.0	17.0
	④ 20년 이상	108	80.6	19.4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93.8	6.3
	② 100~199만원	185	90.8	9.2
	③ 200~299만원	251	83.3	16.7
	④ 300~499만원	127	80.3	19.7
	⑤ 500만원 이상	50	84.0	16.0
계층의식	① 상	126	84.1	15.9
	② 중	582	87.3	12.7
	③ 하	89	89.9	10.1
성향	① 진보적	125	90.4	9.6
	② 중도적	455	85.9	14.1
	③ 보수적	216	87.0	13.0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88.1	11.9
	② 중소도시	185	83.8	16.2
	③ 읍·면·이하	172	87.8	12.2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주장이 지배적인 경우 법치주의 확립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범인의 욕구가 강할수록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을 선

V. 法專門家의 法生活

택하는데 긍정적이라는 사실에서도 이는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법전문가의 법조문과 법률용어에의 친숙도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87%가 법조문이나 법률용어의 난해성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나 직업에 있어서 법조문이나 법령용어에 대한 지식이 많은 법전문가들이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행법령상 조문과 법령용어가 난해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요컨대 법조문과 법령용어의 난해성에 대한 압도적인 지적에 대하여 관계당국과 법조 및 법학계는 국민 법생활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991년 말에 「행정용어바르게쓰기에관한규정」의 제정에 따라 법령용어를 포함한 행정용어 전반에 걸친 순화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기존 법령용어순화작업을 통폐합하여 총무처와 법제처, 그리고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행정용어순화작업을 하였는데 1992년 12월에 발간된 『행정용어 순화편람』³⁰⁾은 국어심의회, 행정용어순화위원회 등의 심의조정을 거친 용어가 8,637개로 확정되었다. 이 중 법령용어가 1,000여개이고, 기존 제1·2·3차의 『법령용어순화편람』까지 합하면 2,9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법생활화를 위한 법령용어순화작업은 법령에 대한 친숙도가 낮은 우리의 법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3) 法教育

【표 23】 법교육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13. 다음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법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대한민국정부, 『행정용어순화편람』(총무처, 1992).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1) 매우 잘되고 있다	0.4(3)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8.5(68)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77.9(621)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13.2(105)
	나) 선생님은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지식	9.5(76)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30.4(243)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6.9(55)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3.2(425)
	5) 기타	

조사결과 현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실태에 대하여 압도적으로(91.1%) 비판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³¹⁾을 분석하면, 초등학교에서는 ① 학교생활·이웃생활에서의 규칙, ② 우리들의 모습, ③ 고장의 공동생활과 질서, ④ 사회규범과 준법정신, ⑤ 국가와 올바른 국민생활, ⑥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모습 등이 그 주요골자로 이루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① 사회생활과 규범·국가입법·민주주의와 법·준법정신과 사회발전, ③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① 법의 의의와 준법정신, 국가생활과 법·개인생활과 법·사회속에 생활과 법, ② 우리나라의 헌법 등이 주요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초·중·고등 교육단계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헌법교육과 공동생활에서의 준법정신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준법정신의 함

31) 여기에서 참조한 사회과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으로서 국민·중학교는 95년 2월까지 고등학교는 96년 2월까지 사용되는 현행교과서의 교육과정이며 ①, ②, ③ 등의 부호는 학년표식임.

V. 法專門家의 法生活

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의 정립(53.2%)'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30.4%)'에 대다수의 응답이 집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교육과정 개편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올바른 인간상 정립'은 국민 법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법교육적 측면의 한 지표로서 동양적인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중 법교육 부문이 지나치게 현법내용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현실과 국가적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과거 법교육이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온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9.5%)'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30.4%)'에 법교육의 중점을 두어져야 한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문화와 법현실이 우리와는 판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1978년 법교육법(Law-Related Education Act)을 제정하면서 법교육의 실체를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에서 법과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이해·기능·태도·평가를 개발할 기회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둔 경과를³²⁾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94조사와 대비하여 일반국민보다 법전문가가 법교육실태에 관하여 더욱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적절한 법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4】 법교육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 항 13.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 가) 선생님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2) Carolyn Pereira,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ocial Science Education* (1988), p.11.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매우 잘 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되고 있다	③ 별로 되고 있지 않다	④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1.6	3.2	77.8	17.5	
	② 30대 초반	198	0.5	8.1	77.3	14.1	
	③ 30대 후반	190		10.0	73.7	16.3	
	④ 40대	194		9.8	83.5	6.7	
	⑤ 50대 이상	86		10.5	77.9	11.6	
직업	◎ 교수등	149		6.7	75.8	17.4	
	① 선관위	50		6.0	88.0	6.0	
	② 당정책위원	20		10.0	85.0	5.0	
	③ 국회공무원	80		7.5	78.8	13.8	
	④ 행정공무원	99		11.1	79.8	9.1	
	⑤ 판사	49		16.3	75.5	8.2	
	⑥ 검사	50	2.0	10.0	78.0	10.0	
	⑦ 변호사	100		12.0	75.0	1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0	7.0	78.0	13.0	
	⑨ 박사과정	100		4.0	76.0	20.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7	0.9	7.3	77.3	14.5	
	② 5~9년	185		4.9	81.1	14.1	
	③ 10~19년	182		14.3	75.3	10.4	
	④ 20년 이상	106		7.5	79.2	13.2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1	5.7	77.3	15.9	
	② 100~199만원	185	0.5	8.6	77.3	13.5	
	③ 200~299만원	251		10.0	78.5	11.6	
	④ 300~499만원	124		4.8	79.8	15.3	
	⑤ 500만원 이상	50		18.0	76.0	6.0	
계층 의식	① 상	126	0.8	10.3	73.8	15.1	
	② 중	579	0.3	7.9	78.9	12.8	
	③ 하	89		9.0	77.5	13.5	
성향	① 진보적	125		5.6	72.8	21.6	
	② 중도적	453	0.7	9.3	78.6	11.5	
	③ 보수적	215		8.8	79.1	12.1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6	0.7	8.3	76.6	14.4	
	② 중소도시	184		7.1	82.1	10.9	
	③ 읍·면 이하	171		10.5	76.6	12.9	

V. 法専門家의 法生活

문 항 13.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선생님은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②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③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④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연령	① 20대	126	12.7	31.0	11.9	44.4
	② 30대 초반	198	13.6	25.8	7.6	53.0
	③ 30대 후반	190	5.3	31.6	8.4	54.7
	④ 40대	196	8.2	35.7	2.0	54.1
	⑤ 50대 이상	86	5.8	26.7	5.8	61.6
직업	◎ 교수등	150	12.0	31.3	2.7	54.0
	① 선관위	50	2.0	44.0	2.0	52.0
	② 당정책위원	20	10.0	15.0	15.0	60.0
	③ 국회공무원	80	12.5	28.8	8.8	50.0
	④ 행정공무원	100	7.0	37.0	7.0	49.0
	⑤ 판사	49	6.1	26.5	6.1	61.2
	⑥ 검사	50	4.0	38.0	4.0	54.0
	⑦ 변호사	100	8.0	26.0	5.0	6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2.0	33.0	10.0	45.0
	⑨ 박사과정	100	13.0	20.0	13.0	54.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7	10.7	30.0	9.1	50.2
	② 5~9년	186	9.7	30.1	7.5	52.7
	③ 10~19년	181	9.4	29.3	5.5	55.8
	④ 20년 이상	108	5.6	34.3	1.9	58.3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3.1	27.8	11.9	47.2
	② 100~199만원	185	9.7	31.4	8.1	50.8
	③ 200~299만원	251	6.8	31.9	5.6	55.8
	④ 300~499만원	126	8.7	31.7	0.8	58.7
	⑤ 500만원 이상	50	10.0	26.0	8.0	56.0
계층 의식	① 상	126	12.7	27.8	7.9	51.6
	② 중	581	9.1	31.0	6.4	53.5
	③ 하	89	7.9	31.5	9.0	51.7
성향	① 진보적	125	13.6	29.6	12.8	44.0
	② 중도적	454	9.5	32.2	5.9	52.4
	③ 보수적	216	7.4	27.8	5.1	59.7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7	10.5	31.1	8.5	49.9
	② 중소도시	185	9.2	27.0	4.3	59.5
	③ 읍·면 이하	171	7.0	32.7	5.3	55.0

4) 法的 經驗

【표 25】 법적 경험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42.1(335)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52.3(416)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4.3(34)
	4) 기타	1.4(11)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1) 그렇다	7.1(57)
	2) 대체로 그렇다	65.1(521)
	3) 별로 그렇지 않다	26.4(211)
	4) 전혀 그렇지 않다	1.4(11)

법생활의 행위 및 심리적 측면은 법적인 문제로 인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한국인은 '한 솔의 밥먹고 송사한다'라는 속담처럼 소송회피심리가 농후하고 행정관청에 찾아가는 것을 꺼리며, 법과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과거 법의식에 관한 기존 정설이었으나 '94조사 결과³³⁾는 이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96본조사에서 더 뚜렷해졌는데 42% 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 내지는 정의실현으로 생각함으로써 한국인의 법의식 중 소송회피심리가 농후하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좋은 징표가 된다.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또한 소송회피심리에 있어 일반국민과 차이가 많아 소송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또한 법적 분쟁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법전문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낮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수성향이거나 계층의식이 낮은 경우 아직도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는 것을 시간·비용·불명예 등의 이유로 꺼리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33) 본 보고서 42면을 참조할 것.

【표 26】 소송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나의 권리실현 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③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 가 불명예스 럽다	④ 기 타
연령	① 20대	125	42.4	52.8	3.2	1.6	
	② 30대 초반	198	41.4	54.0	2.0	2.5	
	③ 30대 후반	190	51.6	43.7	3.7	1.1	
	④ 40대	194	35.1	58.2	6.2	0.5	
	⑤ 50대 이상	86	38.4	52.3	8.1	1.2	
직업	◎ 교수등	150	48.7	46.0	2.7	2.7	
	① 선관위	49	18.4	75.5	6.1		
	② 당정책위원	18	33.3	55.6	11.1		
	③ 국회공무원	80	20.0	73.8	6.3		
	④ 행정공무원	99	25.3	65.7	9.1		
	⑤ 판사	50	80.0	16.0	4.0		
	⑥ 검사	50	34.0	58.0	8.0		
	⑦ 변호사	100	68.0	29.0	1.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3.0	51.0	4.0	2.0	
	⑨ 박사과정	100	38.0	59.0		3.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6	42.7	52.8	3.2	1.3	
	② 5~9년	185	47.0	49.2	1.6	2.2	
	③ 10~19년	180	37.8	53.9	7.2	1.1	
	④ 20년 이상	108	38.0	53.7	7.4	0.9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42.0	52.8	2.8	2.3	
	② 100~199만원	183	33.3	60.7	4.9	1.1	
	③ 200~299만원	249	34.1	58.6	6.8	0.4	
	④ 300~499만원	127	57.5	37.0	2.4	3.1	
	⑤ 500만원 이상	50	66.0	34.0			
계층 의식	① 상	125	51.2	44.8	2.4	1.6	
	② 중	579	41.6	52.7	4.3	1.4	
	③ 하	89	31.5	60.7	6.7	1.1	
성향	① 진보적	124	46.0	49.2	2.4	2.4	
	② 중도적	452	42.3	52.7	3.8	1.3	
	③ 보수적	216	39.4	53.2	6.5	0.9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4	45.4	50.2	2.5	1.8	
	② 중소도시	184	37.5	55.4	5.4	1.6	
	③ 읍·면 이하	172	38.4	54.1	7.6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91조사 당시 약 65%가 원칙대로 하면 일이 잘 처리된다고 응답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동일한 설문에 '94조사에서도 약 75%가 저자세·압력·뇌물공세 등 보다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행정능률화 또는 민원처리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96본조사에서는 설문을 약간 변경하여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하는가로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72.2%를 넘어 행정관청의 업무가 원칙대로 처리된다는데 긍정적으로 보고있었다.

그런데 【표 27】에서 보듯이 짧은 층이고, 법률전문업무종사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개인속득이 낮을수록 행정관청에서 업무처리가 법규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이 계층에 법불신풍조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27】 연령·직업·소득·지역규모별 응답

문 항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5.6	59.5	31.7	3.2
	② 30대 초반	198	5.6	60.6	32.8	1.0
	③ 30대 후반	191	8.9	66.5	23.0	1.6
	④ 40대	196	8.2	68.4	23.5	
	⑤ 50대 이상	86	7.0	73.3	17.4	2.3
직업	◎ 교수등	150	2.7	59.3	36.7	1.3
	① 선관위	50	20.0	72.0	8.0	
	② 당정책위원	20	5.0	75.0	20.0	
	③ 국회공무원	80	5.0	71.3	22.5	1.3
	④ 행정공무원	100	18.0	69.0	12.0	1.0
	⑤ 판사	50	2.0	82.0	16.0	
	⑥ 검사	50	10.0	76.0	14.0	
	⑦ 변호사	100	4.0	68.0	26.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0	63.0	31.0	2.0
	⑨ 박사과정	100	6.0	45.0	46.0	3.0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종 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7	6.6	59.0	32.2	2.2	
	② 5~9년	186	5.4	66.7	27.4	0.5	
	③ 10~19년	182	9.9	65.9	23.1	1.1	
	④ 20년 이상	108	7.4	77.8	13.9	0.9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6	4.0	56.8	37.5	1.7	
	② 100~199만원	185	12.4	63.8	23.2	0.5	
	③ 200~299만원	251	8.8	69.7	19.9	1.6	
	④ 300~499만원	127	2.4	67.7	29.1	0.8	
	⑤ 500만원 이상	50	4.0	74.0	20.0	2.0	
계 총 의 식	① 상	126	3.2	67.5	28.6	0.8	
	② 중	582	7.4	65.5	25.8	1.4	
	③ 하	89	11.2	58.4	28.1	2.2	
성 향	① 진보적	125	8.8	56.8	32.8	1.6	
	② 중도적	455	6.2	66.8	26.2	0.9	
	③ 보수적	216	8.3	65.7	23.6	2.3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7	7.3	62.9	28.6	1.1	
	② 중소도시	185	4.3	68.1	25.4	2.2	
	③ 읍·면 이하	172	9.9	66.9	22.1	1.2	

5) 法知識

【표 28】 법지식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p>11. 특정 전문분야(유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전문가가 전문분야를 직접 연구하기보다는 그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전적으로 찬성한다 17.3(138) 2) 대체로 찬성한다 63.3(504)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7.5(139)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9(15)</p>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12.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법률자문에 응할 때 이들이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0.4(3)
2)	대체로 잘 알고 있다	17.5(140)
3)	별로 알고 있지 않다	77.6(619)
4)	전혀 모르고 있다	4.5(36)

법전문가의 법지식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평가는 법의식의 제고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안강구에 유용하다. '사실의 무지는 용서되지만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tia excusatur, non juris sed facti)'라는 법언을 상기할 때 현행법제의 개선과 홍보 및 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전문가의 법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법이란 탄생되는(제정·공포·시행) 순간 법에 대한 인지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그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표 29】 연령·직업·소득·지역규모별 법지식

문항 11. 특정 전문분야(유전자 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전문가가 전문분야를 직접 연구하기 보다는 그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연 령	① 20대	126	7.1	74.6	17.5	0.8
	② 30대 초반	197	17.3	61.9	19.3	1.5
	③ 30대 후반	190	17.9	56.8	21.6	3.7
	④ 40대	195	17.9	69.2	11.8	1.0
	⑤ 50대 이상	85	30.6	50.6	17.6	1.2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직 업	◎ 교수등	149	23.5	51.7	21.5	3.4	
	① 선관위	50	28.0	66.0	6.0		
	② 당정책위원	20	5.0	99.0	5.0		
	③ 국회공무원	80	18.8	72.5	8.8		
	④ 행정공무원	100	14.0	64.0	20.0	2.0	
	⑤ 판사	49	14.3	63.3	16.3	6.1	
	⑥ 검사	49	18.4	65.3	16.3		
	⑦ 변호사	99	14.1	58.6	24.2	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4.0	67.0	18.0	1.0	
	⑨ 박사과정	100	15.0	66.0	18.0	1.0	
종 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7	14.5	68.8	15.1	1.6	
	② 5~9년	185	14.6	56.8	25.9	2.7	
	③ 10~19년	180	18.3	66.1	13.9	1.7	
	④ 20년 이상	107	29.0	54.2	15.9	0.9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4.2	67.0	18.2	0.6	
	② 100~199만원	185	16.2	65.9	16.8	1.1	
	③ 200~299만원	248	18.5	64.1	14.5	2.8	
	④ 300~499만원	127	20.5	56.7	19.7	3.1	
	⑤ 500만원 이상	49	14.3	57.1	28.6		
계 총 의 식	① 상	125	16.8	56.8	25.6	0.8	
	② 중	579	17.3	64.8	16.1	1.9	
	③ 하	89	19.1	62.9	15.7	2.2	
성 향	① 진보적	124	19.4	62.9	17.7		
	② 중도적	453	16.8	61.1	19.6	2.4	
	③ 보수적	215	17.7	67.4	13.0	1.9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4	15.9	62.9	19.6	1.6	
	② 중소도시	185	18.9	63.2	15.7	2.2	
	③ 읍·면 이하	171	19.3	64.9	14.0	1.8	

문 항 12.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법률자문에 응할 때 이들이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알고 있다	③ 별로 알고 있지 않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연 령	① 20대	126	0.8	11.1	84.1	4.0	
	② 30대 초반	198		17.7	77.8	4.5	
	③ 30대 후반	190	1.1	21.6	71.6	5.8	
	④ 40대	195		13.8	81.5	4.6	
	⑤ 50대 이상	86		25.6	72.1	2.3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알고 있다	③ 별로 알고 있지 않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직 업	◎ 교수등	150		17.3	76.7	6.0	
	① 선관위	50		14.0	84.0	2.0	
	② 당정책위원	20		35.0	60.0	5.0	
	③ 국회공무원	79		11.4	84.8	3.8	
	④ 행정공무원	100	1.0	23.0	72.0	4.0	
	⑤ 판사	50		16.0	80.0	4.0	
	⑥ 검사	49		16.3	79.6	4.1	
	⑦ 변호사	100	1.0	18.0	74.0	7.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8.0	80.0	2.0	
	⑨ 박사과정	100	1.0	16.0	78.0	5.0	
종 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7	0.3	17.4	77.9	4.4	
	② 5~9년	186	0.5	15.1	78.5	5.9	
	③ 10~19년	180	0.6	19.4	75.0	5.0	
	④ 20년 이상	108		18.5	79.6	1.9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6	0.6	18.2	79.0	2.3	
	② 100~199만원	185	0.5	17.3	76.8	5.4	
	③ 200~299만원	249	0.4	16.5	78.3	4.8	
	④ 300~499만원	127		16.5	77.2	6.3	
	⑤ 500만원 이상	50		24.0	72.0	4.0	
계 총 의 식	① 상	126		16.7	79.4	4.0	
	② 중	581	0.5	17.0	78.3	4.1	
	③ 하	88		22.7	69.3	8.0	
성 향	① 진보적	125	0.8	12.8	79.2	7.2	
	② 중도적	454		19.8	76.7	3.5	
	③ 보수적	215	0.9	15.3	79.1	4.7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5	0.5	18.9	75.9	4.8	
	② 중소도시	185	0.5	14.1	81.6	3.8	
	③ 읍·면 이하	172		18.6	76.7	4.7	

그러나 일반국민의 법지식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위사람들의 법률자문에 응할 때 이들이 법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하는 설문에 별로 알고 있지않다 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77.6% 와 4.5%에 이르러 일반국민의 법지식과 법과의 일체감이 결코 비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전문가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일반국민이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결국 사회에서 “법률정보의 생활화” 가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을 분석한 결과, 법생활이 상당히 전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지 경로가 전문화되어 있으며 행정관

청에서의 일처리에 있어서 법에 따라 준수되고 있다는 사고가 정착되었으며 대의명분이 뚜렷한 새로운 법제에의 적응도가 높고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특정 전문분야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뢰하여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80.6%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은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지식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과학기술사회,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법전문가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호의적인 응답이 거의 절대적인 것은 이 분야에서는 법전문가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짧은 충이고, 법률전문업무종사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개인속득이 낮을수록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가 법규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된다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법전문가들 중 이 계층에 법불신풍조가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 遵法精神과 權利意識

'법은 사람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정하여도 이익이 없다(frustra feruntur leges nisi subditus est obedientibus)'라는 법언처럼 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는 법치주의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한 법의식이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고쳐질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의 정당성에 중대한 과해가 있는 경우에도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옳기 때문에 지키는 정신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과거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애국적 반항의식과 수탈정책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헌정사의 과행 등으로 인하여 준법정신이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기초마저 혼들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여야만 법치주의의 확립을 향한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법준수도에 관한 법전문가의 인식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서는 1) 준법정신, 2) 고발정신, 3) 권리의식이라는 두 차원에서 진단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조사는 이에 관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준법정신

1.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은 누구인가
2. 정치·행정·경제·노사관계·교육계·교통질서 등에서 법질서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고발정신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4.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5.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는 무엇이며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권리의식

6.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7.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 遵法精神

【표 30】 준법질서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p>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0%;">1) 그렇다</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8.3(66)</td> </tr> <tr> <td>2) 그렇지 않다</td> <td style="text-align: right;">91.7(730)</td> </tr> </table>	1) 그렇다	8.3(66)	2) 그렇지 않다	91.7(730)
1) 그렇다	8.3(66)				
2) 그렇지 않다	91.7(730)				

V. 法專門家의 法生活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2.9(21)
	2)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34.9(249)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39.6(282)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0.8(77)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11.8(84)
	다) 다음 중 누가 <u>가장</u>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인	71.9(508)
	2) 공무원	2.8(20)
	3) 법조인	4.2(30)
	4) 기업인	14.3(101)
	5) 근로자	1.0(7)
	6) 교육자	1.4(10)
	7) 대학생	1.0(7)
	8) 기타	3.4(24)

전체 응답자중 91.7%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법전문가는 우리 사회의 준법질서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응답자 개개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진단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준법질서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다소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준법정신의 결여가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과 상승작용을 하여 법경시 풍조를 놓을 경우 법치국가 실현은 요원하게 된다. '91조사(82.4%) 및 '94조사(78.9%)와 비교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은 법전문가들이 법위반자들을 많이 접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0.8%)',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11.8%)'보다는 주로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39.6%)',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34.9%)' 등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라는 답변은 일반국민의 응답(32.5%)과 법전문가의 응답(2.9%) 사이

에 차이가 많았다. 사회의 준법질서를 깨뜨리는 주요 집단으로 정치인(71.9%)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기업인(14.3%), 법조인(4.2%), 공무원(2.8%), 교육자(1.4%), 근로자(1.0%) 등을 꼽았다.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솔선수범이 다시금 강조되는 대목이다.

법생활중 준법정신과 고발정신 및 권리의식에 관한 기본빈도의 분포를 보면, 준법질서에서의 규칙준수에 대한 태도는 과거의 조사에서보다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94 및 '91조사는 법의 절차와 복잡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나 '96본조사에서 법전문가들은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누가 가장 잘 법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문항에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여 법전문가의 경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강한 반면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일반국민보다 높았다.

【표 31】 준법질서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문 항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12.7	87.3	
	② 30대 초반	197	5.6	94.4	
	③ 30대 후반	191	8.9	91.1	
	④ 40대	195	7.7	92.3	
	⑤ 50대 이상	84	8.3	91.7	
직 업	◎ 교수등	149	6.0	94.0	
	① 선관위	50	8.0	92.0	
	② 당정책위원	19	15.8	84.2	
	③ 국회공무원	80	5.0	95.0	
	④ 행정공무원	99	9.1	90.9	
	⑤ 판 사	50	10.0	90.0	
	⑥ 검 사	50	8.0	92.0	
	⑦ 변호사	99	12.1	87.9	
	⑧ 사법연수원생	100	9.0	91.0	
	⑨ 박사과정	100	7.0	93.0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6	7.9	92.1	
	② 5~9년	186	7.0	93.0	
	③ 10~19년	181	9.9	90.1	
	④ 20년 이상	106	8.5	91.5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9.7	90.3	
	② 100~199만원	185	8.1	91.9	
	③ 200~299만원	251	5.2	94.8	
	④ 300~499만원	123	10.6	89.4	
	⑤ 500만원 이상	50	14.0	86.0	
계층의식	① 상	126	9.5	90.5	
	② 중	578	8.5	91.5	
	③ 하	89	5.6	94.4	
성 향	① 진보적	124	5.6	94.4	
	② 중도적	454	9.3	90.7	
	③ 보수적	215	7.9	92.1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6	8.7	91.3	
	② 중소도시	184	6.5	93.5	
	③ 읍·면 이하	170	9.4	90.6	

문 항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법의 절차 가 복잡하 고 자주 바 뀌니까	② 법이 현실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③ 법의 집행 이 엄격하 지 못하므 로	④ 법대로 살 면 손해를 보니까	⑤ 법 이외의 다른 방법 이 편리하 므로
연령	① 20대	108	3.7	32.4	39.8	11.1	13.0	
	② 30대 초반	181	1.7	37.0	33.7	12.7	14.9	
	③ 30대 후반	170	2.4	39.4	37.6	9.4	11.2	
	④ 40대	175	4.0	31.4	44.0	10.9	9.7	
	⑤ 50대 이상	76	3.9	32.9	47.4	7.9	7.9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②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③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④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⑤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직업	◎ 교수등	137	1.5	35.8	39.4	10.9	12.4	
	① 선관위	46	4.3	28.3	50.0	8.7	8.7	
	② 당정책위원	16		50.0	43.8	6.3		
	③ 국회공무원	73	8.2	31.5	37.0	19.2	4.1	
	④ 행정공무원	87	5.7	33.3	46.0	9.2	5.7	
	⑤ 판사	44		25.0	43.2	13.6	18.2	
	⑥ 검사	45		33.3	37.8	6.7	22.2	
	⑦ 변호사	84	2.4	41.7	38.1	7.1	10.7	
	⑧ 사법연수원생	88		36.4	36.4	12.5	14.8	
	⑨ 박사과정	93	4.3	36.6	33.3	9.7	16.1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281	3.2	35.9	34.9	12.8	13.2	
	② 5~9년	171	2.9	37.4	38.6	8.8	12.3	
	③ 10~19년	157	1.9	33.1	45.2	10.2	9.6	
	④ 20년 이상	98	4.1	30.6	45.9	10.2	9.2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55	3.2	36.8	33.5	11.0	15.5	
	② 100~199만원	166	4.2	34.3	38.0	11.4	12.0	
	③ 200~299만원	231	3.5	31.2	44.2	10.0	11.3	
	④ 300~499만원	109		38.5	40.4	12.8	8.3	
	⑤ 500만원 이상	43	2.3	44.2	37.2	7.0	9.3	
계층의식	① 상	111	2.7	27.9	40.5	18.9	9.9	
	② 중	520	2.9	36.3	40.6	8.7	11.5	
	③ 하	79	3.8	35.4	32.9	13.9	13.9	
성향	① 진보적	112	0.9	36.6	38.4	12.5	11.6	
	② 중도적	405	2.2	35.8	38.8	10.6	12.6	
	③ 보수적	194	5.7	32.0	42.3	10.3	9.8	
지역규모	① 대도시	391	3.1	35.0	39.9	8.2	13.8	
	② 중소도시	165	3.6	35.8	37.6	12.7	10.3	
	③ 읍·면 이하	151	2.0	32.5	42.4	15.9	7.3	

문항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명)	① 정치인	② 공무원	③ 법조인	④ 기업인	⑤ 근로자	⑥ 교육자	⑦ 대학생	⑧ 기타
연령	① 20대		106	68.9	1.9	3.8	16.0	0.9	1.9	1.9	4.7
	② 30대 초반		182	75.3	3.3	3.3	15.9	0.5	0.5		1.1
	③ 30대 후반		168	70.8	1.8	7.1	13.7	1.8	0.6	0.6	3.6
	④ 40대		174	73.0	2.9	3.4	14.9		1.7	0.6	3.4
	⑤ 50대 이상		74	68.9	5.4	2.7	6.8	2.7	2.7	4.1	6.8
직업	◎ 교수등		129	72.9	4.7	1.6	12.4	1.6	4.7	0.8	1.6
	① 선관위		47	87.2	2.1	2.1	2.1			4.3	2.1
	② 당정책위원		17	23.5	5.9	23.5	35.3			5.9	5.9
	③ 국회공무원		73	47.9	4.1	8.2	31.5	1.4	1.4		5.5
	④ 행정공무원		89	74.2	2.2	5.6	13.5			1.1	3.4
	⑤ 판사		48	72.9		4.2	16.7				6.3
	⑥ 검사		45	75.6	2.2	4.4	15.6				2.2
	⑦ 변호사		82	74.4	2.4	2.4	13.4	1.2			6.1
	⑧ 사법연수원생		85	80.0	2.4	1.2	10.6	2.4	1.2	1.2	1.2
	⑨ 박사과정		92	76.1	2.2	5.4	8.7	1.1	2.2	1.1	3.3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276	71.0	2.2	5.1	15.9	1.4	1.1	1.1	2.2
	② 5~9년		168	72.6	3.0	3.0	16.7	1.2			3.6
	③ 10~19년		160	70.6	3.1	4.4	15.0		2.5	1.3	3.1
	④ 20년 이상		97	74.2	4.1	4.1	5.2	1.0	2.1	2.1	7.2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50	80.7	2.0	3.3	8.7	1.3	0.7	0.7	2.7
	② 100~199만원		169	60.4	3.6	5.9	23.7	1.2	1.2	1.2	3.0
	③ 200~299만원		230	72.2	2.6	3.5	15.7	0.9	1.3	1.3	2.6
	④ 300~499만원		109	74.3	2.8	4.6	7.3	0.9	2.8	0.9	6.4
	⑤ 500만원 이상		39	82.1		5.1	7.7				5.1
계층의식	① 상		110	74.5	5.5	3.6	13.6		0.9		1.8
	② 중		517	70.0	2.5	4.6	15.5	1.2	1.4	1.2	3.7
	③ 하		77	80.5	1.3	2.6	7.8	1.3	1.3	1.3	3.9
성향	① 진보적		112	70.5	3.6	5.4	15.2	0.9			4.5
	② 중도적		397	69.5	2.3	4.8	17.1	0.5	1.5	1.0	3.3
	③ 보수적		195	77.4	3.6	2.6	7.7	2.1	2.1	1.5	3.1
지역규모	① 대도시		387	73.4	3.1	3.9	15.0	1.0	0.8	0.8	2.1
	② 중소도시		164	70.7	2.4	4.9	16.5	0.6	1.2	1.2	2.4
	③ 읍·면·이하		150	69.3	2.7	4.7	10.0	1.3	2.7	1.3	8.0

각 분야별 법준수도의 경우 현재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91조사 및 '94조사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동안의 변화를 통하여 각 분야별 법준수의 현황에 대한 유용한 통계수치를 얻을 수 있다.

【표 32】 분야별 법준수도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 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 다	3) 별로 지켜 지고 있지 않 다	4) 전혀 지켜 지고 있지 않다
가) 정치부문	0.4(3)	3.8(30)	63.5(505)	32.3(257)	
나) 행정부문	2.6(21)	67.9(540)	28.7(228)	0.8(6)	
다) 경제부문	0.1(1)	25.8(204)	69.3(548)	4.8(38)	
라) 노사부문	0.4(3)	31.9(252)	63.8(504)	3.9(31)	
마) 교육부문	2.9(23)	65.2(514)	30.1(237)	1.8(14)	
바) 교통부문	0.8(6)	19.6(155)	68.3(541)	11.4(90)	
사) 환경부문		7.0(55)	70.9(560)	22.2(175)	

'91조사 및 '94조사와 비교하여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의 분포를 비교하면, 정치분야($17.4\% \rightarrow 20.5\% \rightarrow 4.2\%$), 행정분야($46.4\% \rightarrow 53.1\% \rightarrow 70.5\%$), 경제계($28\% \rightarrow 35.4\% \rightarrow 25.9$), 노사관계($30.7\% \rightarrow 47.3\% \rightarrow 32.3\%$), 교육계($59.9\% \rightarrow 42.0\% \rightarrow 69.1\%$), 교통질서($35.9\% \rightarrow 32.6\% \rightarrow 20.4\%$) 등으로 행정분야·교육계 등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개선이 보이는 반면, 정치분야·경제분야·노사관계·교통질서 등은 도리어 후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감소한 것은 조사기간이 교육계의 비리가 빈번한 시기를 지났기 때문일 것이다.

V. 法專門家의 法生活

【표 33】 분야별 법준수도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문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치부분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0.8			56.3	42.9
	② 30대 초반	198		4.0		58.6	37.4
	③ 30대 후반	188		5.9		70.2	23.9
	④ 40대	196		4.6		62.8	32.7
	⑤ 50대 이상	84	2.4		2.4	72.6	22.6
직업	◎ 교수등	149		4.0		61.7	34.2
	① 선관위	50	2.0			68.0	30.0
	② 당정책위원	19	5.3	21.1		63.2	10.5
	③ 국회공무원	79		8.9		70.9	20.3
	④ 행정공무원	100		4.0		65.0	31.0
	⑤ 판사	50		2.0		72.0	26.0
	⑥ 검사	49		8.2		55.1	36.7
	⑦ 변호사	99		3.0		66.7	30.3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57.0	42.0
	⑨ 박사과정	100	1.0			60.0	39.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5	0.6	2.2		61.6	35.6
	② 5~9년	185		4.9		66.5	28.6
	③ 10~19년	181		6.6		60.8	32.6
	④ 20년 이상	107	0.9	1.9		69.2	28.0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0.6	1.1		59.1	39.2
	② 100~199만원	183	0.5	7.1		62.3	30.1
	③ 200~299만원	250	0.4	3.2		66.8	29.6
	④ 300~499만원	126		4.0		67.5	28.6
	⑤ 500만원 이상	49		4.1		63.3	32.7
계층의식	① 상	125		2.4		61.6	36.0
	② 중	578	0.3	4.3		65.4	29.9
	③ 하	89	1.1	2.2		53.9	42.7
성향	① 진보적	124		2.4		60.5	37.1
	② 중도적	454	0.4	5.3		64.3	30.0
	③ 보수적	214	0.5	1.4		63.6	34.6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4	0.2	3.9		63.6	32.3
	② 중소도시	184		3.3		62.0	34.8
	③ 읍·면 이하	171	1.2	4.1		64.3	30.4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행정부분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2.4	62.7	33.3	1.6	
	② 30대 초반	198	1.5	64.6	32.8	1.0	
	③ 30대 후반	188	1.6	68.1	29.8	0.5	
	④ 40대	196	4.6	69.9	25.5		
	⑤ 50대 이상	84	3.6	78.6	16.7	1.2	
직업	◎ 교수등	149	1.3	55.7	42.3	0.7	
	① 관위	50	6.0	86.0	8.0		
	② 당정책위원	19	5.3	57.9	36.8		
	③ 국회공무원	79	5.1	75.9	19.0		
	④ 행정공무원	100	5.0	87.0	8.0		
	⑤ 판사	50	2.0	62.0	36.0		
	⑥ 검사	49	2.0	85.7	12.2		
	⑦ 변호사	99	2.0	70.7	26.3	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0	66.0	30.0	2.0	
	⑨ 박사과정	100		47.0	51.0	2.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5	2.2	63.2	33.3	1.3	
	② 5~9년	185	1.1	64.9	34.1		
	③ 10~19년	181	4.4	70.2	24.9	0.6	
	④ 20년 이상	107	3.7	83.2	12.1	0.9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1	60.2	36.9	1.7	
	② 100~199만원	183	3.8	69.4	26.8		
	③ 200~299만원	250	2.4	73.6	23.6	0.4	
	④ 300~499만원	126	3.2	65.9	29.4	1.6	
	⑤ 500만원 이상	49	4.1	71.4	24.5		
계 총 의 식	① 상	125	0.8	66.4	32.8		
	② 중	578	2.8	69.7	27.0	0.5	
	③ 하	89	4.5	58.4	33.7	3.4	
성향	① 진보적	124	4.8	59.7	33.9	1.6	
	② 중도적	454	2.2	68.7	28.9	0.2	
	③ 보수적	214	2.3	70.6	25.7	1.4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4	2.1	67.5	30.4		
	② 중소도시	184	2.7	62.5	33.2	1.6	
	③ 읍·면 이하	171	4.1	74.9	19.3	1.8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경제부문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0.5	15.9	75.4	8.7
	② 30대 초반	197		25.4	69.5	5.1
	③ 30대 후반	188		31.9	63.8	4.3
	④ 40대	193		20.2	75.6	3.6
	⑤ 50대 이상	84		40.5	57.1	2.4
직업	◎ 교수등	149	1.0	16.1	78.5	5.4
	① 관위	48		41.7	58.3	
	② 당정책위원	19		26.3	63.2	10.5
	③ 국회공무원	79		24.1	70.9	5.1
	④ 행정공무원	100		35.0	61.0	3.0
	⑤ 판사	50		20.0	78.0	2.0
	⑥ 검사	49		26.5	71.4	2.0
	⑦ 변호사	97		38.1	56.7	5.2
	⑧ 사법연수원생	100		21.0	70.0	9.0
	⑨ 박사과정	100		20.0	75.0	5.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4	0.6	21.3	72.0	6.7
	② 5~9년	185		26.5	69.7	3.8
	③ 10~19년	179		29.6	66.5	3.4
	④ 20년 이상	106		31.1	65.1	3.8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0.6	21.0	72.7	6.3
	② 100~199만원	181		29.8	63.5	6.1
	③ 200~299만원	250		20.4	76.4	3.2
	④ 300~499만원	126		31.0	65.1	4.0
	⑤ 500만원 이상	47		46.8	51.1	2.1
계층 의식	① 상	124	1.1	29.0	63.7	7.3
	② 중	575		26.1	70.3	3.7
	③ 하	89		20.2	69.7	9.0
성향	① 진보적	123	0.2	17.9	73.2	8.9
	② 중도적	452		26.5	69.2	4.0
	③ 보수적	213		29.1	66.7	4.2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3	0.6	26.1	69.3	4.6
	② 중소도시	183		23.0	69.9	7.1
	③ 읍·면 이하	169		29.0	67.5	3.0

문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노사부문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0.8	29.4	65.1	4.8	
	② 30대 초반	197	0.5	33.0	61.9	4.6	
	③ 30대 후반	187	0.5	31.0	65.8	2.7	
	④ 40대	193		31.6	64.8	3.6	
	⑤ 50대 이상	84		36.9	58.3	4.8	
직업	◎ 교수등	148		29.7	68.2	2.0	
	① 선관위	49	2.0	36.7	59.2	2.0	
	② 당정책위원	19		15.8	73.7	10.5	
	③ 국회공무원	78		29.5	67.9	2.6	
	④ 행정공무원	100		34.0	60.0	6.0	
	⑤ 판사	50		34.0	64.0	2.0	
	⑥ 검사	49		32.7	63.3	4.1	
	⑦ 변호사	97	1.0	38.1	58.8	2.1	
	⑧ 사법연수원생	100		30.0	66.0	4.0	
	⑨ 박사과정	100	1.0	30.0	61.0	8.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3	1.0	30.7	63.9	4.5	
	② 5~9년	185		29.7	68.1	2.2	
	③ 10~19년	178		36.0	59.6	4.5	
	④ 20년 이상	107		32.7	62.6	4.7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1	29.0	64.2	5.7	
	② 100~199만원	181		34.3	63.0	2.8	
	③ 200~299만원	250		29.2	65.6	5.2	
	④ 300~499만원	125		32.8	65.6	1.6	
	⑤ 500만원 이상	47	2.1	48.9	48.9		
계층의식	① 상	123		30.9	62.6	6.5	
	② 중	575	0.2	31.5	65.6	2.8	
	③ 하	89	2.2	36.0	53.9	7.9	
성향	① 진보적	122	0.8	26.2	68.0	4.9	
	② 중도적	452	0.2	33.4	63.7	2.7	
	③ 보수적	213	0.5	31.9	61.5	6.1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1	0.5	32.7	63.1	3.7	
	② 중소도시	184	0.5	28.8	65.2	5.4	
	③ 읍·면 이하	169		33.7	63.3	3.0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교육부문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4.8	61.1	31.0	3.2	
	② 30대 초반	195	1.0	67.2	30.3	1.5	
	③ 30대 후반	187	3.7	63.1	30.5	2.7	
	④ 40대	193	1.0	69.4	28.5	1.0	
	⑤ 50대 이상	84	7.1	63.1	29.8		
직업	◎ 교수등	149	2.7	66.4	28.9	2.0	
	① 선관위	49	6.1	71.4	22.4		
	② 당정책위원	19	5.3	57.9	36.8		
	③ 국회공무원	77	1.3	54.5	41.6	2.6	
	④ 행정공무원	99		70.7	28.3	1.0	
	⑤ 판사	49	6.1	61.2	32.7		
	⑥ 검사	49	6.1	67.3	24.5	2.0	
	⑦ 변호사	97	3.1	69.1	25.8	2.1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65.0	32.0	2.0	
	⑨ 박사과정	100	4.0	62.0	31.0	3.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2	2.2	64.7	30.4	2.6	
	② 5~9년	184	3.3	62.0	33.2	1.6	
	③ 10~19년	179	2.2	69.3	26.8	1.7	
	④ 20년 이상	106	5.7	66.0	28.3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2.3	63.1	31.8	2.8	
	② 100~199만원	180	1.7	61.1	35.6	1.7	
	③ 200~299만원	249	3.2	66.7	28.9	1.2	
	④ 300~499만원	124	4.8	66.1	27.4	1.6	
	⑤ 500만원 이상	48	4.2	79.2	16.7		
계층 의식	① 상	123	4.1	63.4	30.1	2.4	
	② 중	573	3.1	65.4	29.5	1.9	
	③ 하	89		66.3	33.7		
성향	① 진보적	123	3.3	60.2	32.5	4.1	
	② 중도적	451	2.9	65.0	30.6	1.6	
	③ 보수적	211	2.8	68.7	27.5	0.9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1	2.8	65.4	29.7	2.1	
	② 중소도시	183	1.1	63.9	32.8	2.2	
	③ 읍·면 이하	168	5.4	66.7	27.4	0.6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 교통부문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1.6	19.0	65.9	13.5
	② 30대 초반	197	0.5	18.3	71.1	10.2
	③ 30대 후반	188	1.1	22.9	66.5	9.6
	④ 40대	194	0.5	19.6	68.6	11.3
	⑤ 50대 이상	84		16.7	70.2	13.1
직업	◎ 교수등	148		16.2	68.9	14.9
	① 선관위	49	2.0	24.5	61.2	12.2
	② 당정책위원	19	5.3	15.8	78.9	
	③ 국회공무원	79		12.7	73.4	13.9
	④ 행정공무원	100		23.0	71.0	6.0
	⑤ 판사	50		22.0	64.0	14.0
	⑥ 검사	49		24.5	67.3	8.2
	⑦ 변호사	98	1.0	21.4	67.3	10.2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16.0	66.0	17.0
	⑨ 박사과정	100	2.0	23.0	68.0	7.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4	1.0	17.8	69.7	11.5
	② 5~9년	184	1.1	18.5	68.5	12.0
	③ 10~19년	180	0.6	22.8	67.2	9.4
	④ 20년 이상	107		22.4	64.5	13.1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1	18.2	68.8	11.9
	② 100~199만원	182	0.5	19.2	69.8	10.4
	③ 200~299만원	249	0.4	16.9	69.9	12.9
	④ 300~499만원	126	0.8	23.8	66.7	8.7
	⑤ 500만원 이상	48	2.1	31.3	58.3	8.3
계층의식	① 상	125	1.6	26.4	60.0	12.0
	② 중	575	0.5	18.8	69.7	11.0
	③ 하	89	1.1	15.7	70.8	12.4
성향	① 진보적	122	1.6	17.2	66.4	14.8
	② 중도적	453	0.4	20.1	68.4	11.0
	③ 보수적	214	0.9	20.1	68.7	10.3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4	0.9	21.0	66.1	12.0
	② 중소도시	183		19.1	69.9	10.9
	③ 읍·면 이하	169	1.2	16.6	72.8	9.5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환경부문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7.9	67.5	24.6
	② 30대 초반	196		7.1	71.9	20.9
	③ 30대 후반	188		9.0	67.6	23.4
	④ 40대	193		4.7	74.1	21.2
	⑤ 50대 이상	84		6.0	75.0	19.0
직업	◎ 교수등	147		6.8	70.7	22.4
	① 선관위	49		4.1	73.5	22.4
	② 당정책위원	19			68.4	31.6
	③ 국회공무원	78		7.7	52.6	39.7
	④ 행정공무원	100		9.0	80.0	11.0
	⑤ 판사	50		12.0	70.0	18.0
	⑥ 검사	49		8.2	79.6	12.2
	⑦ 변호사	98		6.1	73.5	20.4
	⑧ 사법연수원생	100		7.0	63.0	30.0
	⑨ 박사과정	100		5.0	77.0	18.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3		7.3	68.4	24.3
	② 5~9년	184		6.0	71.2	22.8
	③ 10~19년	179		8.4	74.9	16.8
	④ 20년 이상	107		5.6	70.1	24.3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6.3	68.8	25.0
	② 100~199만원	181		6.6	71.3	22.1
	③ 200~299만원	249		7.2	71.9	20.9
	④ 300~499만원	125		8.0	71.2	20.8
	⑤ 500만원 이상	48		8.3	70.8	20.8
계층 의식	① 상	125		11.2	67.2	21.6
	② 중	573		6.5	72.8	20.8
	③ 하	89		4.5	62.9	32.6
성향	① 진보적	120		5.8	64.2	30.0
	② 중도적	453		5.5	73.7	20.8
	③ 보수적	214		10.7	68.2	21.0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2		8.8	69.2	22.0
	② 중소도시	183		6.6	68.9	24.6
	③ 읍·면 이하	169		3.0	77.5	19.5

2) 告發精神

【표 34】 고발정신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8. 선생님께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67.0(535)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17.5(140)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15.4(123)	

고발정신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정신과 비판정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의식이 확장될수록 어느 사회에서든 무규범의 상태를 가끔 보이는 과도적 현상이 사라지고 법치주의의 제도화단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게 마련이다.

고발정신은 크게 개인적 비판의식과 사회적 비판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조사의 문항8은 개인적 비판의식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이다. 조사결과 응답자 자신이 경범죄처벌법규를 위반했을 때 67.0%가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17.5%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기초질서위반 즉,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젊은 층일수록,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진보적일수록, 계층의식이 높을 수록 도리어 희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계층의 법경시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표 35】 고발정신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문 항 8. 선생님께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V. 法專門家의 法生活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연령	① 20대	126	62.7	27.0	10.3	
	② 30대 초반	198	66.2	18.2	15.7	
	③ 30대 후반	191	72.8	12.6	14.7	
	④ 40대	195	63.1	15.9	21.0	
	⑤ 50대 이상	85	71.8	16.5	11.8	
직업	◎ 교수등	149	68.5	16.1	15.4	
	① 선관위	50	64.0	10.0	26.0	
	② 당정책위원	20	80.0	10.0	10.0	
	③ 국회공무원	80	47.5	27.5	25.0	
	④ 행정공무원	100	66.0	16.0	18.0	
	⑤ 판사	50	92.0	4.0	4.0	
	⑥ 검사	50	72.0	24.0	4.0	
	⑦ 변호사	99	70.7	11.1	18.2	
	⑧ 사법연수원생	100	59.0	27.0	14.0	
	⑨ 박사과정	100	70.0	19.0	11.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7	64.0	21.1	14.8	
	② 5~9년	186	71.0	14.5	14.5	
	③ 10~19년	181	68.0	15.5	16.6	
	④ 20년 이상	107	66.4	15.9	17.8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64.8	22.2	13.1	
	② 100~199만원	185	63.2	17.3	19.5	
	③ 200~299만원	250	68.0	17.6	14.4	
	④ 300~499만원	127	71.7	12.6	15.7	
	⑤ 500만원 이상	50	72.0	14.0	14.0	
계층의식	① 상	125	68.0	12.8	19.2	
	② 중	581	66.8	18.8	14.5	
	③ 하	89	66.3	16.9	16.9	
성향	① 진보적	124	65.3	17.7	16.9	
	② 중도적	455	69.5	15.6	14.9	
	③ 보수적	215	62.3	21.9	15.8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69.8	17.6	12.6	
	② 중소도시	184	58.2	22.3	19.6	
	③ 읍·면 이하	171	68.4	12.9	18.7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36】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가)		
1)	부정부패	69.6(553)
2)	탈세	11.3(90)
3)	부동산투기사범	2.5(20)
4)	환경사범	15.4(122)
5)	공안사범	0.8(6)
6)	기타	0.4(3)
나)		
1)	성폭행	21.1(165)
2)	조직폭력배	48.0(376)
3)	마약사범	11.9(93)
4)	강·절도사범	10.9(85)
5)	음주운전	6.3(49)
6)	기타	1.9(15)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17.8(141)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7.2(57)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37.2(295)
4)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법교육	25.5(202)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10.1(80)
6)	기타	2.1(17)

조사결과, 정치 및 경제사범에 대하여는 부정부패(69.6%)→환경사범(15.4%)→탈세(11.3%)→부동산투기사범(2.5%)→공안사범(0.8%), 일반 민

V. 法專門家의 法生活

생 및 사회사범에 대하여는 조직폭력배(48.0%)→성폭행(21.1%)→마약사범(11.9%)→강·절도사범(10.9%)→음주운전(6.3%)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기간에 즈음하여 크게 사회문제화되었던 사건들이 응답자의 응답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에 대한 성·연령·학력·소득·성별 교차분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범죄에 대한 성·연령·소득·성별 반응

문항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가)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부정부패	② 탈세	③ 부동산 투기사범	④ 환경사범	⑤ 공안사범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6	73.0	11.1	4.0	11.9			
	② 30대 초반	196	81.1	6.6	2.0	9.2	0.5	1.6	0.5
	③ 30대 후반	190	63.7	15.8	1.6	17.4			
	④ 40대	194	65.5	11.9	3.1	18.6	1.0		1.0
	⑤ 50대 이상	85	60.0	11.8	2.4	23.5	2.4		
직업	◎ 교수등	149	81.9	5.4	1.3	10.7	0.7		
	① 선관위	50	60.0	18.0	4.0	16.0	2.0		
	② 당정책위원	20	45.0	25.0		30.0			
	③ 국회공무원	78	61.5	15.4	1.3	17.9	3.8		
	④ 행정공무원	99	59.6	15.2	4.0	19.2	1.0	1.0	2.0
	⑤ 판사	49	63.3	6.1	2.0	26.5			
	⑥ 검사	50	48.0	30.0	2.0	20.0			
	⑦ 변호사	100	65.0	6.0	6.0	23.0			
	⑧ 사법연수원생	99	79.8	10.1	2.0	8.1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86.0	7.0	1.0	5.0			1.0
	① 5년 미만	314	73.6	9.6	3.8	12.1	0.6	0.3	
	② 5~9년	186	72.0	12.4	1.6	13.4	0.5		
	③ 10~19년	182	68.1	12.6	1.1	17.0		1.1	
	④ 20년 이상	105	54.3	13.3	2.9	26.7	2.9		

응답구분 번 수		빈도수 (명)	① 부정 부패	② 탈세	③ 부동산 투기 사범	④ 환경 사범	⑤ 공안 사범	⑥ 기타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4	81.0	9.2	1.7	7.5		0.6
	② 100~199만원	185	66.5	13.0	2.7	16.2	1.1	0.5
	③ 200~299만원	247	64.0	13.4	3.2	17.8	1.2	0.4
	④ 300~499만원	127	70.9	9.4	1.6	17.3	0.8	
	⑤ 500만원 이상	50	64.0	8.0	4.0	24.0		
계 총 의식	① 상	126	69.0	10.3	2.4	18.3		
	② 중	577	68.5	11.8	2.9	15.6	0.9	0.3
	③ 하	88	77.3	10.2		10.2	1.1	1.1
성 향	① 진보적	123	75.6	11.4	1.6	11.4		
	② 중도적	452	67.9	12.6	3.1	15.0	0.9	0.4
	③ 보수적	215	69.3	8.8	1.9	18.6	0.9	0.5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5	73.3	12.0	2.3	12.4		
	② 중소도시	183	66.1	11.5	2.7	17.5	1.6	0.5
	③ 읍·면 이하	170	63.5	9.4	2.9	21.2	1.8	1.2

문 항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나)

(단위 : %)

응답구분 번 수		빈도수 (명)	① 성폭행	② 조직 폭력배	③ 마약 사범	④ 강· 절도 사범	⑤ 음주 운전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3	34.1	40.7	9.8	8.9	5.7	0.8
	② 30대 초반	195	19.5	56.9	9.2	6.2	6.2	2.1
	③ 30대 후반	187	15.0	48.7	13.4	13.4	9.1	0.5
	④ 40대	193	18.7	49.2	10.9	14.0	3.6	3.6
	⑤ 50대 이상	82	25.6	34.1	19.5	11.0	7.3	2.4
직업	◎ 교수등	145	25.5	44.8	15.9	9.0	4.1	0.7
	① 선관위	47	19.1	44.7	2.1	21.3	8.5	4.3
	② 당정책위원	20	35.0	55.0	5.0	5.0		
	③ 국회공무원	80	30.0	41.3	3.8	16.3	6.3	2.5
	④ 행정공무원	97	13.4	51.5	14.4	12.4	7.2	1.0
	⑤ 판사	49	22.4	55.1	6.1	16.3		
	⑥ 검사	49	10.2	46.9	20.4	12.2	8.2	2.0
	⑦ 변호사	99	13.1	45.5	22.2	7.1	7.1	5.1
	⑧ 사법연수원생	99	28.3	42.4	12.1	9.1	8.1	
	⑨ 박사과정	98	18.4	60.2	4.1	6.1	8.2	3.1

V. 法専門家의 法生活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성폭행	② 조직 폭력배	③ 마약 사범	④ 강· 절도 사범	⑤ 음주 운전	⑥ 기타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4	23.2	46.2	11.8	9.2	8.3	1.3
	② 5~9년	181	21.0	51.4	13.3	6.1	5.0	3.3
	③ 10~19년	177	18.1	49.2	8.5	18.1	5.1	1.1
	④ 20년 이상	104	20.2	44.2	15.4	12.5	4.8	2.9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3	24.9	50.9	8.1	6.9	8.1	1.2
	② 100~199만원	181	19.3	47.5	11.6	12.2	7.7	1.7
	③ 200~299만원	244	20.1	50.8	9.4	13.5	4.1	2.0
	④ 300~499만원	125	20.8	44.0	17.6	10.4	5.6	1.6
	⑤ 500만원 이상	49	18.4	40.8	22.4	6.1	8.2	4.1
계총식	① 상	123	20.3	43.9	13.0	13.8	5.7	3.3
	② 중	570	22.6	48.6	11.4	10.9	5.3	1.2
	③ 하	87	12.6	49.4	12.6	6.9	13.8	4.6
성향	① 진보적	122	22.1	45.1	15.6	6.6	6.6	4.1
	② 중도적	447	21.9	50.3	11.9	9.2	5.4	1.3
	③ 보수적	210	18.6	44.3	10.0	17.1	8.1	1.9
지역규모	① 대도시	429	22.4	47.3	11.7	11.0	6.3	1.4
	② 중소도시	182	20.9	46.2	11.0	9.9	8.2	3.8
	③ 읍·면·이하	166	18.7	51.8	12.0	12.0	4.2	1.2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로서 일반 민생 및 사회사범 중에서는 조직폭력배를 최우선으로 지목하였고, 정치 및 경제사범 중에서는 부정부패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젊은층·저소득·진보적 성향의 경우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비판계층의 성향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공안사범의 경우는 고연령 및 20년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에 상대적으로 강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사범의 경우 젊은층이며 저소득이고 진보적일수록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있어야함을 보였다.

이러한 범죄들을 퇴치하고 나아가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내지는 방안으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조사결과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을 최우선으로(30.0%) 꼽은 '94국민법의식조사와 달리 법전문가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를 최우선(37.2%)으로 꼽았으며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을 꼽은 응답자는(17.8%)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법교육(25.5%)보다도 낮았다.

【표 38】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령·소득·성향별 반응

문항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피해자 및 일반 시민의 철저한 신고 정신	② 신고자에 대한 절저한 보호	③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④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 법교육	⑤ TV·신문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4	18.5	6.5	37.1	23.4	10.5	4.0
	② 30대 초반	197	11.7	7.6	38.1	33.5	5.6	3.6
	③ 30대 후반	190	18.9	6.8	33.7	28.4	10.0	2.1
	④ 40대	194	21.6	6.2	38.7	19.6	13.9	
	⑤ 50대 이상	84	19.0	9.5	41.7	17.9	10.7	1.2
직업	◎ 교수등	147	17.7	7.5	40.8	25.2	8.2	0.7
	① 선관위	50	16.0	4.0	48.0	12.0	18.0	2.0
	② 당정책위원	20	10.0		35.0	25.0	30.0	
	③ 국회공무원	78	21.8	11.5	48.7	9.0	7.7	1.3
	④ 행정공무원	99	19.2	11.1	33.3	24.2	11.1	1.0
	⑤ 판사	49	22.4	2.0	28.6	34.7	8.2	4.1
	⑥ 검사	50	36.0	2.0	30.0	24.0	8.0	
	⑦ 변호사	100	13.0	4.0	36.0	30.0	13.0	4.0
	⑧ 사법연수원생	99	17.2	8.1	34.3	29.3	8.1	3.0
종사 기간	⑨ 박사과정	100	10.0	10.0	34.0	35.0	7.0	4.0
	① 5년 미만	315	16.8	6.3	36.8	27.3	9.8	2.9
	② 5~9년	184	20.7	8.2	33.2	28.3	7.1	2.7
	③ 10~19년	180	15.0	7.2	42.8	23.3	10.6	1.1
개인 소득	④ 20년 이상	106	21.7	7.5	36.8	18.9	14.2	0.9
	① 100만원 미만	175	15.4	5.7	34.3	30.9	10.3	3.4
	② 100~199만원	183	18.6	9.8	34.4	26.8	7.7	2.7
	③ 200~299만원	246	17.9	7.7	42.3	20.3	11.0	0.8
	④ 300~499만원	127	21.3	3.9	37.8	22.8	12.6	1.6
	⑤ 500만원 이상	50	14.0	6.0	34.0	34.0	8.0	4.0

V. 法専門家の 法生活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피 해자 및 일반 시 민 의 철 저 한 신 고 정 신	② 신 고 자 에 대 한 절 저 한 보 호	③ 관 계 당 국 의 엄 격 한 법 집 행 및 처 벌 강 화	④ 가정과 학 교 에 서 의 준 법 교육	⑤ TV · 신 문 등 대 중 매체 의 선 도 적 역 할	⑥ 기 타
계 층 의 식	① 상	126	18.3	9.5	32.5	24.6	12.7	2.4
	② 중	574	17.9	6.4	40.2	24.4	9.1	1.9
	③ 하	89	16.9	7.9	25.8	33.7	12.4	3.4
성 향	① 진보적	125	20.8	8.0	38.4	20.0	7.2	5.6
	② 중도적	451	18.2	7.3	36.4	26.8	9.1	2.2
	③ 보수적	212	15.6	6.1	39.2	25.5	13.7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4	17.1	7.4	38.7	25.3	9.4	2.1
	② 중소도시	182	19.8	7.1	32.4	26.4	11.5	2.7
	③ 읍 · 면 이하	170	18.2	6.5	39.4	24.1	10.0	1.8

3) 權利意識

권리의식이 약할 경우 법적 문제에 있어서 법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용의가 약화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적극적인 준법의식마저 실종될 우려가 있다. 과거 한국인은 권리의식이 약하여 법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여기기 보다는 국가통치 내지 국민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참여적 시민문화의 정착은 권리의식의 신장을 가져다 주어 과거 일제식민통치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피해의식은 확연히 사라지고 오히려 비타협적인 자기이익마저 요구하는 현실을 우려 할 만큼 달라진 것이 권리의식의 오늘날 모습이다.

【표 39】 권리의식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p>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9.2(23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 47.7(379)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2.2(176)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9(7)</p>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42.1(335)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52.3(416)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4.3(34)	
	4) 기타	1.4(11)	

불량품 구입의 피해보상 요구도 법전문가의 70%이상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권리의식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문항 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한번 산 것 이니 어쩔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 서 바꿔온다	③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한다	④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연령	① 20대	126	26.2	52.4	19.8	1.6
	② 30대 초반	197	28.4	49.2	20.8	1.5
	③ 30대 후반	189	27.5	47.6	24.3	0.5
	④ 40대	193	30.6	48.7	20.7	
	⑤ 50대 이상	86	36.0	34.9	27.9	1.2
직업	◎ 교수등	148	18.2	54.1	27.0	0.7
	① 선관위	50	48.0	28.0	22.0	2.0
	② 당정책위원	19	47.4	31.6	21.1	
	③ 국회공무원	79	24.1	55.7	19.0	1.3
	④ 행정공무원	100	35.0	44.0	21.0	
	⑤ 판사	50	18.0	60.0	22.0	
	⑥ 검사	50	44.0	42.0	14.0	
	⑦ 변호사	99	35.4	39.4	24.2	1.0
	⑧ 사법연수원생	99	31.3	48.5	20.2	
	⑨ 박사과정	100	21.0	53.0	23.0	3.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6	27.8	51.3	19.3	1.6
	② 5~9년	185	27.0	49.2	23.2	0.5
	③ 10~19년	178	29.2	44.4	26.4	
	④ 20년 이상	108	38.0	38.9	22.2	0.9

V. 法專門家의 法生活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한번 산 것 이니 어쩔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 서 바꿔온다	③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한다	④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5	25.1	52.0	21.1	1.7
	② 100~199만원	185	29.7	48.6	20.5	1.1
	③ 200~299만원	247	34.0	43.7	22.3	
	④ 300~499만원	126	26.2	48.4	24.6	0.8
	⑤ 500만원 이상	50	26.0	46.0	26.0	2.0
계 총 의 식	① 상	125	31.2	46.4	21.6	0.8
	② 중	577	29.1	47.5	22.5	0.9
	③ 하	89	28.1	49.4	21.3	1.1
성 향	① 진보적	125	27.2	47.2	24.0	1.6
	② 중도적	450	27.8	46.9	24.4	0.9
	③ 보수적	215	33.5	49.3	16.7	0.5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4	27.2	49.5	22.6	0.7
	② 중소도시	183	30.1	43.2	25.1	1.6
	③ 읍·면 이하	171	33.9	48.0	17.5	0.6

문 항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나의 권리실 현을 위해서 는 소송을 꺼 릴 이유가 없 다	②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들 어서 번거롭 다	③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 체가 불명예 스럽다	④ 기타
연 령	① 20대	125	42.4	52.8	3.2	1.6
	② 30대 초반	198	41.4	54.0	2.0	2.5
	③ 30대 후반	190	51.6	43.7	3.7	1.1
	④ 40대	194	35.1	58.2	6.2	0.5
	⑤ 50대 이상	86	38.4	52.3	8.1	1.2
직 업	◎ 교수등	150	48.7	46.0	2.7	2.7
	① 선관위	49	18.4	75.5	6.1	
	② 당정책위원	18	33.3	55.6	11.1	
	③ 국회공무원	80	20.0	73.8	6.3	
	④ 행정공무원	99	25.3	65.7	9.1	
	⑤ 판사	50	80.0	16.0	4.0	
	⑥ 검사	50	34.0	58.0	8.0	
	⑦ 변호사	100	68.0	29.0	1.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3.0	51.0	4.0	2.0
	⑨ 박사과정	100	38.0	59.0		3.0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나의 권리실 현을 위해서 는 소송을 꺼 릴 이유가 없 다	②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들 어서 번거롭 다	③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 체가 불명예 스럽다	④ 기타
종 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6	42.7	52.8	3.2	1.3
	② 5~9년	185	47.0	49.2	1.6	2.2
	③ 10~19년	180	37.8	53.9	7.2	1.1
	④ 20년 이상	108	38.0	53.7	7.4	0.9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6	42.0	52.8	2.8	2.3
	② 100~199만원	183	33.3	60.7	4.9	1.1
	③ 200~299만원	249	34.1	58.6	6.8	0.4
	④ 300~499만원	127	57.5	37.0	2.4	3.1
	⑤ 500만원 이상	50	66.0	34.0		
계 총 의 식	① 상	125	51.2	44.8	2.4	1.6
	② 중	579	41.6	52.7	4.3	1.4
	③ 하	89	31.5	60.7	6.7	1.1
성 향	① 진보적	124	46.0	49.2	2.4	2.4
	② 중도적	452	42.3	52.7	3.8	1.3
	③ 보수적	216	39.4	53.2	6.5	0.9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4	45.4	50.2	2.5	1.8
	② 중소도시	184	37.5	55.4	5.4	1.6
	③ 읍·면 이하	172	38.4	54.1	7.6	

이와 같이 법전문가의 높은 권리의식은 법의식수준의 전반적인 제고에 크게 기여하나 건전한 시민의 비판정신과 참여의식에서 비롯되지 아니할 경우 법적 권리개념이 애매한 주장과 비타협적 요구로 인한 충돌로 말미암아 오히려 법치주의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권리의식은 건전한 시민의 고발 정신에서 비롯되고 사회의 탈·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집결될 때 우리 사회에서의 준법정신의 회생과 법치사회 실현을 위한 법의식 제고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法의 使用能力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국민 법생활 중 행동적 측면을 보다 본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의 사용능력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실제로 발생시킬 수 있는 용의

V. 法專門家の 法生活

와 능력이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의 법사용능력은 주로 법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와 경제적 이유(소송비용) 때문에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³⁴⁾ 이는 법사용능력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내린 추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문화와 법현실에 있어서 법의 사용능력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보다는 법적 경험이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법절차적 분쟁해결수단의 동원이 곧 법사용 능력의 수준을 가늠하지는 않는다. 물론 법의 사용능력이 높을 경우 법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은 강할 것이다.

본 조사는 법전문가의 법의 사용능력과 분쟁의 해결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 법의 사용능력

1. 불량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2.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 法의 使用能力

【표 41】 법의 사용능력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p>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td> <td style="width: 30%;">29.2(232)</td> </tr> <tr> <td>2)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td> <td>47.7(379)</td> </tr> <tr> <td>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td> <td>22.2(176)</td> </tr> <tr> <td>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td> <td>0.9(7)</td> </tr> </table> <p>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td> <td style="width: 30%;">42.1(335)</td> </tr> <tr> <td>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td> <td>52.3(416)</td> </tr> <tr> <td>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td> <td>4.3(34)</td> </tr> <tr> <td>4) 기타</td> <td>1.4(11)</td> </tr> </table>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9.2(23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	47.7(379)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2.2(176)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9(7)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42.1(335)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52.3(416)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4.3(34)	4) 기타	1.4(11)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9.2(23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	47.7(379)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2.2(176)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9(7)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42.1(335)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52.3(416)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4.3(34)																
4) 기타	1.4(11)																

34)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정음사, 1986), 167면.

조사결과 불량품을 샀을 때 바꿔오거나 고발 내지 고소하겠다는 응답이 70.8%, 소송하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는 입장이 42.1%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 전문가의 법사용능력은 '94년의 일반국민법의식조사의 결과인 각각 83.5%와 54%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2】 법의 사용능력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문항 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한 번 산 것 이니 어쩔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 서 바꿔온다	③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한다	④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연령	① 20대	126	26.2	52.4	19.8	1.6
	② 30대 초반	197	28.4	49.2	20.8	1.5
	③ 30대 후반	189	27.5	47.6	24.3	0.5
	④ 40대	193	30.6	48.7	20.7	
	⑤ 50대 이상	86	36.0	34.9	27.9	1.2
직업	◎ 교수등	148	18.2	54.1	27.0	0.7
	① 선관위	50	48.0	28.0	22.0	2.0
	② 당정책위원	19	47.4	31.6	21.1	
	③ 국회공무원	79	24.1	55.7	19.0	1.3
	④ 행정공무원	100	35.0	44.0	21.0	
	⑤ 판사	50	18.0	60.0	22.0	
	⑥ 검사	50	44.0	42.0	14.0	
	⑦ 변호사	99	35.4	39.4	24.2	1.0
	⑧ 사법연수원생	99	31.3	48.5	20.2	
	⑨ 박사과정	100	21.0	53.0	23.0	3.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6	27.8	51.3	19.3	1.6
	② 5~9년	185	27.0	49.2	23.2	0.5
	③ 10~19년	178	29.2	44.4	26.4	
	④ 20년 이상	108	38.0	38.9	22.2	0.9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5	25.1	52.0	21.1	1.7
	② 100~199만원	185	29.7	48.6	20.5	1.1
	③ 200~299만원	247	34.0	43.7	22.3	
	④ 300~499만원	126	26.2	48.4	24.6	0.8
	⑤ 500만원 이상	50	26.0	46.0	26.0	2.0
계층 의식	① 상	125	31.2	46.4	21.6	0.8
	② 중	577	29.1	47.5	22.5	0.9
	③ 하	89	28.1	49.4	21.3	1.1

V. 法專門家의 法生活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한 번 산 것 이니 어쩔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 서 바꿔온다	③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한다	④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성 향	① 진보적	125	27.2	47.2	24.0	1.6
	② 중도적	450	27.8	46.9	24.4	0.9
	③ 보수적	215	33.5	49.3	16.7	0.5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4	27.2	49.5	22.6	0.7
	② 중소도시	183	30.1	43.2	25.1	1.6
	③ 읍·면 이하	171	33.9	48.0	17.5	0.6

문 항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나의 권리실 현을 위해서 는 소송을 꺼 릴 이유가 없 다	②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들 어서 번거롭 다	③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 가 불명예스 럽다	④ 기타
연 령	① 20대	125	42.4	52.8	3.2	1.6
	② 30대 초반	198	41.4	54.0	2.0	2.5
	③ 30대 후반	190	51.6	43.7	3.7	1.1
	④ 40대	194	35.1	58.2	6.2	0.5
	⑤ 50대 이상	86	38.4	52.3	8.1	1.2
직 업	○ 교수등	150	48.7	46.0	2.7	2.7
	① 선관위	49	18.4	75.5	6.1	
	② 당정체위원	18	33.3	55.6	11.1	
	③ 국회공무원	80	20.0	73.8	6.3	
	④ 행정공무원	99	25.3	65.7	9.1	
	⑤ 판사	50	80.0	16.0	4.0	
	⑥ 검사	50	34.0	58.0	8.0	
	⑦ 변호사	100	68.0	29.0	1.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3.0	51.0	4.0	2.0
종 사 기 간	⑨ 박사과정	100	38.0	59.0		3.0
	① 5년 미만	316	42.7	52.8	3.2	1.3
	② 5~9년	185	47.0	49.2	1.6	2.2
	③ 10~19년	180	37.8	53.9	7.2	1.1
개 인 소 드	④ 20년 이상	108	38.0	53.7	7.4	0.9
	① 100만원 미만	176	42.0	52.8	2.8	2.3
	② 100~199만원	183	33.3	60.7	4.9	1.1
	③ 200~299만원	249	34.1	58.6	6.8	0.4
	④ 300~499만원	127	57.5	37.0	2.4	3.1
	⑤ 500만원 이상	50	66.0	34.0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③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④ 기타
계 총 의 식	① 상	125	51.2	44.8	2.4	1.6	
	② 중	579	41.6	52.7	4.3	1.4	
	③ 하	89	31.5	60.7	6.7	1.1	
성 향	① 진보적	124	46.0	49.2	2.4	2.4	
	② 중도적	452	42.3	52.7	3.8	1.3	
	③ 보수적	216	39.4	53.2	6.5	0.9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4	45.4	50.2	2.5	1.8	
	② 중소도시	184	37.5	55.4	5.4	1.6	
	③ 읍·면 이하	172	38.4	54.1	7.6		

2) 紛爭의 解決方法

【표 43】 분쟁의 해결방법

구 분	'96 법 전문가 조사								
	<p>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table> <tr> <td>1) 바람직하다</td> <td>10.7(85)</td> </tr> <tr> <td>2) 합리적이다</td> <td>36.2(288)</td> </tr> <tr> <td>3) 물인정하다</td> <td>32.3(257)</td> </tr> <tr> <td>4) 불쾌하다.</td> <td>20.8(165)</td> </tr> </table>	1) 바람직하다	10.7(85)	2) 합리적이다	36.2(288)	3) 물인정하다	32.3(257)	4) 불쾌하다.	20.8(165)
1) 바람직하다	10.7(85)								
2) 합리적이다	36.2(288)								
3) 물인정하다	32.3(257)								
4) 불쾌하다.	20.8(165)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94조사의 결과는 바람직하다거나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51.5%였으나 법전문가들은 도리어 46.9%에 불과하였으며 물인정하다거나 불쾌하다는 응답은 53.1%에 이르러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서 법의 선택을 일반국민보다 법전문가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령·성향별 반응

문항 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합리적이다	③ 물인정하다	④ 불쾌하다
연령	① 20대	126	7.1	34.9	38.1	19.8	
	② 30대 초반	197	9.6	37.1	31.0	22.3	
	③ 30대 후반	191	10.5	39.3	31.9	18.3	
	④ 40대	192	10.4	33.3	34.9	21.4	
	⑤ 50대 이상	86	18.6	37.2	22.1	22.1	
직업	◎ 교수등	149	17.4	45.0	17.4	20.1	
	① 선관위	49	10.2	26.5	38.8	24.5	
	② 당정책위원	20	15.0	15.0	50.0	20.0	
	③ 국회공무원	80	7.5	27.5	41.3	23.8	
	④ 행정공무원	99	9.1	29.3	31.3	30.3	
	⑤ 판사	50	10.0	46.0	24.0	20.0	
	⑥ 검사	49	4.1	38.8	38.8	18.4	
	⑦ 변호사	99	10.1	45.5	31.3	13.1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0	31.0	42.0	17.0	
	⑨ 박사과정	100	9.0	36.0	34.0	21.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6	10.4	35.1	35.8	18.7	
	② 5~9년	186	12.4	40.9	28.0	18.8	
	③ 10~19년	178	7.3	37.1	30.9	24.7	
	④ 20년 이상	108	13.9	28.7	33.3	24.1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9.7	33.0	39.8	17.6	
	② 100~199만원	183	8.7	35.0	26.8	29.5	
	③ 200~299만원	249	10.4	34.1	33.3	22.1	
	④ 300~499만원	126	12.7	44.4	30.2	12.7	
	⑤ 500만원 이상	50	14.0	42.0	30.0	14.0	
계층의식	① 상	126	8.7	42.1	31.7	17.5	
	② 중	577	11.3	36.6	31.5	20.6	
	③ 하	89	9.0	24.7	39.3	27.0	
성향	① 친보적	123	13.0	32.5	28.5	26.0	
	② 중도적	453	10.6	39.1	30.9	19.4	
	③ 보수적	215	9.8	31.6	38.1	20.5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2	10.0	39.8	29.2	21.1	
	② 중소도시	185	10.3	31.9	38.9	18.9	
	③ 읍·면 이하	172	12.2	31.4	33.7	22.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결과는 국민의 법사용능력이 법전문가의 법사용 능력보다 높아진 한편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법적 절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전문가의 법의식은 높아진 권리의식과 법사용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시비비에 대한 논쟁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데 이는 법적 해결을 법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이 아니라 최종적인 전쟁선포로 보는 동양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법의식의 독특한 일면으로서 한국인이 갖는 법의식의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법생활 실태와 입법 및 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조사는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양대산맥을 이룬다. 법치주의 확립은 결국 국민과 국가간의 일체감 형성에서 비롯되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권력구조는 그 성질에 따라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기능에 따라 입법기능과 법집행기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입법과정과 법집행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헌헌법상 권력구조가 틀지워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부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목적 및 방법과의 적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기능적 구조를 법령제정과 법적용·집행·선언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국회와 행정부를 법정립기관, 법원·검찰청·행정관청·경찰서 등을 법집행기관으로 구분하였고 설문구성시 이러한 구별기준을 전제하였으며 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는 별도의 항목을 두었다.

본조사는 국민의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을 하였다.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2.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가
3. 국회·정부의 법령제정, 행정관청의 법적용, 경찰서의 법적용, 검찰의 법집행, 법원의 법선언 등은 공정한가

◇ 사법권의 독립

4.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가
5.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1.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표 45】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87.0(696)
	2) 그렇지 않다	13.0(104)
	18. 우리나라의 입법예고제는 일반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법 전단계에서 법률상 문제를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고대상법률의 확대	5.9(46)
	2) 예고수단의 다양화	50.6(397)
	3) 예고사항의 구체화	14.5(114)
	4) 제출된 의견의 반영도 제고	23.7(186)
	5) 입법예고 전담부서의 신설	4.7(37)
	6) 기타	0.6(5)
	19.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중 의원입법이 전체의 입법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부문이 <u>시급히</u>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회사무처내 입법지원부서 확충과 예산증액	20.7(164)
	2) 입법지원을 위한 의원보좌관 확충	8.3(66)
	3) 정당의 입법활동의 충실회	22.0(175)
	4)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	47.7(379)
	5) 기타	1.3(10)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1) 그렇다	7.1(57)
	2) 대체로 그렇다	65.1(521)
	3) 별로 그렇지 않다	26.4(211)
	4) 전혀 그렇지 않다	1.4(11)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 법전문가에서는 '법이 현실을 잘 반용하지 못하므로(34.9%)',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39.6%)' 등이 높게 지적되어 '94년조사에서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2.5%)', 예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것과 크게 대비되었다.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와 반응을 조사한 결과,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회나 정부·행정관청·검찰·법원 등에서의 법적용 내지는 법선언의 공정성에 대하여 법전문가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91조사에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법령을 적용하거나 집행할 때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불신(84.6%)을 보여 경찰권의 독립과 경찰권의 양적·질적 향상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1991년 8월1일 치안본부의 경찰청 승격으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된 듯하였지만 '96본조사에 의하면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그 공정함을 인정한 응답이 62.8%이고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가 법대로 잘 처리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2.2%나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행정관청업무처리의 능률화 및 개선에 대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검찰의 법집행 및 법원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도 각각 59.1%, 91.1%라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강했던 '91조사 및 '94조사와 비교할 때 80년후반과 90년의 초반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기존제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경향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것으로서 법치사회 실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시행되는 입법예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응답자의 50.6%가 예고수단의 다양화를 지적하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도가 높지 않은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입법예고제의 적극적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원의 자질향상을 꼽은 응답이 47.7%에 이른 것은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전문가들 또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층과는 관계없이 보수적인 성향이 높을 수록,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표 46】 입법과정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95.2	4.8	
	② 30대 초반	198	91.4	8.6	
	③ 30대 후반	191	82.7	17.3	
	④ 40대	196	87.2	12.8	
	⑤ 50대 이상	86	75.6	24.4	
직업	◎ 교수등	150	83.3	16.7	
	① 선관위	50	92.0	8.0	
	② 당정책위원	20	95.0	5.0	
	③ 국회공무원	80	96.3	3.8	
	④ 행정공무원	100	83.0	17.0	
	⑤ 판사	50	78.0	22.0	
	⑥ 검사	50	78.0	22.0	
	⑦ 변호사	100	83.0	17.0	
	⑧ 사법연수원생	100	95.0	5.0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90.0	10.0	
	① 5년 미만	317	91.5	8.5	
	② 5~9년	186	87.6	12.4	
	③ 10~19년	182	83.0	17.0	
개인소득	④ 20년 이상	108	80.6	19.4	
	① 100만원 미만	176	93.8	6.3	
	② 100~199만원	185	90.8	9.2	
	③ 200~299만원	251	83.3	16.7	
	④ 300~499만원	127	80.3	19.7	
계층의식	⑤ 500만원 이상	50	84.0	16.0	
	① 상	126	84.1	15.9	
	② 중	582	87.3	12.7	
성향	③ 하	89	89.9	10.1	
	① 진보적	125	90.4	9.6	
	② 중도적	455	85.9	14.1	
지역규모	③ 보수적	216	87.0	13.0	
	① 대도시	437	88.1	11.9	
	② 중소도시	185	83.8	16.2	
	③ 읍·면 이하	172	87.8	12.2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문 항 18. 우리나라의 입법예고제는 일반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법 전단계에서 법률상 문제를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법예고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예고 대상 법률의 확대	② 예고 수단의 다양화	③ 예고 사항의 구체화	④ 제출된 의견의 반영도제 고	⑤ 입법 예고 전부서의 신설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6	3.2	53.2	14.3	25.4	2.4	1.6
	② 30대 초반	197	4.6	52.8	9.6	27.9	4.6	0.5
	③ 30대 후반	183	5.5	49.7	12.6	27.9	3.3	1.1
	④ 40대	191	6.3	51.3	18.8	18.3	5.2	
	⑤ 50대 이상	85	11.8	42.4	21.2	14.1	10.6	
직업	◎ 교수등	146	10.3	38.4	17.8	27.4	5.5	0.7
	① 선관위	50		68.0	14.0	10.0	8.0	
	② 당정책위원	19	5.3	57.9	15.8	15.8	5.3	
	③ 국회공무원	78	7.7	50.0	14.1	23.1	2.6	
	④ 행정공무원	98	2.0	55.1	25.5	12.2	4.1	
	⑤ 판사	49	8.2	40.8	12.2	36.7	2.0	
	⑥ 검사	48	6.3	60.4	4.2	25.0	4.2	
	⑦ 변호사	97	8.2	50.5	13.4	21.6	5.2	
	⑧ 사법연수원생	100	2.0	47.0	13.0	35.0	3.0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5.0	58.0	8.0	22.0	7.0	
	① 5년 미만	316	4.1	51.3	13.0	26.3	4.1	1.3
	② 5~9년	180	6.7	51.7	10.0	29.4	2.2	
	③ 10~19년	174	6.9	50.0	15.5	20.7	6.3	0.6
개인소득	④ 20년 이상	108	7.4	48.1	24.1	12.0	8.3	
	① 100만원 미만	176	4.0	48.9	11.9	30.1	5.1	
	② 100~199만원	182	5.5	53.8	12.1	23.1	3.8	1.6
	③ 200~299만원	245	4.1	50.2	18.4	22.0	4.9	0.4
	④ 300~499만원	124	9.7	50.0	16.9	17.7	5.6	
계층의식	⑤ 500만원 이상	48	14.6	41.7	8.3	29.2	4.2	2.1
	① 상	124	9.7	46.8	12.9	25.0	4.8	0.8
	② 중	569	5.1	52.7	14.1	22.8	4.7	0.5
성향	③ 하	89	5.6	42.7	19.1	27.0	4.5	1.1
	① 진보적	122	4.1	50.0	11.5	28.7	4.1	1.6
	② 중도적	446	6.3	50.2	15.0	24.4	3.8	0.2
지역규모	③ 보수적	213	6.1	51.6	14.6	19.7	7.0	0.9
	① 대도시	431	5.6	50.6	14.6	23.9	4.4	0.9
	② 중소도시	179	3.9	52.5	14.0	25.1	3.9	0.6
	③ 읍·면 이하	169	8.3	49.1	14.8	21.3	6.5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문항 19.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중 의원입법이 전체의 입법중 10%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부문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국회사무처 내 입법지 원부서 확 충과 예산 증액	② 입법지원을 위한 의원 보좌관 확 충	③ 정당의 입 법활동의 총실화	④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	⑤ 기타
연령	① 20대	124	24.2	10.5	20.2	45.2		
	② 30대 초반	198	22.7	12.1	16.7	47.0	1.5	
	③ 30대 후반	189	19.6	6.3	25.9	46.6	1.6	
	④ 40대	194	16.5	5.2	24.7	51.5	2.1	
	⑤ 50대 이상	86	23.3	7.0	23.3	46.5		
직업	◎ 교수등	149	18.8	9.4	23.5	46.3	2.0	
	① 선관위	50	6.0	4.0	32.0	58.0		
	② 당정책위원	20	20.0	25.0	35.0	20.0		
	③ 국회공무원	80	71.3		12.5	12.5	3.8	
	④ 행정공무원	98	8.2	4.1	25.5	59.2	3.1	
	⑤ 판사	50	12.0	6.0	18.0	64.0		
	⑥ 검사	48	12.5	4.2	18.8	64.6		
	⑦ 변호사	100	14.0	6.0	30.0	50.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6.0	17.0	14.0	53.0		
종사 기간	⑨ 박사과정	99	22.2	13.1	20.2	43.4	1.0	
	① 5년 미만	315	24.8	10.5	20.6	43.5	0.6	
	② 5~9년	184	19.6	8.7	21.7	47.8	2.2	
	③ 10~19년	181	16.0	6.1	24.3	51.9	1.7	
개인 소득	④ 20년 이상	107	17.8	4.7	24.3	52.3	0.9	
	① 100만원 미만	175	18.3	15.4	15.4	50.3	0.6	
	② 100~199만원	183	30.6	4.9	20.2	42.1	2.2	
	③ 200~299만원	249	17.7	5.6	24.1	51.0	1.6	
	④ 300~499만원	126	15.1	10.3	25.4	48.4	0.8	
계층 의식	⑤ 500만원 이상	50	20.0	2.0	34.0	44.0		
	① 상	126	15.1	4.8	26.2	53.2	0.8	
	② 중	577	21.1	8.8	22.4	46.4	1.2	
성향	③ 하	88	25.0	10.2	14.8	47.7	2.3	
	① 진보적	123	24.4	17.1	25.2	31.7	1.6	
	② 중도적	452	20.6	7.1	21.5	49.6	1.3	
지역 규모	③ 보수적	215	18.6	5.6	21.4	53.5	0.9	
	① 대도시	435	20.0	9.2	22.1	47.6	1.1	
	② 중소도시	184	21.7	8.7	19.6	48.4	1.6	
	③ 읍·면 이하	169	20.1	5.9	25.4	47.3	1.2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문 항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5.6	59.5	31.7	3.2
	② 30대 초반	198	5.6	60.6	32.8	1.0
	③ 30대 후반	191	8.9	66.5	23.0	1.6
	④ 40대	196	8.2	68.4	23.5	
	⑤ 50대 이상	86	7.0	73.3	17.4	2.3
직업	◎ 교수등	150	2.7	59.3	36.7	1.3
	① 선관위	50	20.0	72.0	8.0	
	② 당정책위원	20	5.0	75.0	20.0	
	③ 국회공무원	80	5.0	71.3	22.5	1.3
	④ 행정공무원	100	18.0	69.0	12.0	1.0
	⑤ 판사	50	2.0	82.0	16.0	
	⑥ 검사	50	10.0	76.0	14.0	
	⑦ 변호사	100	4.0	68.0	26.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0	63.0	31.0	2.0
	⑨ 박사과정	100	6.0	45.0	46.0	3.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7	6.6	59.0	32.2	2.2
	② 5~9년	186	5.4	66.7	27.4	0.5
	③ 10~19년	182	9.9	65.9	23.1	1.1
	④ 20년 이상	108	7.4	77.8	13.9	0.9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4.0	56.8	37.5	1.7
	② 100~199만원	185	12.4	63.8	23.2	0.5
	③ 200~299만원	251	8.8	69.7	19.9	1.6
	④ 300~499만원	127	2.4	67.7	29.1	0.8
	⑤ 500만원 이상	50	4.0	74.0	20.0	2.0
계층의식	① 상	126	3.2	67.5	28.6	0.8
	② 중	582	7.4	65.5	25.8	1.4
	③ 하	89	11.2	58.4	28.1	2.2
성향	① 진보적	125	8.8	56.8	32.8	1.6
	② 중도적	455	6.2	66.8	26.2	0.9
	③ 보수적	216	8.3	65.7	23.6	2.3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7.3	62.9	28.6	1.1
	② 중소도시	185	4.3	68.1	25.4	2.2
	③ 읍·면 이하	172	9.9	66.9	22.1	1.2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법집행과정에서의 요체가 합리적이고 차별없는 공정한 법 적용이라고 한다면 입법과정에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가급적 폭넓게 수용하여 법제 정시부터 그 법의 규범력 확보가 예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983년부터 시행되어온 정부입법안의 입법예고제와 1994년 개정한 국회법 제82조 2의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는 외국에서도 그 예가 드문 우리나라 특유의 입법제도로서 입법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 전단계에서 법률적 갈등을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실효성을 보다 높히기 위한 입법예고제의 활성화 방안⁴⁵⁾으로서 예고대상의 확대, 예고수단의 다양화, 예고사항의 구체화, 제출의견의 반영도 제고, 입법예고 전담부서의 신설, 창안적 입법의견 보상, 행정관청의 재량권 축소를 위한 법률적 근거 부여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司法權의 獨立

【표 47】 사법권의 독립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종원문제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가) 현행(1996년) 사법시험선발인원은 500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법조인선발인원 숫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300여명	20.4(162)
	2) 500여명	24.7(196)
	3) 700여명	9.2(73)
	4) 1000여명	36.1(287)
	5) 기타	9.7(77)
	나) 이른바 “로-스쿨” 도입논쟁으로 인하여 현행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 방식유지(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선발)	58.3(463)
	2) “로-스쿨” 방식도입(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39.5(314)
	3) 기타	2.1(17)

45) 한국법제연구원, 『국민의 입법참여와 입법예고제』 (제3회 법제세미나, 1992).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20.9(167)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65.5(523)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4(91)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17)
	2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바람직하다	19.5(156)
	2) 바람직하지 않다	79.5(635)

법과 사법제도는 한 사회에 있어서 이해대립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체계이며, 그 중 사법기능은 구체적 행동을 전제로 하여 신분의 보장은 물론 심리적 종속성에서도 독립한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경제적 영향을 배제한 고유한 법인식 기능이다. 따라서 사법작용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적 가시성이 높은 계층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사법권의 독립으로서 재판독립의 원칙내지 판결의 자유(*Entscheidungsfreiheit*)를 그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이 86.4%나 차지하였다. '돈과 우정은 정의의 힘을 파괴한다(Money and friendship break the arms of justice)', '정의는 때때로 돈주머니가 늘어진 쪽으로 기우는 수가 있다(Justice oft leans to the side where the purse hangs)' 등의 법언처럼 재판에서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력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는 권력이나 재력이 개입하고 있어서 판결의 공정성 및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강한 불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법전문가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요구는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79.5%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론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기능의 공정성에 많은 우려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여론이 권력이나 재력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는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즉 일반국민은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법률전문가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배적이었다. 이 또한 매우 흥미로운 조사결과였다. 결국 일반국민은 재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법전문가들은 아주 강하게 이에 반대한다. 이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해온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일반국민과 법전문가들의 인식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일반국민과 법전문가간에 유사한 정도로 존재하였다.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 '94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법전문가로써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이 개정된 법원조직법중개정(95.3.1), 각급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95.1.1), 각급법원의판사정원법(95.3.1), 상소심 절차에관한특례법(94.9.1), 행정소송법중개정(98.3.1) 등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표 48】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들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 문제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가) 현행(1996년) 사법시험선발인원은 500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법조인선발인원 숫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300여명	② 500여명	③ 700여명	④ 1000여명	⑤ 기타
연령	① 20대	124	12.9	38.7	12.9	31.5	4.0	
	② 30대 초반	197	16.2	27.9	7.6	38.1	10.2	
	③ 30대 후반	190	31.1	19.5	6.3	31.6	11.6	
	④ 40대	195	19.0	17.4	11.8	40.0	11.8	
	⑤ 50대 이상	86	20.9	25.6	8.1	37.2	8.1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300여명	② 500여명	③ 700여명	④ 1000여명	⑤ 기타
직 업	◎ 교수등	149	1.3	11.4	14.8	54.4	18.1	
	① 선관위	50	6.0	22.0	10.0	50.0	12.0	
	② 당정책위원	20		15.0	15.0	70.0		
	③ 국회공무원	79	6.3	17.7	12.7	53.2	10.1	
	④ 행정공무원	100	16.0	26.0	7.0	43.0	8.0	
	⑤ 판사	50	56.0	26.0	10.0	6.0	2.0	
	⑥ 검사	49	69.4	18.4	2.0	4.1	6.1	
	⑦ 변호사	100	58.0	31.0	2.0	3.0	6.0	
	⑧ 사법연수원생	99	15.2	61.6	12.1	9.1	2.0	
	⑨ 박사과정	99	1.0	11.1	6.1	65.7	16.2	
증 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5	16.8	31.7	10.2	33.7	7.6	
	② 5~9년	184	21.2	18.5	9.8	38.6	12.0	
	③ 10~19년	182	25.3	19.2	7.1	36.3	12.1	
	④ 20년 이상	107	20.6	23.4	9.3	38.3	8.4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5	9.7	39.4	11.4	34.9	4.6	
	② 100~199만원	183	14.2	15.3	8.7	49.2	12.6	
	③ 200~299만원	250	21.2	22.8	8.4	36.0	11.6	
	④ 300~499만원	127	27.6	19.7	12.6	29.9	10.2	
	⑤ 500만원 이상	50	60.0	28.0		4.0	8.0	
계 총 의 식	① 상	124	32.3	19.4	8.9	33.1	6.5	
	② 중	579	19.0	24.9	9.8	35.9	10.4	
	③ 하	89	12.4	30.3	5.6	41.6	10.1	
성 향	① 진보적	124	14.5	22.6	8.1	37.1	17.7	
	② 중도적	453	22.3	25.2	11.0	34.4	7.1	
	③ 보수적	214	19.6	24.3	6.1	39.3	10.7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3	20.8	22.9	8.8	37.0	10.6	
	② 중소도시	184	19.0	27.2	11.4	31.5	10.9	
	③ 읍·면 이하	172	20.9	26.2	7.6	39.5	5.8	

문 항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 문제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나) 이른바 “로-스쿨” 도입논쟁으로 인하여 현행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I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현행방식유지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② “로-스쿨”방식도입 (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③ 기타
연령	① 20대	125	76.8	23.2	
	② 30대 초반	197	60.9	36.5	2.5
	③ 30대 후반	188	59.6	37.8	2.7
	④ 40대	195	48.7	48.2	3.1
	⑤ 50대 이상	86	45.3	53.5	1.2
직업	◎ 교수등	148	46.6	48.6	4.7
	① 선관위	50	26.0	72.0	2.0
	② 당정책위원	20	10.0	90.0	
	③ 국회공무원	79	32.9	65.8	1.3
	④ 행정공무원	100	38.0	60.0	2.0
	⑤ 판사	49	100.0		
	⑥ 검사	49	91.8	6.1	2.0
	⑦ 변호사	100	86.0	14.0	
	⑧ 사법연수원생	99	92.9	7.1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43.0	52.0	5.0
	① 5년 미만	316	68.4	29.7	1.9
	② 5~년	183	55.2	41.0	3.8
	③ 10~19년	181	52.5	45.9	1.7
개인소득	④ 20년 이상	107	43.9	55.1	0.9
	① 100만원 미만	176	72.2	25.6	2.3
	② 100~199만원	183	41.0	56.8	2.2
	③ 200~299만원	248	54.4	43.1	2.4
	④ 300~499만원	127	60.6	37.0	2.4
계층의식	⑤ 500만원 이상	50	88.0	12.0	
	① 상	124	70.2	27.4	2.4
	② 중	578	56.6	41.3	2.1
성향	③ 하	89	52.8	44.9	2.2
	① 진보적	124	50.8	46.0	3.2
	② 중도적	452	59.3	38.9	1.8
지역규모	③ 보수적	214	60.7	36.9	2.3
	① 대도시	433	60.0	37.2	2.8
	② 중소도시	183	62.3	36.6	1.1
	③ 읍·면 이하	172	50.0	48.3	1.7

‘96본조사에서는 최근 사법제도의 개혁 특히 변호사증원을 위한 사법시험선발인원의 증원과 소위 미국식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로써 “로-스쿨”的 도입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물기위해 적정한 사법시험선발인원의 숫자와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에 관한 설문을 제시하였다. 응답의 결과 사법시험선발인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300명보다 많

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법조인의 양성방식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법전문가내에서도 행정공무원과, 법학교수는 사법시험선발인원의 대폭적인 증원에 찬성한 반면에, 사법연수원생을 포함한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선발인원을 300명정도로 고정하는데에 찬성하였다는 것이다.

【표 49】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항 2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령	① 20대	126	7.9	76.2	15.1	0.8
	② 30대 초반	198	27.8	58.6	10.6	3.0
	③ 30대 후반	190	20.5	65.3	12.1	2.1
	④ 40대	195	21.5	66.2	9.7	2.6
	⑤ 50대 이상	86	24.4	64.0	10.5	1.2
직업	◎ 교수등	150	28.7	66.7	4.7	
	① 선관위	50	26.0	74.0		
	② 당정책위원	20	30.0	60.0	10.0	
	③ 국회공무원	80	38.8	61.3		
	④ 행정공무원	100	25.0	71.0	4.0	
	⑤ 판사	50		16.0	54.0	30.0
	⑥ 검사	48	6.3	68.8	25.0	
	⑦ 변호사	100	6.0	70.0	22.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8.0	75.0	17.0	
	⑨ 박사과정	100	32.0	68.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7	20.8	67.8	10.7	0.6
	② 5~9년	185	18.9	64.3	13.0	3.8
	③ 10~19년	181	19.9	67.4	9.9	2.8
	④ 20년 이상	108	26.9	59.3	11.1	2.8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6.5	73.9	9.7	
	② 100~199만원	184	26.6	68.5	4.3	0.5
	③ 200~299만원	250	25.2	57.2	14.0	3.6
	④ 300~499만원	127	17.3	65.4	13.4	3.9
	⑤ 500만원 이상	50	6.0	68.0	24.0	2.0
계층의식	① 상	126	15.9	61.9	17.5	4.8
	② 중	580	21.2	65.9	11.0	1.9
	③ 하	89	27.0	69.7	3.4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 향	① 진보적	124	30.6	63.7	4.8	0.8	
	② 중도적	454	18.7	67.0	11.2	3.1	
	③ 보수적	216	20.4	63.9	14.8	0.9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5	19.5	65.3	12.4	2.8	
	② 중소도시	185	21.1	65.4	11.4	2.2	
	③ 읍·면 이하	172	25.0	66.3	8.1	0.6	

문 항 2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③ 기타
연 령	① 20대	126	18.3	80.2		1.6
	② 30대 초반	198	18.7	80.8		0.5
	③ 30대 후반	191	18.3	79.6		2.1
	④ 40대	196	20.9	78.6		0.5
	⑤ 50대 이상	85	23.5	76.5		
직 업	◎ 교수등	149	16.1	83.9		
	① 선관위	50	34.0	66.0		
	② 당정책위원	20	40.0	55.0		5.0
	③ 국회공무원	80	35.0	65.0		
	④ 행정공무원	100	20.0	77.0		3.0
	⑤ 판사	50	4.0	94.0		2.0
	⑥ 검사	50	12.0	84.0		4.0
	⑦ 변호사	100	15.0	85.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8.0	81.0		1.0
	⑨ 박사과정	100	18.0	82.0		
종 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7	20.8	78.5		0.6
	② 5~9년	186	15.6	82.8		1.6
	③ 10~19년	181	18.8	80.1		1.1
	④ 20년 이상	108	25.0	75.0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8.2	81.3		0.6
	② 100~199만원	185	23.2	75.1		1.6
	③ 200~299만원	250	19.2	79.2		1.6
	④ 300~499만원	127	18.9	81.1		
	⑤ 500만원 이상	50	16.0	84.0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③ 기 타
계 총 의 식	① 상	126	15.9	83.3	0.8
	② 중	581	19.1	79.9	1.0
	③ 하	89	28.1	70.8	1.1
성 향	① 진보적	125	33.6	65.6	0.8
	② 중도적	455	16.0	83.1	0.9
	③ 보수적	215	19.1	80.0	0.9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7	18.1	80.5	1.4
	② 중소도시	184	14.1	85.3	0.5
	③ 읍·면 이하	172	29.1	70.3	0.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전문가는 입법과정과 권력이나 채력으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91조사 및 '94조사 당시 심화되었던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행정관청·검찰·법원 등의 법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상당히 높아진 신뢰감을 보였다.

3.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표 50】 법집행기관에 대한 반응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공정 하다	2) 대체로 공정하다	3) 별로 공정 하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1.0(8)	58.0(461)	38.9(309)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 할 때	0.5(4)	62.3(496)	35.3(281)
	다) 과출소나 경찰서에서 법 을 적용할 때	0.1(1)	33.6(267)	58.4(464)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4.3(34)	54.8(434)	35.6(282)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4.4(114)	76.7(607)	8.7(69)
		4) 전혀 공정 하지 않다		0.1(1)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표 51】 법집행기관에 대한 연령·직업별 반응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단위: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 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 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48.4	49.2	2.4		
	② 30대 초반	198	51.5	45.5	3.0		
	③ 30대 후반	189	2.1	57.7	38.1	2.1	
	④ 40대	194	1.0	66.0	32.0	1.0	
	⑤ 50대 이상	85	2.4	70.6	24.7	2.4	
직업	◎ 교수등	149	0.7	49.7	47.7	2.0	
	① 선관위	48		50.0	47.9	2.1	
	② 당정책위원	20	5.0	85.0	10.0		
	③ 국회공무원	79	1.3	74.7	24.1		
	④ 행정공무원	100	1.0	81.0	17.0	1.0	
	⑤ 판사	50		56.0	40.0	4.0	
	⑥ 검사	49	4.1	61.2	32.7	2.0	
	⑦ 변호사	100	2.0	59.0	36.0	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53.0	44.0	3.0	
	⑨ 박사과정	100		36.0	61.0	3.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6	0.6	52.8	44.0	2.5	
	② 5~9년	185	1.1	57.3	40.5	1.1	
	③ 10~19년	181	1.7	58.6	37.6	2.2	
	④ 20년 이상	106	0.9	73.6	22.6	2.8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47.7	49.4	2.8	
	② 100~199만원	182	0.5	60.4	37.9	1.1	
	③ 200~299만원	249	2.0	61.4	34.1	2.4	
	④ 300~499만원	127	0.8	60.6	37.0	1.6	
	⑤ 500만원 이상	50	2.0	62.0	34.0	2.0	
계층의식	① 상	125	1.6	56.0	39.2	3.2	
	② 중	578	0.9	60.6	36.7	1.9	
	③ 하	89	1.1	42.7	53.9	2.2	
성향	① 진보적	124	0.8	47.6	50.0	1.6	
	② 중도적	451	0.7	60.8	36.8	1.8	
	③ 보수적	216	1.9	57.4	37.5	3.2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3	0.2	56.8	40.9	2.1	
	② 중소도시	185	1.6	55.7	40.0	2.7	
	③ 읍·면 이하	171	2.3	62.6	33.3	1.8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단위 : %)

번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 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 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54.0	43.7	2.4	
	② 30대 초반	198		57.6	39.4	3.0	
	③ 30대 후반	189	0.5	63.0	36.0	0.5	
	④ 40대	195	0.5	68.2	29.7	1.5	
	⑤ 50대 이상	85	2.4	71.8	23.5	2.4	
직업	◎ 교수등	149		51.7	45.6	2.7	
	① 선관위	49	2.0	81.6	12.2	4.1	
	② 당정책위원	20	5.0	70.0	25.0		
	③ 국회공무원	79		53.2	45.6	1.3	
	④ 행정공무원	100	2.0	83.0	15.0		
	⑤ 판사	50		66.0	32.0	2.0	
	⑥ 검사	49		81.6	18.4		
	⑦ 변호사	100		65.0	34.0	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55.0	42.0	3.0	
	⑨ 박사과정	100		47.0	50.0	3.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6	0.6	55.1	42.1	2.2	
	② 5~9년	185		63.2	35.1	1.6	
	③ 10~19년	182	0.5	67.6	30.2	1.6	
	④ 20년 이상	106	0.9	73.6	23.6	1.9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55.1	42.0	2.8	
	② 100~199만원	183	1.6	57.9	38.8	1.6	
	③ 200~299만원	249	0.4	69.9	28.5	1.2	
	④ 300~499만원	127		61.4	37.0	1.6	
	⑤ 500만원 이상	50		70.0	30.0		
계층 의식	① 상	125		64.0	32.8	3.2	
	② 중	579	0.5	63.4	35.2	0.9	
	③ 하	89	1.1	52.8	39.3	6.7	
성향	① 진보적	124	0.8	50.8	46.0	2.4	
	② 중도적	452	0.7	63.9	34.1	1.3	
	③ 보수적	216		65.3	31.9	2.8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3	0.7	59.4	38.1	1.8	
	② 중소도시	185		65.4	32.4	2.2	
	③ 읍·면 이하	172	0.6	65.7	32.0	1.7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 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 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0.5	31.0	57.9	11.1	
	② 30대 초반	198		23.7	66.2	10.1	
	③ 30대 후반	189		42.9	50.3	6.3	
	④ 40대	193		33.7	63.2	3.1	
	⑤ 50대 이상	85		41.2	47.1	11.8	
직업	◎ 교수등	148	2.0	31.1	64.2	4.7	
	① 선관위	48		33.3	54.2	12.5	
	② 당정책위원	20		40.0	55.0	5.0	
	③ 국회공무원	79		25.3	59.5	15.2	
	④ 행정공무원	100		37.0	60.0	3.0	
	⑤ 판사	50		40.0	56.0	2.0	
	⑥ 검사	49		65.3	34.7		
	⑦ 변호사	100		35.0	57.0	8.0	
	⑧ 사법연수원생	100		32.0	60.0	8.0	
	⑨ 박사과정	100		21.0	63.0	16.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316	0.6	27.5	63.0	9.5	
	② 5~9년	184		35.3	58.7	6.0	
	③ 10~19년	181		39.8	52.5	7.2	
	④ 20년 이상	106		37.7	54.7	7.5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0.6	30.7	57.4	11.9	
	② 100~199만원	181		32.6	59.1	7.7	
	③ 200~299만원	249		35.7	57.8	6.4	
	④ 300~499만원	127		35.4	59.8	4.7	
	⑤ 500만원 이상	50		38.0	56.0	6.0	
계층 의식	① 상	125	0.8	36.8	55.2	7.2	
	② 중	578		33.7	58.8	7.4	
	③ 하	88		28.4	60.2	11.4	
성향	① 진보적	124	0.2	23.4	65.3	11.3	
	② 중도적	450		34.4	59.6	5.8	
	③ 보수적	216		37.5	52.3	10.2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3	0.2	32.3	59.6	7.9	
	② 중소도시	184		34.8	54.9	10.3	
	③ 읍·면 이하	171		35.7	59.6	4.7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 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 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3.2	62.7	30.2	4.0	
	② 30대 초반	197	4.6	51.8	36.5	7.1	
	③ 30대 후반	189	5.3	54.5	36.0	4.2	
	④ 40대	192	3.1	53.1	39.6	4.2	
	⑤ 50대 이상	85	5.9	54.1	31.8	8.2	
직업	◎ 교수등	148	0.7	44.6	47.3	7.4	
	① 선관위	48		54.2	37.5	8.3	
	② 당정책위원	20	5.0	45.0	35.0	15.0	
	③ 국회공무원	79		32.9	55.7	11.4	
	④ 행정공무원	99	5.1	55.6	38.4	1.0	
	⑤ 판사	49	6.1	77.6	16.3		
	⑥ 검사	49	32.7	63.3	4.1		
	⑦ 변호사	100	4.0	72.0	22.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0	68.0	24.0	4.0	
	⑨ 박사과정	100		43.0	49.0	8.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6	3.8	55.7	35.1	5.4	
	② 5~9년	183	4.4	54.1	37.7	3.8	
	③ 10~19년	181	4.4	51.4	38.1	6.1	
	④ 20년 이상	105	5.7	56.2	31.4	6.7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7	58.5	34.7	5.1	
	② 100~199만원	181	5.0	46.4	40.9	7.7	
	③ 200~299만원	248	6.0	55.2	35.1	3.6	
	④ 300~499만원	126	4.8	54.0	34.9	6.3	
	⑤ 500만원 이상	50	2.0	72.0	24.0	2.0	
계층의식	① 상	124	4.8	56.5	33.9	4.8	
	② 중	577	4.5	54.4	35.5	5.5	
	③ 하	88	2.3	53.4	39.8	4.5	
성향	① 진보적	124	2.4	37.1	49.2	11.3	
	② 중도적	449	4.7	58.4	32.1	4.9	
	③ 보수적	215	4.7	57.2	35.3	2.8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2	4.6	53.7	36.6	5.1	
	② 중소도시	184	4.3	55.4	34.2	6.0	
	③ 읍·면 이하	170	3.5	56.5	34.7	5.3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 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 하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18.3	73.0	8.7	0.5
	② 30대 초반	197	11.2	81.7	7.1	
	③ 30대 후반	187	17.6	71.7	10.7	
	④ 40대	193	10.9	81.3	7.3	
	⑤ 50대 이상	85	17.6	70.6	11.8	
직 업	◎ 교수등	149	8.1	82.6	8.7	0.7
	① 선관위	48	12.5	81.3	6.3	
	② 당정책위원	20	10.0	75.0	15.0	
	③ 국회공무원	78	3.8	83.3	12.8	
	④ 행정공무원	99	6.1	79.8	14.1	
	⑤ 판사	49	51.0	49.0		
	⑥ 검사	49	28.6	65.3	6.1	
	⑦ 변호사	99	17.2	79.8	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5.0	70.0	5.0	
	⑨ 박사과정	100	4.0	81.0	15.0	
종 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6	13.0	77.8	8.9	0.3
	② 5~9년	182	14.8	79.7	5.5	
	③ 10~19년	181	12.7	76.8	10.5	
	④ 20년 이상	105	21.0	67.6	11.4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 미만	176	14.2	77.3	8.5	0.6
	② 100~199만원	181	9.4	78.5	11.6	
	③ 200~299만원	248	16.9	75.4	7.7	
	④ 300~499만원	126	15.9	75.4	8.7	
	⑤ 500만원 이상	49	14.3	79.6	6.1	
계 총 의 식	① 상	124	20.2	72.6	7.3	0.2
	② 중	576	13.9	76.7	9.2	
	③ 하	88	10.2	81.8	8.0	
성 향	① 진보적	123	8.9	78.0	13.0	0.2
	② 중도적	449	16.3	75.9	7.6	
	③ 보수적	215	14.0	77.2	8.8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2	14.8	76.2	8.8	0.2
	② 중소도시	185	14.1	81.1	4.9	
	③ 읍·면 이하	168	14.3	72.6	13.1	

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의식조사의 최종임무이다.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령과의 괴리정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정확하다면 국가의 입법정책에 더 말할 나위 없는 지원과 기여가 될 것이다. 법의식조사가 곧바로 법의 제정 및 개정에는 연결될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령에 대한 법전문가의 견해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현행법령 중 조사대상법령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다.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의성을 유지하되 나아가 국가의 입법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망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 선거법, 3) 헌법의 개정방향, 4)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법제의 발전방향 등을 내용으로 다섯 가지 문항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현실에 맞지 않는 법

1.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협행 민법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낙태의 허용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선거법의 개정방향

4. 선거법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헌법의 개정방향

5. 헌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향

6.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향이 다음중 어느분야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 現實에 맞지 않는 法

【표 52】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5. 다음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시오.)	
	1) 선거 및 정치관련부문	37.4(554)
	2) 복지관련부문	9.4(139)
	3) 농어촌관련부문	3.3(49)
	4) 교육관련부문	6.1(91)
	5) 금융·조세관련부문	12.0(177)
	6) 중소기업관련부문	2.3(34)
	7) 노사관련부문	6.8(101)
	8) 환경관련부문	13.1(194)
	9) 건설·교통관련부문	9.6(142)
	27.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9(47)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2.9(23)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66.5(532)
	4)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24.8(198)
	28.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22.6(181)
	2)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 할 수 있다	67.5(540)
	3)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균절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9.9(79)

현행법령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구체적인 사례로 「민법」의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형법」의 낙태규정을 선택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당해 규정들이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서 개정하여야 하며 지키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91.3%가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동성동본일지라도 결혼을 허용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4.8%에 이르렀다. 법전문가의 연령층, 소득, 계층의식 등과 관계없이 대체로 금혼규정에 반대하여 동성동본금혼법의 내용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보였다. 따라서 조만간 동 민법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현실성 없는 법분야에 대한 연령·계층·소득·직업별 반응

문항 25. 다음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시오.)

나)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① 선거 및 정치관련부문	② 복지관련부문	③ 농어촌관련부문	④ 교육관련부문	⑤ 금융·조세관련부문	⑥ 종소기업관련부문	⑦ 노사관련부문	⑧ 환경관련부문	⑨ 건설·교통관련부문
	빈도수(명)											
연령	① 20대	115	0.6	12.2	6.1	9.6	6.1	6.1	17.4	27.8	14.8	
	② 30대 초반	177		8.5	4.5	6.8	21.5	4.0	15.8	20.9	17.5	
	③ 30대 후반	171		8.8	1.8	7.6	21.1	3.5	9.9	23.4	24.0	
	④ 40대	169		11.2	4.1	11.2	19.5	4.7	5.3	21.9	21.3	
	⑤ 50대 이상	67		6.0	6.0	4.5	17.9	1.5	10.4	35.8	17.9	
직업	◎ 교수등	138	1.6	9.4	4.3	15.2	16.7	4.3	8.7	21.7	18.8	
	① 선관위	38		7.9	2.6		21.1	5.3	2.6	26.3	34.2	
	② 당정책위원	20		5.0	5.0		30.0		10.0	40.0	10.0	
	③ 국회공무원	61		6.6	1.6	8.2	19.7	6.6	11.5	23.0	21.3	
	④ 행정공무원	86		9.3	4.7	5.8	18.6	3.5	12.8	17.4	27.9	
	⑤ 판사	42		9.5	4.8	7.1	11.9	4.8	16.7	26.2	19.0	
	⑥ 검사	40		12.5	5.0	2.5	22.5			15.0	42.5	
	⑦ 변호사	91		8.8	4.4	7.7	17.6	5.5	11.0	30.8	14.3	
	⑧ 사법연수원생	88		13.6	5.7	6.8	14.8	2.3	21.6	22.7	12.5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98		10.2	3.1	10.2	18.4	5.1	12.2	30.6	10.2	
	① 5년 미만	287	0.3	10.5	4.2	8.4	17.8	4.2	13.9	24.4	16.4	
	② 5~9년	168		11.3	4.8	10.7	14.9	3.6	13.1	26.2	15.5	
	③ 10~19년	157		7.6	2.5	8.3	22.9	5.7	7.0	18.5	26.8	
	④ 20년 이상	84		8.3	4.8	3.6	15.5	2.4	7.1	32.1	26.2	

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선거 및 정관련부문	② 복지관련부문	③ 농어촌관련부문	④ 교육관련부문	⑤ 금융 · 조세관련부문	⑥ 중소기업관련부문	⑦ 노사관련부문	⑧ 환경관련부문	⑨ 건설 · 교통관련부문
개인소득	계층의식	성향	지역규모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499만원 ⑤ 500만원 이상	① 상 ② 중 ③ 하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160 159 215 111 46	0.6 0.5 9.0 15.2	11.9 9.4 7.4 6.5	5.0 3.8 3.7 2.2	8.8 6.9 7.9 2.2	15.0 18.9 19.5 8.7	3.8 4.4 4.7 4.3	16.9 11.9 6.5 17.4	26.9 20.8 26.0 32.6	11.9 23.3 23.7 18.0 13.0
계층의식				115 502 83	0.4	9.6 10.4 6.0	1.7 5.0 2.4	6.1 8.6 9.6	23.5 14.9 28.9	2.6 5.0 1.2	11.3 11.6 10.8	22.6 25.3 21.7	22.6 18.9 19.3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111 400 188	0.3 0.5	9.0 10.5 8.5	4.5 4.8 2.7	10.8 8.0 7.4	12.6 19.8 17.0	2.7 4.3 4.8	18.9 10.0 10.1	27.0 22.8 27.1	14.4 19.8 21.8
지역규모				386 164 147	0.3 0.7	10.6 9.1 8.2	3.4 3.7 6.8	9.6 5.5 8.2	18.4 15.2 19.7	4.1 3.7 4.8	11.1 13.4 9.5	23.8 31.1 19.0	18.7 18.3 23.1

【표 54】 동성동본금혼 및 낙태 규정에 대한 연령 · 소득 · 직업별 반응

문항 27.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②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 된다	③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④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 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연령	직업	학력	학과					
	① 20대 ② 30대 초반 ③ 30대 후반 ④ 40대 ⑤ 50대 이상	① 대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미 졸업 ⑤ 중학교 미 졸업	① 철학 ② 경영학 ③ 사회학 ④ 문예학 ⑤ 미술학	126 198 191 196 86	2.4 1.5 6.8 6.1 17.4	2.4 1.5 2.6 6.1	68.3 67.2 71.2 64.3 58.1	27.0 29.8 19.4 23.5 24.4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②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 된다	③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④ 동성동본 금 혼에 관한 법 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직업	◎ 교수등	150	5.3			58.0	36.7
	① 선관위	50	14.0	16.0	60.0	10.0	
	② 당정책위원	20	5.0	5.0	60.0	30.0	
	③ 국회공무원	80	2.5	2.5	80.0	15.0	
	④ 행정공무원	100	14.0	6.0	62.0	18.0	
	⑤ 판사	50	4.0		80.0	16.0	
	⑥ 검사	50	2.0		80.0	18.0	
	⑦ 변호사	100	5.0	3.0	68.0	24.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1.0	76.0	22.0	
	⑨ 박사과정	100	6.0	2.0	53.0	39.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7	2.8	1.6	67.2	28.4	
	② 5~9년	186	2.7	2.7	71.5	23.1	
	③ 10~19년	182	8.8	3.8	64.3	23.1	
	④ 20년 이상	108	15.7	5.6	61.1	17.6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3.4	2.3	69.3	25.0	
	② 100~199만원	185	5.4	5.4	63.2	25.9	
	③ 200~299만원	251	8.4	2.8	69.3	19.5	
	④ 300~499만원	127	7.9	0.8	62.2	29.1	
	⑤ 500만원 이상	50		2.0	68.0	30.0	
계층의식	① 상	126	5.6	4.0	64.3	26.2	
	② 중	582	5.8	3.1	67.2	23.9	
	③ 하	89	6.7		65.2	28.1	
성향	① 진보적	125	4.8	1.6	52.8	40.8	
	② 중도적	455	5.9	3.7	69.0	21.3	
	③ 보수적	216	6.5	1.9	69.0	22.7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3.4	2.1	65.0	29.5	
	② 중소도시	185	7.6	3.2	73.5	15.7	
	③ 읍·면 이하	172	10.5	4.7	63.4	21.5	

문항 28.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낙태는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연령	① 20대	126	30.2	63.5	6.3	
	② 30대 초반	198	18.7	71.7	9.6	
	③ 30대 후반	191	17.8	71.2	11.0	
	④ 40대	196	22.4	67.3	10.2	
	⑤ 50대 이상	86	31.4	57.0	11.6	
직업	◎ 교수등	150	18.0	64.7	17.3	
	① 선관위	50	22.0	72.0	6.0	
	② 당정책위원	20	55.0	30.0	15.0	
	③ 국회공무원	80	25.0	67.5	7.5	
	④ 행정공무원	100	18.0	73.0	9.0	
	⑤ 판사	50	20.0	78.0	2.0	
	⑥ 검사	50	28.0	60.0	12.0	
	⑦ 변호사	100	26.0	68.0	6.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1.0	70.0	9.0	
	⑨ 박사과정	100	23.0	67.0	10.0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7	22.4	66.9	10.7	
	② 5~9년	186	20.4	69.4	10.2	
	③ 10~19년	182	24.7	68.1	7.1	
	④ 20년 이상	108	23.1	64.8	12.0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6	23.9	65.9	10.2	
	② 100~199만원	185	19.5	71.9	8.6	
	③ 200~299만원	251	21.5	67.7	10.8	
	④ 300~499만원	127	23.6	65.4	11.0	
	⑤ 500만원 이상	50	24.0	68.0	8.0	
계층의식	① 상	126	29.4	61.9	8.7	
	② 중	582	21.5	68.6	10.0	
	③ 하	89	20.2	68.5	11.2	
성향	① 진보적	125	29.6	58.4	12.0	
	② 중도적	455	21.3	69.0	9.7	
	③ 보수적	216	21.8	69.0	9.3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23.3	64.8	11.9	
	② 중소도시	185	18.4	73.5	8.1	
	③ 읍·면 이하	172	25.0	68.0	7.0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사실혼관계의 동성동본부부는 수십만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1978년과 1988년 두차례에 걸쳐 적용한 「혼인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 동성동본부부는 각각 4,577쌍, 7,458쌍으로 1만2천여쌍에 지나지 않는다.⁵¹⁾

외국의 입법례⁵²⁾를 보더라도 대부분(영국·미국·이태리·프랑스·독일·스위스·러시아·아르헨티나·그리스·일본·필리핀·중국 등) 칙계혈족을 비롯한 근친간의 혼인은 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동성동본인 혈족,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혼인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일찍부터 소가족제도를 이루고 있었던 서구나 일본에서는 최소한의 혼인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제자매 내지 숙질간의 혼인만을 금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가족제도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우 근친혼금지에 관하여 규율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편이다.

현행민법 제정 당시 동성동본금혼규정에 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으나 결국 전통적 윤리의식과 사회질서유지의 근간으로서 가족제도에 대한 강조⁵³⁾로 말미암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좌절되고 현행민법 제809조가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周나라에서 동성동본금혼법이 최초로 생긴 중국에서도 1908년 이를 폐지하여 이 규정이 살아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현행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규정으로도 근친혼을 막는데 충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법전문가의 법의식이 이 규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많은 동성동본부부가 사실혼관계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법생활이 탈법적으로 흐르기 쉽고 나아가 비정상적인 혼인신고를 조장하여 법치주의 정착을 방해하는 폐단을 가져오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정

51) 사실혼 관계의 동성동본부부의 숫자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추산이며 이 중 「혼인에 관한특례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근친혼인 경우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함.

52) 외국의 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주수, 『친족상속법』(법문사, 1991); 김용한, 『친족상속법』(박영사, 1988); 법무부, 『가족법의 제문제』(법무자료 제55집(1986), 범여성가족법 개정촉진회,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개정법안 및 이유서』(1994); 宮崎孝治郎, 『新比較婚姻法』(日本勁草書房, 1972); 김병대, "동성동본불혼제에 관한 소고"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남송 한봉희 교수 회갑기념, 1994) 등 참조.

53) 양일동의원의 토론,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5편 1~22면 참조. 김용한, "동성불혼법제의 재검토"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해석 고창현 박사 화갑기념, 1987) 701~703면에서 재인용.

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으로 생각된다. '말도 사촌까지 相避를 본다'라는 우리 속담에 현대적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한편 「형법」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90.1%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하여 또는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형법의 낙태죄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9.9%에 지나지 않았다. 연령층이 많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진보적일수록 낙태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입법태도 중 지킬 만한 법을 만들려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법을 만들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법 및 법전문가의 선도적·개혁적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자칫 사회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커져 법조문의 사문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풍속상 「형법」의 낙태규정에 의한 규제들이 거의 묵인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일반국민 사이에 법이라는 규범이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반법치주의적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2. 選舉改革과 選舉法

【표 55】 선거개혁과 선거관계법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십시오.)	
	1) 법정선거비용	33.4(505)
	2) 소·중·대선거구, 전국구 등 선거제도	8.2(124)
	3) 자원봉사자	6.9(105)
	4)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4.5(68)
	5) 후보자공천	13.0(197)
	6) 후보자재산공개	3.8(58)
	7) 사전선거운동	10.6(161)
	8)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11.8(178)
	9) 무소속입후보자에 대한 불평등	7.8(118)

그 동안 선거관계법제는 공직후보자·정당·정당원 등이나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불법타락선거 및 정치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과거 각 공화국의 단절된 정치목표의 추구나 집권당의 안정세력기반 구축의 지나친 욕구, 그리고 입법관계자의 자의적인 입법태도는 정치게임에서의 공정한 게임규칙을 인위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수정·폐기하여 버림으로써 정치관계법제 상호간에 갈등관계에 있는 법조항들과 그 규범적 의미에 반하는 제도가 많았다. 따라서 정치관계법제처럼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법제도 드물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도는 더욱 심하였다.

이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의 중심축으로서 정치관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노력 결과 1993년 12월 31일 「정당법」,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등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정당 설립요건의 완화, 당내민주적 질서의 법규적 보장, 선거기간의 단축,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운동, 선거비용의 강력한 통제, 선거사범 처벌의 강화, 선거운동에의 관권이나 기업의 개입금지, 선거일자의 법정화, 정당득표률에 따른 전국구의원수의 배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액영수증 사용,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보장, 지방정부의 권한 증대와 견제(직무이행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치개혁법은 기존의 정치관계법의 입법행태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입법적 혁명에 가깝다.

정치관계법의 규범력 확보는 그 성격상 입후보자·선거관계기관·유권자 등 세부문의 준법의지를 필요로 한다. 선거관계법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이 중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부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11.8%)' 보다는 '법정선거비용(33.4%)'을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 정치인과 유권자의 불법타락선거 및 정치의식을 정치후진성의 主犯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6】 선거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연령·직업·소득별 반응

문 항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십시오.)

가)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법 정 거 비 용	② 속 종 · 선 거 구 전 국 구 등 선 거 제 도	③ 자 원 봉 사 자	④ 출 구 조 사를 들 여 론 조사	⑤ 후 보 자 공 천	⑥ 후 보 자 재 산 공 개	⑦ 사 전 선 거 운 동	⑧ 선 거 관 원 의 활 약 및 권 한	⑨ 소 입 보 후 자 에 한 평 등
연령	① 20대	124	67.7	8.1	8.1	4.0	8.1	0.8	0.8	2.4	
	② 30대 초반	196	64.8	8.2	7.1	3.6	9.2	3.6	2.0	1.5	
	③ 30대 후반	187	65.8	8.0	3.7	3.7	10.2	1.1	3.7	3.2	0.5
	④ 40대	194	57.7	16.0	3.1	3.1	13.4	0.5	3.6	2.1	0.5
	⑤ 50대 이상	85	67.1	11.8		4.7	7.1	2.4	3.5	3.5	
직업	◎ 교수등	150	62.7	13.3	1.3	2.7	14.0	0.7	2.0	2.7	0.7
	① 선관위	50	50.0	10.0	8.0		18.0	2.0	12.0		
	② 당정책위원	20	50.0	10.0	10.0	10.0	10.0		5.0	5.0	
	③ 국회공무원	79	63.3	11.4	3.8	2.5	12.7	1.3	1.3	2.5	
	④ 행정공무원	98	67.3	15.3	2.0	1.0	5.1	1.0	5.1	3.1	
	⑤ 판사	50	72.0	6.0	6.0	4.0	6.0	4.0	2.0		
	⑥ 검사	49	77.6	8.2	4.1		6.1			4.1	
	⑦ 변호사	96	62.5	10.4	3.1	6.3	10.4	2.1	2.1	3.1	
	⑧ 사법연수원생	99	65.7	5.1	9.1	7.1	6.1	3.0	2.0	2.0	
	⑨ 박사과정	98	62.2	9.2	7.1	5.1	11.2	2.0	1.0	2.0	
종사 기 간	① 5년 미만	313	66.5	7.7	7.3	5.4	7.7	2.2	1.6	1.6	
	② 5~9년	183	60.1	12.6	3.3	2.2	14.8	0.5	2.2	3.8	0.5
	③ 10~19년	178	61.8	10.7	2.8	3.9	12.9	1.7	3.4	2.2	0.6
	④ 20년 이상	108	64.8	14.8	2.8	0.9	5.6	1.9	6.5	2.8	
개인 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3	63.6	7.5	8.7	5.2	9.2	1.7	1.7	2.3	
	② 100~199만원	184	67.4	12.0	4.3	1.1	8.2	2.2	3.3	1.6	
	③ 200~299만원	248	60.5	10.5	3.6	4.0	12.9	2.0	3.2	2.8	0.4
	④ 300~499만원	126	63.5	11.9	2.4	3.2	10.3	0.8	4.0	3.2	0.8
	⑤ 500만원 이상	47	72.3	10.6	4.3	4.3	8.5				
계층 의식	① 상	126	69.0	11.9	2.4	2.4	8.7	0.8		4.8	
	② 중	573	63.2	10.5	5.2	3.8	10.3	1.4	3.1	2.1	0.3
	③ 하	87	60.9	8.0	4.6	4.6	11.5	4.6	4.6	1.1	
성향	① 진보적	122	58.2	12.3	4.9	3.3	14.8	2.5	1.6	1.6	0.8
	② 중도적	451	63.9	10.6	4.4	3.1	10.2	2.0	2.4	3.1	0.2
	③ 보수적	213	67.1	8.9	5.2	5.2	7.5	0.5	4.2	1.4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2	67.4	10.4	3.7	3.9	8.1	1.6	1.6	2.8	0.5
	② 중소도시	183	57.9	10.4	8.2	4.4	11.5	2.2	3.8	1.6	
	③ 읍·면 이하	168	61.9	10.7	3.6	2.4	13.7	1.2	4.8	1.8	

문 항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십시오.)

나)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법정선거비용	②소·중선거구, 전국구 등 선거제도	③자원봉사자	④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⑤후보자 공천	⑥후보자 재산공개	⑦사전선거운동	⑧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⑨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평등
연령	① 20대	121		5.0	7.4	8.3	21.5	4.1	18.2	20.7	14.9	
	② 30대 초반	182		5.5	7.1	8.8	17.0	8.8	12.6	23.1	17.0	
	③ 30대 후반	176		2.3	9.1	5.7	13.6	7.4	21.6	25.0	15.3	
	④ 40대	175		7.4	13.7	1.1	12.0	4.0	26.9	18.9	16.0	
	⑤ 50대 이상	68		13.2	8.8	1.5	22.1	2.9	11.8	22.1	17.6	
직업	◎ 교수등	143		9.8	8.4	7.0	18.9	5.6	13.3	21.7	15.4	
	① 선관위	45			6.7		6.7	6.7	46.7	24.4	8.9	
	② 당정책위원	17		17.6	11.8				35.3	29.4	5.9	
	③ 국회공무원	65		3.1	12.3	6.2	23.1	4.6	20.0	15.4	15.4	
	④ 행정공무원	80		7.5	13.8	7.5	12.5	5.0	21.3	12.5	20.0	
	⑤ 판사	47		4.3	8.5	4.3	12.8		21.3	42.6	6.4	
	⑥ 검사	46		4.3	19.6	2.2	15.2	4.3	30.4	13.0	10.9	
	⑦ 변호사	91		4.4	4.4	3.3	17.6	7.7	17.6	22.0	23.1	
	⑧ 사법연수원생	91		3.3	7.7	6.6	18.7	12.1	13.2	23.1	15.4	
	⑨ 박사과정	100		6.0	8.0	7.0	16.0	7.0	11.0	25.0	20.0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294		4.8	8.5	8.5	18.0	8.5	14.6	20.1	17.0	
	② 5~9년	172		4.1	7.6	5.2	18.0	2.9	23.8	26.2	12.2	
	③ 10~19년	168		7.7	8.9	3.0	10.1	6.5	21.4	23.2	19.0	
	④ 20년 이상	86		8.1	17.4		16.3	3.5	20.9	18.6	15.1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65		3.6	5.5	7.3	20.0	8.5	13.3	24.8	17.0	
	② 100~199만원	164		9.1	11.0	7.9	14.6	6.7	17.7	20.1	12.8	
	③ 200~299만원	220		3.6	11.8	4.1	11.8	4.5	25.5	21.8	16.8	
	④ 300~499만원	118		7.6	9.3	0.8	21.2	3.4	19.5	19.5	18.6	
	⑤ 500만원 이상	48		8.3	8.3	4.2	12.5	10.4	16.7	27.1	12.5	
계층의식	① 상	122		5.7	10.7	5.7	21.3	4.9	17.2	18.0	16.4	
	② 중	518		5.6	9.1	5.6	17.0	6.4	20.3	21.0	15.1	
	③ 하	83		7.2	9.6	3.6	2.4	6.0	15.7	33.7	21.7	
성향	① 진보적	118		6.8	7.6	5.9	9.3	5.9	22.9	22.0	19.5	
	② 중도적	408		5.9	9.8	5.6	16.4	5.4	16.7	24.5	15.7	
	③ 보수적	196		4.6	9.7	4.6	19.4	8.2	22.4	16.8	14.3	
지역규모	① 대도시	399		6.3	9.8	5.8	16.5	7.0	19.0	21.3	14.3	
	② 중소도시	171		4.7	7.0	5.8	15.2	5.8	20.5	22.2	18.7	
	③ 읍·면 이하	150		6.0	10.7	4.0	16.0	4.0	18.0	24.0	17.3	

3. 憲法改正의 問題

【표 57】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우선순위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29.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u>우선적으로</u>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형태 부문(의원내각제 또는 4년중임 대통령제)	34.8(272)
	2) 통일정책 부문(영토조항 등)	26.5(207)
	3) 헌법재판소 위상의 재정립	12.9(101)
	4) 기본권 부문	22.5(176)
	5) 기타	3.3(26)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문이 무엇인가하는 설문에 대하여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하에서 임기문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형태부문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4.8%로써 가장 많았으며 통일정책부문과 기본권부문도 각각 26.5%와 22.5%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상 제정립 문제에 대하여는 12.9%만이 응답하였다. 정부형태부문에 대하여는 연령이 많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보수적성향이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통일정책부문에 대하여는 연령이 적을수록,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진보적성향이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는 우리사회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일수록 현재의 분단상황을 인정하고 국내적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젊고 진보적인 세대는 우리나라사회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통일문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8】 헌법을 개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령·직업·소득·계층별 반응

문항 29.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정부형태 부문(의원내각제 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② 통일정책 부문(영토조항 등)	③ 헌법재판소 위상의 재정립	④ 기본권 부문	⑤ 기타
연령	① 20대	124	23.4	40.3	16.9	17.7	1.6
	② 30대 초반	195	26.7	30.3	13.3	26.2	3.6
	③ 30대 후반	185	37.3	23.2	11.9	24.9	2.7
	④ 40대	190	42.6	22.1	10.0	21.6	3.7
	⑤ 50대 이상	85	48.2	15.3	14.1	16.5	5.9
직업	◎ 교수등	148	35.1	22.3	18.2	18.9	5.4
	① 선관위	48	52.1	16.7	2.1	29.2	
	② 당정책위원	20	60.0	10.0	5.0	25.0	
	③ 국회공무원	80	43.8	21.3	6.3	26.3	2.5
	④ 행정공무원	96	35.4	26.0	9.4	25.0	4.2
	⑤ 판사	48	47.9	16.7	18.8	16.7	
	⑥ 검사	49	40.8	28.6	4.1	18.4	8.2
	⑦ 변호사	97	34.0	23.7	12.4	24.7	5.2
	⑧ 사법연수원생	97	21.6	50.5	15.5	9.3	3.1
	⑨ 박사과정	99	17.2	28.3	20.2	34.3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1	27.0	34.1	13.5	22.2	3.2
	② 5~9년	182	32.4	23.1	13.2	27.5	3.8
	③ 10~19년	175	43.4	22.3	12.0	19.4	2.9
	④ 20년 이상	107	48.6	16.8	12.1	19.6	2.8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2	20.9	43.0	15.7	19.2	1.2
	② 100~199만원	181	32.0	20.4	13.3	30.4	3.9
	③ 200~299만원	245	42.0	22.4	10.6	20.0	4.9
	④ 300~499만원	125	43.2	20.0	14.4	20.0	2.4
	⑤ 500만원 이상	48	35.4	27.1	8.3	27.1	2.1
계층의식	① 상	123	33.3	22.0	14.6	23.6	6.5
	② 중	570	36.5	26.3	13.0	21.4	2.8
	③ 하	86	26.7	33.7	9.3	29.1	1.2
성향	① 진보적	122	29.5	34.4	9.8	23.8	2.5
	② 중도적	446	34.5	24.9	13.5	23.8	3.4
	③ 보수적	210	39.0	24.8	13.8	19.0	3.3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2	31.3	28.0	15.0	21.5	4.2
	② 중소도시	177	32.8	27.1	13.0	24.3	2.8
	③ 읍·면 이하	167	46.7	22.2	7.2	22.8	1.2

4. 21世紀에 대비한 法制發展方向

【표 59】 21세기에 대비한 법제발전방향

구 분	'96 법 전 문 가 조 사
	30. 선생님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발전방향이 다음중 어느 분야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민주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법제기능 30.7(243)
	2)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일법제 마련 17.7(140)
	3)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법제정비 16.9(134)
	4) 첨단과학 및 정보화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11.4(90)
	5)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법제 정비 23.1(183)
	6) 기타 0.3(2)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발전이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야하는가하는 설문은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게될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법제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하는 설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민주법치국가완성을 위한 법제기능을 지적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 (30.7%)은 현재 우리나라사회에 있어 법치주의의 실현이 거리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지적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법제정비(23.1%)는 성장우선의 경제발전이 아닌 분배우선의 경제발전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분배우선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과도한 소비성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자칫 그동안 이루어온 경제발전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생산성의 향성을 무시한 과다한 임금요구로 인한 노사간의 마찰이 극단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 첨단과학 및 정보화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정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여 각각 16.9%와 11.4%만이 응답한 것은 우리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법전문가들 사이에도 미래에 대한 대비의식이 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진취성의 부족은 우리사회의 성장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라 할 것이다. 민족동질성확보를 위한 통일법제마련에 대하여는 헌법개정에 있어 우선 순위를 통일정책부문에 두었던 응답과 일치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진보적일수록 21세기에 집중하여야 할 법제의 분야로 지적하였다.

【표 60】 21세기 법제발전방향에 대한(연령·직업·소득·계층별 반응)

문항 30. 선생님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 발전방향이 다음중 어느 분야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민주법치 국가 완성을 위한 통일 법제 마련	②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일 법제 마련	③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법제 정비	④ 첨단과학 및 정보화 사회정책을 위한 법제 개선	⑤ 선진복지 사회를 구현할 법제 정비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4	22.6	24.2	21.0	12.1	20.2	1.0
	② 30대 초반	197	34.0	19.8	14.2	12.7	18.3	
	③ 30대 후반	188	31.4	16.0	15.4	9.6	27.7	
	④ 40대	194	32.0	13.4	14.9	9.8	29.9	
	⑤ 50대 이상	86	30.2	17.4	24.4	15.1	12.8	
직업	◎ 교수등	148	35.8	13.5	19.6	7.4	23.6	2.5
	① 선관위	50	30.0	14.0	22.0	6.0	28.0	
	② 당정책위원	20	20.0	30.0	10.0		40.0	
	③ 국회공무원	80	27.5	20.0	12.5	10.0	27.5	
	④ 행정공무원	99	30.3	15.2	16.2	17.2	21.2	
	⑤ 판사	49	38.8	8.2	14.3	6.1	32.7	
	⑥ 검사	50	28.0	24.0	16.0	16.0	16.0	
	⑦ 변호사	98	33.7	18.4	13.3	12.2	22.4	
	⑧ 사법연수원생	99	26.3	28.3	16.2	12.1	17.2	
	⑨ 박사과정	99	27.3	14.1	22.2	16.2	20.2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313	27.8	20.1	17.3	11.5	22.7	0.6
	② 5~9년	185	35.7	20.0	12.4	9.7	22.2	
	③ 10~19년	179	29.6	12.3	18.4	15.1	24.6	
	④ 20년 이상	108	32.4	15.7	21.3	7.4	23.1	
개인소득	① 100만원 미만	174	24.7	21.8	18.4	16.1	19.0	1.1
	② 100~199만원	184	29.3	19.0	15.2	11.4	23.9	
	③ 200~299만원	249	33.7	15.7	16.9	8.0	25.7	
	④ 300~499만원	125	31.2	14.4	20.8	13.6	20.0	
	⑤ 500만원 이상	49	34.7	18.4	10.2	8.2	28.6	
계층의식	① 상	125	31.2	15.2	18.4	12.0	23.2	0.3
	② 중	576	31.3	18.2	17.4	10.8	22.0	
	③ 하	88	25.0	18.2	12.5	13.6	30.7	
성향	① 진보적	123	31.7	20.3	13.0	10.6	24.4	0.9
	② 중도적	449	31.6	17.4	16.9	11.1	22.9	
	③ 보수적	216	28.2	16.7	19.4	11.6	23.1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2	30.6	17.8	16.9	11.6	22.9	0.2
	② 중소도시	183	30.6	17.5	15.8	9.8	25.7	
	③ 읍·면 이하	171	29.2	18.1	18.7	12.3	21.6	

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법령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의 규범력 강화와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 바람직한 법 보다는 잘 지켜지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하여는 법제화과정에서부터 야기된 준법불능의 입법행태를 비판하였고 특히 정치관계법에 관하여 응답자 자신의 법의식 제고와 준법정신 양양을 강조하였다. 특정 분야법이 그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법의식 제고는 물론 국가사회의 가치기준 및 생활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태도가 필수적이며 향후 이러한 입법관행이 제도화될 때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은 한 걸음 앞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거나 집중적으로 법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로서 국내적인 사항들이 지적된 것은 법전문가들의 우리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정신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국경이 없는 21세기 지구촌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아직도 폐쇄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III. 結論 : 綜合的 評價

'96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는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4년 여가 지나는 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의식의 변화를 '94조사와 '91 조사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94년 및 '91조사에서 한국인의 법의식 특징으로 나타난 법의식의 전반에 대하여 법전문가의 법의식과 비교한 재검증을 통하여 법의식의 재정립 필요성에서 실시되었다. 80년대 후반이후의 민주화과정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는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완전히 부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사회변혁은 특정한 계기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제도적 착근은 구조조정단계를 거치면서 순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민법의식의 변화에도 단순한 동요에 불과한 경우가 '94년 및 '91조사에서 법의식의 변화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한 실증적 재검토가 '96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법생활의 선진화와 국가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및 법집행정책의 수립방향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법치사회 실현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권재민의 근대적 실현 형태인 삼권분립은 권력분립의 사회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핵은 국가의 모든 운영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사회의 실현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화 및 제도화단계(총체적인 발전단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법의식은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잊지 않게 하려는 의욕·정신·힘이며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법의식의 현주소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96법전문가법의식조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째,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그 시대의 가치관은 법의식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인데 '91조사 및 '94조사와 비교할 때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더욱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불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전문가는 파악하고 있었다.

둘째,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법기능의 다양화 조짐과 법의 유용한 가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해진 태도 등은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셋째, 우리 국민의 법생활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행정관청에서의 일처리에 있어서 법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었으며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입안이나 집행을 하는 국회, 행정부, 검찰, 사법부 등에 대하여는 법적인 신뢰가 높아져 가고 있었다. 이는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원리가 정착될 수 있는 청신호이다.

넷째, 다만 법전문가 또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발생시키고자 할 용의와 능력은 다분하지만 법절차적 분쟁 해결수단의 동원에는 법전문가조차 주저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법의식의 특징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응답자 대부분의 반응은 법의 규범력 강화와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법보다는 지키기 쉬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하여는 법제화과정에서부터 야기된 준법불능의 입법행태를 비판하였고 특히 선거법에 관하여 응답자 자신의 법의식 제고와 준법정신 강양을 강조하였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법적인 문제로서 민주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선진복지사회구현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족동일성확보라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제환경 패러다임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될 21세기에 대비한 법적 대비에 대하여는 우리社会의 여론 선도층이며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법전문가들 조차 준비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해결되어야 할 우리社会의 내부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전문가법의식의 제고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탈·위법 행위에 대한 불용적인 태도·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국가기관과의 일체감 형성 등은 법치社会의 실현 가능성 까지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법의식의 면면에는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 또한 상존하고 있다.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의 선택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의식의 확산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비타협적이며 막연한 이익요구까지 포함하는 권리주장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 법전문가들의 법경시풍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 등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권리의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을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과 법조문이나 법률용어의 난해성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본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합리적인 해결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게 한다.

이들의 개선을 위하여는 초·중·고등 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 확대 및 개선, 법령홍보의 강화, 입법참여제도의 확대와 사법제도의 개선, 변호사 수임료의 하향조정 등 다양한 대안제시가 가능하지만 법의식이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심리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의식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 의식개혁적 차원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부 록

- I. 조사의 개요
- II. 응답자의 특징
- III. 기본빈도표
- IV. 교차집계표
- V. 설문지

I. 조사의 개요

1. 조사연구의 목적

- 한국법률문화의 발전방향 모색
-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상의 개선방향 모색
- 법치주의의 정착방안 강구

2. 조사의 방법과 내용

1) 조사방법

- 표본표출 : (직종별 분류)
- 면접방법 : 면접 및 개별적 자기기입법 병행

2) 조사의 내용

-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법률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법률전문가의 법생활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3) 조사기간

- 예비조사
- 본조사

4) 조사대상

- 법조인 · 법학교수 · 공무원 등 법률전문가 800명

II. 응답자의 특징

설문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 | | |
|-------|-----------|
| 1) 남자 | 95.6(764) |
| 2) 여자 | 4.4(35) |

2. 선생님의 연령은? 만 세

- A)
- | | |
|-----------|-----------|
| 1) 20대 | 15.8(126) |
| 2) 30대 | 48.8(389) |
| 3) 40대 | 24.6(196) |
| 4) 50대 이상 | 10.8(86) |

B)

- | | |
|-----------|-----------|
| 1) 20대 | 15.8(126) |
| 2) 30대 초반 | 24.9(198) |
| 3) 30대 중반 | 23.9(191) |
| 4) 40대 | 24.6(196) |
| 5) 50대 이상 | 10.8(86) |

3. 선생님의 학력은?

- | | |
|-----------|-----------|
| 1) 고졸 이하 | 1.5(12) |
| 2) 대졸 | 39.1(312) |
| 3) 대학원 이상 | 59.3(473) |

4. 선생님과 선생님댁의 한 달 평균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가) 개인소득

- | | |
|-------|--------|
| 1) 없다 | 1.1(9) |
|-------|--------|

- | | |
|----------------|-----------|
| 2) 100만원 이하 | 21.2(167) |
| 3) 100만원~149만원 | 8.9(70) |
| 4) 150만원~199만원 | 14.6(115) |
| 5) 200만원~249만원 | 16.7(132) |
| 6) 250만원~299만원 | 15.1(119) |
| 7) 300만원~399만원 | 11.4(90) |
| 8) 400만원~499만원 | 4.7(37) |
| 9) 500만원 이상 | 6.3(50) |

나) 가계소득

- | | |
|----------------|-----------|
| 1) 없다 | 28.2(210) |
| 2) 100만원 이하 | 12.6(92) |
| 3) 100만원~149만원 | 9.2(67) |
| 4) 150만원~199만원 | 9.5(69) |
| 5) 200만원~249만원 | 11.4(83) |
| 6) 250만원~299만원 | 6.6(48) |
| 7) 300만원~399만원 | 10.9(79) |
| 8) 400만원~499만원 | 4.3(31) |
| 9) 500만원 이상 | 6.7(49) |

5. 선생님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 | | |
|----------------------|-----------|
| 1) 미혼 | 21.9(175) |
| 2) 기혼(별거·이혼·사별 등 포함) | 78.1(625) |

6.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 |
|-------------------------------|-----------|
| 1) 불교 | 18.9(151) |
| 2) 기독교(개신교) | 22.0(175) |
| 3) 카톨릭교(천주교) | 12.7(101) |
| 4) 유교 | 1.5(12) |
| 5) 민족종교(원불교·천도교·증산교·
대종교등) | 1.0(8) |
| 6) 없다 | 43.4(346) |
| 7) 기타 | 0.5(4) |

7. 선생님의 주된 성장지는 어느 곳입니까?

(만 20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

가) 지역

- | | |
|-----------|-----------|
| 01) 서울 | 29.1(232) |
| 02) 인천·경기 | 5.8(46) |
| 03) 강원 | 2.9(23) |

04) 충북	2.4(19)
05) 대전·충남	8.7(69)
06) 전북	7.3(58)
07) 광주·전남	11.6(92)
08) 대구·경북	17.1(136)
09) 부산·경남	13.2(105)
10) 제주	1.6(13)
11) 이북	0.3(2)
12) 해외	0.1(1)

나) 규 모

1) 대도시(특별시·광역시)	55.0(437)
2) 중소도시	23.3(185)
3) 읍·면·이하	21.7(172)

8. 선생님은 현재의 직종에 몇년동안 종사하셨습니까? (년)

1) 4년	40.0(317)
2) 9년	23.4(186)
3) 20년	26.9(213)
4) 21년 이상	9.7(77)

9. 선생님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1.3(10)
2) 잘 사는 편이다	14.6(116)
3) 중간·중도이다	73.0(582)
4) 못 사는 편이다	10.2(81)
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1.0(8)

마지막으로 다음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0. 선생님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부가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36.5(289)
2) 가급적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	54.0(427)
3) 남편이 부담하여야 한다	9.5(75)

11. 선생님은 여성의 흡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괜찮다	8.2(65)
2) 가급적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65.2(520)
3) 안된다	26.6(212)

12.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진보적이다	15.7(125)
2) 중도적이다	57.2(455)
3) 보수적이다	27.1(216)

III. 기본빈도표

1996년 조사

법에 대한 선생님의 느낌과 생각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 | |
|----------|-----------|
| 1) 공평하다 | 25.3(200) |
| 2) 민주적이다 | 4.3(34) |
| 3) 엄격하다 | 26.7(211) |
| 4) 편파적이다 | 9.5(75) |
| 5) 권위적이다 | 34.3(271) |

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 | |
|----------|-----------|
| 1) 바람직하다 | 10.7(85) |
| 2) 합리적이다 | 36.2(288) |
| 3) 물인정하다 | 32.3(257) |
| 4) 불쾌하다 | 20.8(165) |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 | |
|----------------|-----------|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0(16) |
| 2) 대체로 동의한다 | 18.0(144) |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35.5(284)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4(355)

4. 선생님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최고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 32.5(259) |
| 2) 최고제한속도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67.5(537) |

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그렇다 | 49.3(393) |
| 2) 그렇지 않다 | 50.7(404) |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 | |
|----------------------------|-----------|
|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16.6(64) |
|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찰저 | 17.1(66) |
|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24.4(94) |
|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40.8(157) |
| 5) 기타 | 1.0(4) |

법생활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과 의견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그렇다 | 8.3(66) |
| 2) 그렇지 않다 | 91.7(730) |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 | |
|-------------------------|-----------|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9(21) |
| 2)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 34.9(249) |
|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 39.6(282) |

- | | |
|-------------------|----------|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10.8(77) |
|-------------------|----------|

- | | |
|-----------------------|----------|
|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 11.8(84) |
|-----------------------|----------|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정치인 | 71.9(508) |
| 2) 공무원 | 2.8(20) |
| 3) 법조인 | 4.2(30) |
| 4) 기업인 | 14.3(101) |
| 5) 근로자 | 1.0(7) |
| 6) 교육자 | 1.4(10) |
| 7) 대학생 | 1.0(7) |
| 8) 기타 | 3.4(24) |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 정치부문	0.4(3)	3.8(30)	63.5(505)	32.3(257)
나) 행정부문	2.6(21)	67.9(540)	28.7(228)	0.8(6)
다) 경제부문	0.1(1)	25.8(204)	69.3(548)	4.8(38)
라) 노사부문	0.4(3)	31.9(252)	63.8(504)	3.9(31)
마) 교육부문	2.9(23)	65.2(514)	30.1(237)	1.8(14)
바) 교통부문	0.8(6)	19.6(155)	68.3(541)	11.4(90)
사) 환경부문		7.0(55)	70.9(560)	22.2(175)

8. 선생님께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 | |
|---------------------------------|-----------|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67.0(535) |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17.5(140) |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 15.4(123) |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가)

- | | |
|------------|-----------|
| 1) 부정부패 | 69.6(553) |
| 2) 탈세 | 11.3(90) |
| 3) 부동산투기사범 | 2.5(20) |
| 4) 환경사범 | 15.4(122) |
| 5) 공안사범 | 0.8(6) |
| 6) 기타 | 0.4(3) |

나)

- | | |
|-----------|-----------|
| 1) 성폭행 | 21.1(165) |
| 2) 조직폭력배 | 48.0(376) |
| 3) 마약사범 | 11.9(93) |
| 4) 강·절도사범 | 10.9(85) |
| 5) 음주운전 | 6.3(49) |
| 6) 기타 | 1.9(15) |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신 | 17.8(141) |
|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7.2(57) |
|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 37.2(295) |
| 4)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법교육 | 25.5(202) |
|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10.1(80) |
| 6) 기타 | 2.1(17) |

부 록

10. 선생님은 각종 법령을 주로 어떻게 알게 됩니까?

- | | |
|----------------------|-----------|
| 1)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보고서 | 62.9(497) |
| 2)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 25.1(198) |
| 3) 관보를 보고서 | 9.2(73) |
| 4)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 1.1(9) |
| 5) 각종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 0.8(6) |
| 6) 기타 | 0.9(7) |

11. 특정 전문분야(유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전문가가 전문분야를 직접 연구하기보다는 그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적으로 찬성한다 | 17.3(138) |
| 2) 대체로 찬성한다 | 63.3(504) |
|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17.5(139) |
|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1.9(15) |

12.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법률자문에 응할 때 이들이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0.4(3) |
| 2) 대체로 잘 알고 있다 | 17.5(140) |
| 3) 별로 알고 있지 않다 | 77.6(619) |
| 4) 전혀 모르고 있다 | 4.5(36) |

13.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되고 있다 | 0.4(3) |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8.5(68) |
|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 77.9(621) |
|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 13.2(105) |

나) 선생님은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9.5(76) |
|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0.4(243) |
|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6.9(55) |
|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 53.2(425) |
| 5) 기타 | |

14. 선생님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 | |
|-----------|-----------|
| 1) 자세히 본다 | 14.0(112) |
| 2) 대충 본다 | 65.3(522) |
| 3) 보지 않는다 | 20.8(166) |

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29.2(232) |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 | 47.7(379) |
|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22.2(176) |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 0.9(7) |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 42.1(335) |
|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 52.3(416) |
|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 4.3(34) |
| 4) 기타 | 1.4(11) |

입법·행정·사법 등 법정립 및 법집행
기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
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1) 그렇다 | 87.0(696) |
| 2) 그렇지 않다 | 13.0(104) |

18. 우리나라의 입법예고제는 일반국민의 입
법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법 전단계에서
법률상 문제를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법예고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예고대상법률의 확대 | 5.9(46) |
| 2) 예고수단의 다양화 | 50.6(397) |
| 3) 예고사항의 구체화 | 14.5(114) |
| 4) 제출된 의견의 반영도 제고 | 23.7(186) |
| 5) 입법예고 전담부서의 신설 | 4.7(37) |
| 6) 기타 | 0.6(5) |

19.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중 의원
입법이 전체의 입법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입법의 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부문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국회사무처내 입법지원부서 확충과 예
산증액 | 20.7(164) |
| 2) 입법지원을 위한 의원보좌관 확충 | 8.3(66) |
| 3) 정당의 입법활동의 충실회 | 22.0(175) |
| 4)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 | 47.7(379) |
| 5) 기타 | 1.3(10) |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

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그렇다 | 7.1(57) |
| 2) 대체로 그렇다 | 65.1(521)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26.4(211)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1.4(11) |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
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문제
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
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가) 현행(1996년) 사법시험선발인원은 500
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
느 정도의 법조인선발인원 숫자가 적당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300여명 | 20.4(162) |
| 2) 500여명 | 24.7(196) |
| 3) 700여명 | 9.2(73) |
| 4) 1000여명 | 36.1(287) |
| 5) 기타 | 9.7(77) |

나) 이른바 “로-스쿨” 도입논쟁으로 인하여
현행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 | |
|-----------------------------------|-----------|
| 1) 현행 방식유지(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 58.3(463) |
| 2) “로-스쿨” 방식도입(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 39.5(314) |
| 3) 기타 | 2.1(17) |

2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0.9(167) |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65.5(523) |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1.4(91) |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1(17) |

2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부 록

-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바람직하다 19.5(156)
 - 2) 바람직하지 않다 79.5(635)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공 정 하다	2) 대체로 공정하다	3) 별로 공정 하지 않다	4) 전혀 공 정하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1.0(8)	58.0(461)	38.9(309)	2.1(17)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0.5(4)	62.3(496)	35.3(281)	1.9(15)
다) 과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0.1(1)	33.6(267)	58.4(464)	7.8(62)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4.3(34)	54.8(434)	35.6(282)	5.3(42)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4.4(114)	76.7(607)	8.7(69)	0.1(1)

현행법령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25. 다음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시오.)

- 1) 선거 및 정치관련부문 37.4(554)
- 2) 복지관련부문 9.4(139)
- 3) 농어촌관련부문 3.3(49)
- 4) 교육관련부문 6.1(91)
- 5) 금융·조세관련부문 12.0(177)
- 6) 중소기업관련부문 2.3(34)
- 7) 노사관련부문 6.8(101)
- 8) 환경관련부문 13.1(194)
- 9) 건설·교통관련부문 9.6(142)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십시오.)

- 1) 법정선거비용 33.4(505)
- 2) 소·중·대선거구, 전국구등 선거제도 8.2(124)
- 3) 자원봉사자 6.9(105)
- 4)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4.5(68)
- 5) 후보자공천 13.0(197)
- 6) 후보자재산공개 3.8(58)
- 7) 사전선거운동 10.6(161)
- 8)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11.8(178)
- 9) 무소속입후보자에 대한 불평등 7.8(118)

27.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9(47)
-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2.9(23)
-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66.5(532)
- 4)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24.8(198)

28.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22.6(181)
- 2)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67.5(540)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3)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9.9(79)
29.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형태 부문(의원내각제 또는 4년중 임 대통령제)	34.8(272)
2) 통일정책 부문(영토조항 등)	26.5(207)
3) 헌법재판소 위상의 재정립	12.9(101)
4) 기본권 부문	22.5(176)
5) 기타	3.3(26)
30. 선생님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 제발전방향이 다음중 어느 분야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민주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법제기능	30.7(243)
2)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일법제 마련	17.7(140)
3)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법제정비	16.9(134)
4) 첨단과학 및 정보화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11.4(90)
5)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법제 정비	23.1(183)
6) 기타	0.3(2)
	1) 공평하다 13.0(156)
	2) 민주적이다 12.8(153)
	3) 엄격하다 19.1(229)
	4) 편파적이다 24.9(298)
	5) 권위적이다 30.3(363)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통치를 위하여	8.2(98)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70.9(849)
3) 사회개혁을 위하여	1.2(14)
4) 분쟁해결을 위하여	2.2(26)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4.2(50)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3.4(161)
3. 만약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1.3(16)
2) 마찬가지일 것이다	3.4(41)
3) 불편할 것이다	21.7(260)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73.6(882)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단위 : %(명)
1) 바람직하다	21.0(251)
2) 합리적이다	30.4(364)
3) 물인정하다	24.5(293)
4) 불쾌하다	24.2(290)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9.7(116)
2) 대체로 동의한다	20.4(245)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0.8(369)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9.1(469)

1994년 조사

법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부 록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24.3(291)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1.5(18)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32.3(387)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40.8(489)
- 5) 기타 1.3(15)

7.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무조건 들어 준다 0.8(10)
- 2) 가능한 한 들어 준다 31.2(374)
-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52.1(625)
- 4) 무조건 거절한다 15.8(190)

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61.8(740)
- 2) 그렇지 않다 38.2(457)

나)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정치참여 8.8(65)
- 2) 재산상속 5.6(41)
- 3) 취업 및 승진 69.3(511)
- 4) 가정에서의 역할 14.0(103)

5) 기타 2.3(17)

9.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2.3(27)
- 2) 치료비를 받는다 16.6(199)
-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81.1(971)

법생활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1.1(253)
- 2) 그렇지 않다 78.9(946)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2.5(305)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21.3(200)
-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9(234)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1.5(108)
- 5) 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9.8(92)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정치인 42.6(800)

2) 공무원	14.2(267)
3) 법조인	9.0(184)
4) 교육자	4.8(86)
5) 기업인	20.0(375)
6) 근로자	1.0(18)
7) 종교인	4.5(84)
8) 대학생	2.2(42)
9) 농어민	1.1(21)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치분야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1.3(15)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19.2(229)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67.5(805)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12.0(143) |

나) 행정분야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4.1(4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49.0(583)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3.7(519)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2(38) |

다) 경제계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1.7(20)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3.7(398)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7.5(680)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7.1(84) |

라) 노사관계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4.0(47)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43.3(513)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6.5(550)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6.3(74) |

마) 교육계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3.3(3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8.7(460)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1.1(608)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7.0(83) |

바) 교통질서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3(28)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0.3(361)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53.9(642)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3.5(161)

사) 행락질서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0.7(8)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15.9(190)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1.8(618)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1.6(377) |

12. 다음은 동창회·계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 | |
|-----------|-----------|
| 1) 그렇다 | 60.5(723) |
| 2) 그렇지 않다 | 39.5(473) |

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 | |
|------------|-----------|
| 1) 친한 사이라서 | 16.2(76) |
| 2) 별칙이 약해서 | 6.8(32) |
| 3) 이익이 없어서 | 12.0(56) |
| 4) 생활이 바빠서 | 59.0(276) |
| 5) 기타 | 6.0(28) |

13.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 | |
|--------------------------------|-----------|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63.5(762) |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16.9(203) |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 19.6(235) |

14.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

부 록

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신지요?

- | | |
|---------------|-----------|
| 1) 전혀 불편하지 않다 | 46.4(556) |
| 2) 별로 불편하지 않다 | 32.2(386) |
| 3) 약간 불편하다 | 18.5(222) |
| 4) 매우 불편하다 | 2.9(35) |

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당연히 신고한다 | 65.2(782) |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17.1(205) |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3.8(46) |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2.5(30) |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 11.4(137) |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한 가지만 고르시오.)

가)

- | | |
|------------------|-----------|
| 1) 부정부패 | 61.7(740) |
| 2) 탈세 | 6.2(74) |
| 3) 부동산투기사범 | 11.3(136) |
| 4) 환경사범 | 13.2(158) |
| 5) 경제사범(매점·매석 등) | 7.2(86) |
| 6) 기타 | 0.4(5) |

나)

- | | |
|-----------|-----------|
| 1) 성폭행 | 36.0(431) |
| 2) 조직폭력배 | 26.1(313) |
| 3) 마약사범 | 8.3(99) |
| 4) 강·절도사범 | 25.0(300) |
| 5) 음주운전 | 4.2(50) |
| 6) 기타 | 0.4(5) |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신고정신

	30.0(360)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시민교육	24.2(290)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역할	7.1(85)
6) 기타	0.6(7)

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 | |
|-----------------|-----------|
| 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 70.9(850) |
|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 9.1(109) |
|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 9.8(118) |
| 4) 학교에서 배워서 | 3.4(41) |
| 5) 사건을 겪고 나서 | 4.9(59) |
| 6) 정부홍보물을 통하여 | 1.8(22) |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 | |
|--------------|-----------|
| 1) 자세히 본다 | 22.2(266) |
| 2) 대충 본다 | 55.6(667) |
| 3) 거의 보지 않는다 | 16.0(192) |
| 4) 전혀 보지 않는다 | 6.3(75) |

19.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 | | |
|--------------|-----------|
| 1) 자주 있었다 | 2.8(34) |
| 2) 한 두 번 있었다 | 33.0(396) |
| 3) 전혀 없었다 | 64.1(769) |

20. 다음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되고 있다 | 1.8(22) |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29.4(352) |

3)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59.6(713)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9(598)		
4)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9.2(110)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9.8(117)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15.7(187)	24.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25.4(303)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16.4(197)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7(68)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48.9(587)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 정립	52.1(622)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33.8(406)		
5) 기타	1.1(13)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8(10)		
2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33.6(403)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대충 본다	44.8(537)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3(75)		
3) 안본다	18.1(217)	2) 치료비만 받는다	26.6(318)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3.6(43)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3(517)		
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0.9(611)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3.8(285)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14.6(175)	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7.8(93)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84.4(1013)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6.3(196)	2) 검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4.9(59)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10.4(125)	3) 변호사를 찾아간다	3.4(41)		
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8.1(217)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7.3(87)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2.3(267)	27. 귀하는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공무원	8.6(103)	1) 고위공무원			
2) 변호사	26.3(314)	2) 판·검사	25.4(303)		
3) 판·검사	22.3(267)	4) 담당행정공무원	22.3(267)		
5) 경찰관	10.0(120)	5) 정치인	4.7(56)		
6) 정치인					

7) 기타 2.7(32)

국회·행정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8.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그렇다 | 11.7(140) |
| 2) 대체로 그렇다 | 26.1(313)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9.8(597)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12.4(148) |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1) 그렇다 | 80.3(963) |
| 2) 그렇지 않다 | 8.0(96) |
| 3) 읽어본 적이 없다 | 11.7(140) |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74.6(895) |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15.1(181) |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1.8(21) |
|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7.0(84) |
| 5) 기타 | 1.5(18) |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2.8(33)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40.5(483)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1.7(616)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5.0(60)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3.4(40)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52.4(624)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1.7(497)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5(30) |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5.4(64)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45.7(544)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4.6(531)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3(51) |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8.3(9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54.2(645)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4.3(408)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1(37) |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11.7(13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59.1(703)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6.6(317)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6(31) |

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36.4(437) |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56.9(682) |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9(59) |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8(21) |

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바람직하다 | 76.6(918) |
| 2) 바람직하지 않다 | 23.4(280) |

34.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32.5(389)
- 2) 소송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 21.5(258)
- 3)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35.6(427)
- 4)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9.3(112)
- 5) 기타 1.0(12)

현행법령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35.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및 정치질서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개혁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정신 50.0(599)
- 2)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13.1(157)
- 3)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 36.2(434)
- 4) 기타 0.8(9)

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분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2(362)
-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3.1(157)
-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43.7(524)
- 4) 동성동분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13.0(156)

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3.8(45)
- 2) 혜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 만하다 35.2(422)
- 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42.2(506)
- 4) 법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18.9(227)

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7(32)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7.4(686)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37.1(444)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2.8(34)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의 3)번 또는 4)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사용자 24.3(116)
- 2) 근로자 2.5(12)
- 3) 정부 16.1(77)
-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7.1(273)

3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69.8(837)
-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24.4(293)
-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4.8(57)
- 4) 기타 1.1(13)

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
|------------------|-----------|
| 1) 시집간 딸 | 0.2(2) |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66.1(793) |
| 3) 똑 같다 | 29.1(349) |
| 4) 잘 모르겠다 | 4.7(56) |

3) 불편할 것이다 89.3(1785)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 | |
|----------|-----------|
| 1) 바람직하다 | 16.8(336) |
| 2) 합리적이다 | 32.3(645) |
| 3) 물인정하다 | 23.9(478) |
| 4) 불쾌하다 | 26.9(538) |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단위 : %

- | | |
|------------------|-----------|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9.4(187) |
| 2) 대체로 동의한다 | 22.5(450) |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26.0(520) |
| 4)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 42.2(843) |

귀하의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 | |
|----------|-----------|
| 1) 공평하다 | 13.4(267) |
| 2) 민주적이다 | 11.1(221) |
| 3) 엄격하다 | 18.9(378) |
| 4) 편파적이다 | 24.7(494) |
| 5) 권위적이다 | 32.0(640) |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 8.2(98) |
| 2)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70.9(849) |
| 3)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 1.2(14) |
| 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 2.2(26) |
|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 4.2(50) |
| 6)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 13.4(161) |

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 | |
|----------------------------|-----------|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24.5(490) |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1.6(32) |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30.6(612) |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 진다 | 42.2(844) |
| 5) 기타 | 1.0(20) |

3. 만약 이 세상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 3.3(66) |
| 2) 마찬가지일 것이다 | 7.5(149) |

7.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무조건 들어 준다	1.5(30)
2) 가능한 한 들어 준다	33.9(676)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49.9(997)
4) 무조건 거절한다	14.7(294)

8.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참여	11.0(219)
2) 재산상속	10.2(202)
3) 취업 및 승진	60.3(1198)
4) 가정에서의 역할	15.7(311)
5) 요즈음은 대체로 평등하다	1.4(27)
6) 기타	1.5(30)

9. 농촌에서의 수박이나 무우서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엄연히 도둑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다	3.8(76)
2) 돈으로 변상받는 게 좋다	11.8(236)
3) 큰 피해가 아닌 한 용서하는 게 옳다	84.4(1686)

법생활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의견을踊跃 보고자 합니다.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7.6(352)
2) 그렇지 않다	82.4(1645)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1) 법이 불공평하므로	19.9(326)
2)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2.6(206)
3)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3.2(544)
4)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1(395)
5) 법이 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10.4(170)

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인	61.8(1043)
2) 공무원	11.0(186)
3) 기업가	15.6(263)
4) 지식인	2.4(41)
5) 종교인	1.1(19)
6) 근로자	1.2(21)
7) 대학생	2.8(47)
8) 농어민	4.0(67)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치분야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4(27)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6.0(316)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8.6(1160)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24.1(477)

나) 행정분야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7(74)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2.7(843)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5.6(901)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8.0(158)

다) 경제계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40)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6.0(513)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6.8(1119)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5.2(299)

부 록

라) 노사관계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39)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8.7(565)
-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5.0(1081)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4.3(282)

마) 교육계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8.2(163)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1.7(1023)
-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3.4(661)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6.6(130)

바) 교통질서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0(59)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2.9(652)
-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7.6(942)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6.6(328)

사) 행락질서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7(34)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8.6(368)
-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6.9(928)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2.8(649)

12. 다음은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52.9(1053)
- 2) 그렇지 않다 47.1(939)

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1) 친한 사이라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0.2(378)

2) 별칙이 약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16.5(155)

3) 이익이 없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9.3(275)

4) 생활이 바빠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6.8(64)

5) 의식이 부족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0(28)

6) 기타 4.3(40)

13. 귀하는 길거리에 침을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54.9(1098)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11.4(227)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33.7(674)

14. 집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고 더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그럴 수도 있다 15.4(307)
- 2)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56.1(1121)
- 3) 탈세(양도소득세의 포탈)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28.6(571)

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언제나 신고한다 48.6(971)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24.0(480)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5.1(101)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3.0(59)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19.4(388)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각 한 가지만 고르시오.)

가)

- | | |
|------------|------------|
| 1) 부정부패 | 56.0(1116) |
| 2) 탈세 | 3.4(68) |
| 3) 부동산투기사범 | 24.1(481) |
| 4) 공해사범 | 16.0(318) |
| 5) 기타 | 0.5(10) |

나)

- | | |
|----------|-----------|
| 1) 성폭행 | 18.9(377) |
| 2) 가정파괴범 | 50.0(997) |
| 3) 조직폭력배 | 21.3(425) |
| 4) 마약사범 | 8.8(176) |
| 5) 기타 | 0.9(18) |

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 | |
|-----------------|------------|
| 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 74.9(1497) |
|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 9.2(184) |
| 3) 책을 보고서 | 6.2(124) |
| 4) 학교에서 배워서 | 4.1(81) |
| 5) 사건을 겪고 나서 | 5.6(112) |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 | |
|--------------|------------|
| 1) 자세히 본다 | 21.2(423) |
| 2) 대충 본다 | 59.6(1192) |
| 3) 거의 보지 않는다 | 14.6(291) |
| 4) 전혀 보지 않는다 | 4.7(94) |

19. 귀하는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이나 소비자보호단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 | | |
|-------------|------------|
| 1) 자주 있었다 | 2.9(57) |
| 2) 가끔 있었다 | 20.9(417) |
| 3) 한 번은 있었다 | 18.8(376) |
| 4) 전혀 없었다 | 57.5(1148) |

20. 다음은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 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1) 있다 | 28.9(578) |
| 2) 없다 | 71.1(1422) |

나) 만약 가 본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가 본 적이 있으신 분만 응답하시오.)

- | | |
|----------------|-----------|
| 1) 행정소송 | 11.1(64) |
| 2) 형사문제 | 25.9(149) |
| 3) 즉심 | 11.5(66) |
| 4) 증인 | 15.1(87) |
| 5) 재산문제 | 17.4(100) |
| 6) 보증문제 | 9.6(55) |
| 7) 상속문제 | 1.2(7) |
| 8)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 | 4.9(28) |
| 9) 기타 | 3.3(19) |

21. 은행에 저축할 때 통장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 | |
|--------------------|-----------|
| 1) 자세히 본다 | 27.6(551) |
| 2) 대충 본다 | 46.9(937) |
| 3) 안본다 | 21.1(422) |
|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 4.4(87) |

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56.3(1125) |
|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 13.1(262) |
|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8.3(166) |
|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 14.0(280) |
|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 8.3(166) |

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 록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7.7(353)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1.3(425)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6(989)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11.4(227)

24. 불량품(TV,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0.6(41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48.8(975)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9.7(593)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1.0(19)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8(136)
2) 치료비만 받는다	25.2(502)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2(861)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4.8(494)

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겠다	85.9(1718)
2)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5.3(105)
3) 변호사를 찾아간다	2.8(56)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6.0(120)

27. 귀하는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법과 관련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층 인사	27.3(542)
-----------	-----------

2) 변호사	33.2(658)
3) 판·검사	21.3(423)
4) 면·동이나 구청직원	5.0(99)
5) 경찰관	9.1(181)
6) 도움되지 않는다	2.0(40)
7) 기타	2.0(39)

국회·행정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8.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5.2(303)
2) 조금은 그렇다	30.8(614)
3) 별로 그렇지 않다	40.6(810)
4) 전혀 그렇지 않다	13.5(269)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79.5(1587)
2) 그렇지 않다	7.8(155)
3) 읽어본 적이 없다	12.7(253)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66.3(1323)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18.5(369)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2.8(55)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11.3(226)
5) 기타	1.1(22)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 | | |
|----------------|-----------|
| 1) 공정하다 | 5.8(115) |
| 2) 대체로 공정하다 | 42.7(848) |
|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 39.4(782) |
| 4) 공정하지 않다 | 12.1(240) |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 | | |
|----------------|-----------|
| 1) 공정하다 | 6.8(135) |
| 2) 대체로 공정하다 | 50.0(991) |
|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 35.1(696) |
| 4) 공정하지 않다 | 8.0(159) |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 | | |
|----------------|-----------|
| 1) 공정하다 | 4.6(92) |
| 2) 대체로 공정하다 | 40.8(809) |
|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 41.7(827) |
| 4) 공정하지 않다 | 12.9(255) |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 | | |
|----------------|-----------|
| 1) 공정하다 | 11.5(227) |
| 2) 대체로 공정하다 | 50.4(996) |
|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 30.1(595) |
| 4) 공정하지 않다 | 8.1(160) |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 | | |
|----------------|------------|
| 1) 공정하다 | 19.7(391) |
| 2) 대체로 공정하다 | 55.0(1090) |
|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 19.6(389) |
| 4) 공정하지 않다 | 5.6(111) |

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40.3(805) |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53.9(1076) |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7(93) |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24) |

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바람직하다 | 78.8(1575) |
| 2) 바람직하지 않다 | 21.2(423) |

34. 귀하는 금전관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 37.0(739) |
| 2)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다 | 13.8(275) |
| 3) 나의 권리 위해서는 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29.6(590) |
| 4) 재판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19.1(382) |
| 5) 기타 | 0.5(9) |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35.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정치에 관한 법 | 25.2(500) |
| 2) 행정에 관한 법 | 6.5(130) |
|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 7.6(150) |
| 4) 경제에 관한 법 | 8.8(175) |
| 5) 조세에 관한 법 | 16.3(324) |
|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 9.6(190) |
| 7) 농어촌에 관한 법 | 17.9(355) |
|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 6.8(135) |
| 9) 기타 | 1.4(27) |

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9.0(580)
- 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2.5(250)
-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52.3(1046)
- 4) 판단이 서지 않는다 6.2(123)

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 만하다 31.4(628)
- 2)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61.5(1230)
- 3) 판단이 서지 않는다 7.1(141)

38. 만약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영진 27.1(542)
- 2) 근로자 2.5(50)
- 3) 정부 11.8(236)
- 4) 재야 및 운동권학생 4.8(95)
- 5)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2.0(1039)
- 6) 요즈음은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8(36)

39. 중동의 걸프만전쟁 당시 실시되었던 차량 10부제 운행이 최근에 해제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 1) 차량소지자에 대한 재산권침해이므로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9.0(180)
- 2) 비상사태(걸프만 전쟁)가 끝났으므로 해제조치는 당연하다 11.9(238)
- 3) 운행제한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계속 시행할만 했다 16.3(325)
- 4)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상 계속 시행할만

- | | |
|---------------------------|------------|
| 한 조치였다 | 54.7(1092) |
| 5부제운행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 8.1(162) |

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
|------------------|------------|
| 1) 시집간 딸 | 0.6(11) |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74.9(1497) |
| 3) 똑 같다 | 19.9(398) |
| 4) 잘 모르겠다 | 4.7(93) |

1996년 조사

※ 단위 : %(명)

항목 특성	구 분									합 계	
	분 포										
연령	20대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50대 이상		
	15.8(126)		24.9(198)		23.9(191)		24.6(196)		10.8(86)		
직업	교수등	선관위	당정 책임원	국회 공무원	행정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 연수원생	박사 과정	
	18.7 (150)	6.3 (50)	2.5 (20)	10.0 (80)	12.5 (100)	6.3 (50)	6.3 (50)	12.5 (100)	12.5 (100)	12.5 (100)	
종사 기간	5년 미만		5~9년		10~9년		20년이상		100.0 (793)		
	40.0(317)		23.4(186)		26.9(213)		9.7(77)				
개인 소득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 만원	500만원 이상			100.0 (789)		
	22.3 (176)	23.5(185)	31.8(251)	11.4(90)	4.7(37)	6.3(50)					
계층 의식	상		중		하				100.0 (797)		
	15.8(126)		73.0(582)		11.2(89)						
성향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100.0 (796)		
	15.7(125)		57.2(455)		27.1(216)						
지역 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읍·면 이하				100.0 (794)		
	55.0(437)		23.3(185)		21.7(172)						

IV. 교차집계표

문 항 1. 선생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단위: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공평하다	② 민주적이다	③ 엄격하다	④ 편파적이다	⑤ 권위적이다
연령	① 20대	126	19.0	4.0	31.7	7.9	37.3
	② 30대 초반	197	24.0	2.0	23.9	10.2	39.6
	③ 30대 후반	186	26.3	5.9	26.3	9.7	31.7
	④ 40대	194	25.8	3.1	28.4	11.3	31.4
	⑤ 50대 이상	85	31.8	9.4	23.5	5.9	29.4
직업	◎ 교수등	148	33.1	5.4	18.9	10.8	31.8
	① 선관위	48	10.4	2.1	37.5	16.7	33.3
	② 당정체위원	19	15.8		26.3	21.1	36.8
	③ 국회공무원	79	13.9	1.3	25.3	12.7	46.8
	④ 행정공무원	99	22.2	3.0	35.4	7.1	32.3
	⑤ 판사	50	40.0	10.0	36.0		14.0
	⑥ 검사	50	38.0	4.0	36.0	2.0	20.0
	⑦ 변호사	98	31.6	7.1	23.5	7.1	30.6
	⑧ 사법연수원생	100	26.0	4.0	29.0	3.0	38.0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14.0	3.0	17.0	19.0	47.0
	① 5년미만	315	22.9	3.8	27.9	9.5	35.9
	② 5~9년	184	29.3	2.7	20.1	9.2	38.6
	③ 10~19년	178	25.3	5.1	29.8	9.6	30.3
개인소득	④ 20년이상	107	25.2	6.5	29.0	10.3	29.0
	① 100만원미만	176	22.2	2.8	25.6	9.1	40.3
	② 100~199만원	183	21.9	4.9	27.3	10.4	35.5
	③ 200~299만원	246	26.0	2.8	29.7	9.3	32.1
	④ 300~499만원	126	31.0	7.1	21.4	8.7	31.7
계층의식	⑤ 500만원이상	50	30.0	8.0	30.0	6.0	26.0
	① 상	125	28.8	4.0	28.0	6.4	32.8
	② 중	575	25.4	5.0	25.9	8.9	34.8
성향	③ 하	88	18.2		29.5	18.2	34.1
	① 진보적	124	16.9	4.8	16.9	17.7	43.5
	② 중도적	451	28.4	4.0	28.4	8.4	30.8
지역규모	③ 보수적	214	23.4	4.7	28.5	7.0	36.4
	① 대도시	431	24.8	4.9	27.4	9.0	33.9
	② 중소도시	182	24.2	3.8	24.7	8.8	38.5
	③ 읍·면 이하	172	27.3	3.5	27.3	10.5	31.4

문 항 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합리적이다	③ 몰인정하다	④ 불쾌하다
연령	① 20대	126	7.1	34.9	38.1	19.8
	② 30대 초반	197	9.6	37.1	31.0	22.3
	③ 30대 후반	191	10.5	39.3	31.9	18.3
	④ 40대	192	10.4	33.3	34.9	21.4
	⑤ 50대 이상	86	18.6	37.2	22.1	22.1
직업	◎ 교수등	149	17.4	45.0	17.4	20.1
	① 선관위	49	10.2	26.5	38.8	24.5
	② 당정책위원	20	15.0	15.0	50.0	20.0
	③ 국회공무원	80	7.5	27.5	41.3	23.8
	④ 행정공무원	99	9.1	29.3	31.3	30.3
	⑤ 판사	50	10.0	46.0	24.0	20.0
	⑥ 검사	49	4.1	38.8	38.8	18.4
	⑦ 변호사	99	10.1	45.5	31.3	13.1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0	31.0	42.0	17.0
	⑨ 박사과정	100	9.0	36.0	34.0	21.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6	10.4	35.1	35.8	18.7
	② 5~9년	186	12.4	40.9	28.0	18.8
	③ 10~19년	178	7.3	37.1	30.9	24.7
	④ 20년이상	108	13.9	28.7	33.3	24.1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9.7	33.0	39.8	17.6
	② 100~199만원	183	8.7	35.0	26.8	29.5
	③ 200~299만원	249	10.4	34.1	33.3	22.1
	④ 300~499만원	126	12.7	44.4	30.2	12.7
	⑤ 500만원이상	50	14.0	42.0	30.0	14.0
계층의식	① 상	126	8.7	42.1	31.7	17.5
	② 중	577	11.3	36.6	31.5	20.6
	③ 하	89	9.0	24.7	39.3	27.0
성향	① 진보적	123	13.0	32.5	28.5	26.0
	② 중도적	453	10.6	39.1	30.9	19.4
	③ 보수적	215	9.8	31.6	38.1	20.5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2	10.0	39.8	29.2	21.1
	② 중소도시	185	10.3	31.9	38.9	18.9
	③ 읍·면 이하	172	12.2	31.4	33.7	22.7

문 항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번 수		빈도수 (명)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연령	① 20대	126	4.0	15.1	42.9	38.1
	② 30대 초반	198	1.0	20.2	31.3	47.5
	③ 30대 후반	191	2.1	18.8	33.0	46.1
	④ 40대	195	1.5	16.9	39.5	42.1
	⑤ 50대 이상	86	2.3	16.3	32.6	48.8
직업	◎ 교수등	149	0.7	15.4	30.9	53.0
	① 선관위	50	2.0	22.0	40.0	36.0
	② 당정책위원	20	20.0	15.0	25.0	40.0
	③ 국회공무원	80	2.5	22.5	41.3	33.8
	④ 행정공무원	100	1.0	16.0	39.0	44.0
	⑤ 판사	50		4.0	34.0	62.0
	⑥ 검사	50		8.0	44.0	48.0
	⑦ 변호사	100		21.0	32.0	47.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15.0	43.0	41.0
	⑨ 박사과정	100	6.0	31.0	27.0	36.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7	3.2	20.5	35.0	41.3
	② 5~9년	186	1.6	17.7	35.5	45.2
	③ 10~19년	181	1.7	13.3	38.1	47.0
	④ 20년이상	108		18.5	33.3	48.1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2.3	20.5	36.9	40.3
	② 100~199만원	185	2.2	20.0	37.3	40.5
	③ 200~299만원	251	1.6	14.7	35.5	48.2
	④ 300~499만원	126	3.2	16.7	31.0	49.2
	⑤ 500만원이상	50		16.0	34.0	50.0
계층 의식	① 상	126	0.8	11.9	42.1	45.2
	② 중	581	2.1	17.7	35.1	45.1
	③ 하	89	3.4	28.1	30.3	38.2
성향	① 진보적	124	2.4	27.4	32.3	37.9
	② 중도적	455	2.2	14.9	37.8	45.1
	③ 보수적	216	1.4	19.0	33.3	46.3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6	2.1	15.8	37.2	45.0
	② 중소도시	185	1.6	20.0	32.4	45.9
	③ 읍·면 이하	172	2.3	21.5	36.0	40.1

문 항 4. 선생님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게 바람직하다	② 최고제한속도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연령	① 20대	124	31.5	68.5
	② 30대 초반	198	33.3	66.7
	③ 30대 후반	190	24.7	75.3
	④ 40대	195	30.8	69.2
	⑤ 50대 이상	86	52.3	47.7
직업	◎ 교수등	150	34.7	65.3
	① 선관위	50	34.0	66.0
	② 당정책위원	19	36.8	63.2
	③ 국회공무원	80	20.0	80.0
	④ 행정공무원	99	46.5	53.5
	⑤ 판사	48	43.8	56.3
	⑥ 검사	50	22.0	78.0
	⑦ 변호사	100	20.0	80.0
	⑧ 사법연수원생	100	37.0	63.0
	⑨ 박사과정	100	32.0	68.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5	32.4	67.6
	② 5~9년	185	24.3	75.7
	③ 10~19년	181	32.6	67.4
	④ 20년이상	108	46.3	53.7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35.8	64.2
	② 100~199만원	183	25.1	74.9
	③ 200~299만원	249	39.0	61.0
	④ 300~499만원	127	32.3	67.7
	⑤ 500만원이상	50	20.0	80.0
계층의식	① 상	125	23.2	76.8
	② 중	579	33.7	66.3
	③ 하	89	38.2	61.8
성향	① 진보적	125	31.2	68.8
	② 중도적	451	33.3	66.7
	③ 보수적	216	31.9	68.1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4	33.6	66.4
	② 중소도시	184	33.7	66.3
	③ 읍·면 이하	172	28.5	71.5

문 항 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려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64.3	35.7	
	② 30대 초반	198	49.5	50.5	
	③ 30대 후반	189	49.2	50.8	
	④ 40대	195	42.1	57.9	
	⑤ 50대 이상	86	43.0	57.0	
직 업	◎ 교수등	150	59.3	40.7	
	① 선관위	50	36.0	64.0	
	② 당정책위원	20	45.0	55.0	
	③ 국회공무원	80	48.8	51.3	
	④ 행정공무원	99	35.4	64.6	
	⑤ 판사	50	36.0	64.0	
	⑥ 검사	48	37.5	62.5	
	⑦ 변호사	100	47.0	5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60.0	40.0	
	⑨ 박사과정	100	60.0	40.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6	58.5	41.5	
	② 5~9년	185	47.6	52.4	
	③ 10~19년	182	42.9	57.1	
	④ 20년이상	107	37.4	62.6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176	57.4	42.6	
	② 100~199만원	184	45.7	54.3	
	③ 200~299만원	250	42.8	57.2	
	④ 300~499만원	126	52.4	47.6	
	⑤ 500만원이상	50	60.0	40.0	
계 총 의 식	① 상	126	51.6	48.4	
	② 중	579	50.1	49.9	
	③ 하	89	41.6	58.4	
성 향	① 진보적	124	66.1	33.9	
	② 중도적	455	43.7	56.3	
	③ 보수적	214	50.9	49.1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5	53.6	46.4	
	② 중소도시	185	45.9	54.1	
	③ 읍·면 이하	171	42.1	57.9	

문 항 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 의 미비 또 는 결함	② 여성의 권리 의식 부족 또 는 법생활의 불철저	③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 기심 팽배	④ 남녀의 사 회·경제적 지위 차이	⑤ 기타
연령	① 20대	77	19.5	11.7	23.4	45.5	
	② 30대 초반	97	16.5	18.6	19.6	42.3	3.1
	③ 30대 후반	90	17.8	17.8	24.4	40.0	
	④ 40대	81	9.9	18.5	28.4	42.0	1.2
	⑤ 50대 이상	38	23.7	18.4	28.9	28.9	
직업	◎ 교수등	92	22.8	15.2	26.1	34.8	1.1
	① 선관위	18	11.1	11.1	27.8	50.0	
	② 당정책위원	9	22.2		55.6	22.2	
	③ 국회공무원	39	12.8	20.5	17.9	46.2	2.6
	④ 행정공무원	34	8.8	26.5	17.6	44.1	2.9
	⑤ 판사	18	16.7	5.6	11.1	66.7	
	⑥ 검사	18	11.1	33.3	33.3	22.2	
	⑦ 변호사	41	24.4	14.6	19.5	41.5	
	⑧ 사법연수원생	57	10.5	10.5	26.3	52.6	
	⑨ 박사과정	59	16.9	23.7	27.1	30.5	1.7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176	17.6	15.3	23.9	42.6	0.6
	② 5~9년	87	14.9	19.5	26.4	36.8	2.3
	③ 10~19년	78	15.4	16.7	23.1	43.6	1.3
	④ 20년이상	42	19.0	21.4	21.4	38.1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97	16.5	16.5	22.7	44.3	
	② 100~199만원	84	11.9	15.5	26.2	42.9	3.6
	③ 200~299만원	107	18.7	19.6	24.3	37.4	
	④ 300~499만원	66	18.2	18.2	27.3	34.8	1.5
	⑤ 500만원이상	27	22.2	11.1	14.8	51.9	
계층 의식	① 상	62	12.9	17.7	30.6	37.1	1.6
	② 중	283	17.7	18.0	23.7	39.6	1.1
	③ 하	39	15.4	10.3	17.9	56.4	
성향	① 진보적	79	20.3	17.7	13.9	44.3	3.8
	② 중도적	196	18.4	14.8	27.0	39.8	
	③ 보수적	107	11.2	20.6	26.2	41.1	0.9
지역 규모	① 대도시	227	15.9	18.5	23.3	41.0	1.3
	② 중소도시	84	14.3	16.7	25.0	42.9	1.2
	③ 읍·면·이하	71	21.1	14.1	26.8	38.0	

문 항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12.7	87.3
	② 30대 초반	197	5.6	94.4
	③ 30대 후반	191	8.9	91.1
	④ 40대	195	7.7	92.3
	⑤ 50대 이상	84	8.3	91.7
직업	◎ 교수등	149	6.0	94.0
	① 선관위	50	8.0	92.0
	② 당정책위원	19	15.8	84.2
	③ 국회공무원	80	5.0	95.0
	④ 행정공무원	99	9.1	90.9
	⑤ 판사	50	10.0	90.0
	⑥ 검사	50	8.0	92.0
	⑦ 변호사	99	12.1	87.9
	⑧ 사법연수원생	100	9.0	91.0
종사 기간	⑨ 박사과정	100	7.0	93.0
	① 5년미만	316	7.9	92.1
	② 5~9년	186	7.0	93.0
	③ 10~19년	181	9.9	90.1
개인 소득	④ 20년이상	106	8.5	91.5
	① 100만원미만	176	9.7	90.3
	② 100~199만원	185	8.1	91.9
	③ 200~299만원	251	5.2	94.8
	④ 300~499만원	123	10.6	89.4
계층 의식	⑤ 500만원이상	50	14.0	86.0
	① 상	126	9.5	90.5
	② 중	578	8.5	91.5
성향	③ 하	89	5.6	94.4
	① 진보적	124	5.6	94.4
	② 중도적	454	9.3	90.7
지역 규모	③ 보수적	215	7.9	92.1
	① 대도시	436	8.7	91.3
	② 중소도시	184	6.5	93.5
	③ 읍·면 이하	170	9.4	90.6

문 항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법의 절차 가 복잡하 고 자주 바 뀌니까	② 법이 현실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③ 법의 집행 이 엄격하 지 못하므 로	④ 법대로 살 면 손해를 보니까	⑤ 법 이외의 다른 방법 이 편리하 므로
연령	① 20대	108	3.7	32.4	39.8	11.1	13.0	
	② 30대 초반	181	1.7	37.0	33.7	12.7	14.9	
	③ 30대 후반	170	2.4	39.4	37.6	9.4	11.2	
	④ 40대	175	4.0	31.4	44.0	10.9	9.7	
	⑤ 50대 이상	76	3.9	32.9	47.4	7.9	7.9	
직업	◎ 교수등	137	1.5	35.8	39.4	10.9	12.4	
	① 선관위	46	4.3	28.3	50.0	8.7	8.7	
	② 당정책위원	16		50.0	43.8	6.3		
	③ 국회공무원	73	8.2	31.5	37.0	19.2	4.1	
	④ 행정공무원	87	5.7	33.3	46.0	9.2	5.7	
	⑤ 판사	44		25.0	43.2	13.6	18.2	
	⑥ 검사	45		33.3	37.8	6.7	22.2	
	⑦ 변호사	84	2.4	41.7	38.1	7.1	10.7	
	⑧ 사법연수원생	88		36.4	36.4	12.5	14.8	
	⑨ 박사과정	93	4.3	36.6	33.3	9.7	16.1	
종사기간	① 5년미만	281	3.2	35.9	34.9	12.8	13.2	
	② 5~9년	171	2.9	37.4	38.6	8.8	12.3	
	③ 10~19년	157	1.9	33.1	45.2	10.2	9.6	
	④ 20년이상	98	4.1	30.6	45.9	10.2	9.2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55	3.2	36.8	33.5	11.0	15.5	
	② 100~199만원	166	4.2	34.3	38.0	11.4	12.0	
	③ 200~299만원	231	3.5	31.2	44.2	10.0	11.3	
	④ 300~499만원	109		38.5	40.4	12.8	8.3	
	⑤ 500만원이상	43	2.3	44.2	37.2	7.0	9.3	
계층의식	① 상	111	2.7	27.9	40.5	18.9	9.9	
	② 중	520	2.9	36.3	40.6	8.7	11.5	
	③ 하	79	3.8	35.4	32.9	13.9	13.9	
성향	① 전보적	112	0.9	36.6	38.4	12.5	11.6	
	② 중도적	405	2.2	35.8	38.8	10.6	12.6	
	③ 보수적	194	5.7	32.0	42.3	10.3	9.8	
지역규모	① 대도시	391	3.1	35.0	39.9	8.2	13.8	
	② 중소도시	165	3.6	35.8	37.6	12.7	10.3	
	③ 읍·면·이하	151	2.0	32.5	42.4	15.9	7.3	

부 록

문 항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정 치 인	② 공 무 원	③ 법 조 인	④ 기 업 인	⑤ 근 로 자	⑥ 교 육 자	⑦ 대 학 생	⑧ 기 타
연령	① 20대	106	68.9	1.9	3.8	16.0	0.9	1.9	1.9	4.7	
	② 30대 초반	182	75.3	3.3	3.3	15.9	0.5	0.5	0.5	1.1	
	③ 30대 후반	168	70.8	1.8	7.1	13.7	1.8	0.6	0.6	3.6	
	④ 40대	174	73.0	2.9	3.4	14.9		1.7	0.6	3.4	
	⑤ 50대 이상	74	68.9	5.4	2.7	6.8	2.7	2.7	4.1	6.8	
직업	◎ 교수등	129	72.9	4.7	1.6	12.4	1.6	4.7	0.8	1.6	
	① 선관위	47	87.2	2.1	2.1	2.1			4.3	2.1	
	② 당정책위원	17	23.5	5.9	23.5	35.3			5.9	5.9	
	③ 국회공무원	73	47.9	4.1	8.2	31.5	1.4	1.4		5.5	
	④ 행정공무원	89	74.2	2.2	5.6	13.5			1.1	3.4	
	⑤ 판사	48	72.9		4.2	16.7				6.3	
	⑥ 검사	45	75.6	2.2	4.4	15.6				2.2	
	⑦ 변호사	82	74.4	2.4	2.4	13.4	1.2			6.1	
	⑧ 사법연수원생	85	80.0	2.4	1.2	10.6	2.4	1.2	1.2	1.2	
	⑨ 박사과정	92	76.1	2.2	5.4	8.7	1.1	2.2	1.1	3.3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276	71.0	2.2	5.1	15.9	1.4	1.1	1.1	2.2	
	② 5~9년	168	72.6	3.0	3.0	16.7	1.2			3.6	
	③ 10~19년	160	70.6	3.1	4.4	15.0		2.5	1.3	3.1	
	④ 20년이상	97	74.2	4.1	4.1	5.2	1.0	2.1	2.1	7.2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50	80.7	2.0	3.3	8.7	1.3	0.7	0.7	2.7	
	② 100~199만원	169	60.4	3.6	5.9	23.7	1.2	1.2	1.2	3.0	
	③ 200~299만원	230	72.2	2.6	3.5	15.7	0.9	1.3	1.3	2.6	
	④ 300~499만원	109	74.3	2.8	4.6	7.3	0.9	2.8	0.9	6.4	
	⑤ 500만원이상	39	82.1		5.1	7.7				5.1	
계총 의식	① 상	110	74.5	5.5	3.6	13.6			0.9		1.8
	② 중	517	70.0	2.5	4.6	15.5	1.2	1.4	1.2		3.7
	③ 하	77	80.5	1.3	2.6	7.8	1.3	1.3	1.3		3.9
성향	① 진보적	112	70.5	3.6	5.4	15.2	0.9				4.5
	② 중도적	397	69.5	2.3	4.8	17.1	0.5	1.5	1.0		3.3
	③ 보수적	195	77.4	3.6	2.6	7.7	2.1	2.1	1.5		3.1
지역 규모	① 대도시	387	73.4	3.1	3.9	15.0	1.0	0.8	0.8		2.1
	② 중소도시	164	70.7	2.4	4.9	16.5	0.6	1.2	1.2		2.4
	③ 읍·면 이하	150	69.3	2.7	4.7	10.0	1.3	2.7	1.3		8.0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치부분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0.8			56.3	42.9
	② 30대 초반	198		4.0		58.6	37.4
	③ 30대 후반	188		5.9		70.2	23.9
	④ 40대	196		4.6		62.8	32.7
	⑤ 50대 이상	84	2.4		2.4	72.6	22.6
직 업	◎ 교수등	149			4.0	61.7	34.2
	① 선관위	50	2.0			68.0	30.0
	② 당정책위원	19	5.3	21.1		63.2	10.5
	③ 국회공무원	79		8.9		70.9	20.3
	④ 행정공무원	100		4.0		65.0	31.0
	⑤ 판사	50		2.0		72.0	26.0
	⑥ 검사	49		8.2		55.1	36.7
	⑦ 변호사	99		3.0		66.7	30.3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57.0	42.0
	⑨ 박사과정	100	1.0			60.0	39.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5	0.6	2.2		61.6	35.6
	② 5~9년	185		4.9		66.5	28.6
	③ 10~19년	181		6.6		60.8	32.6
	④ 20년이상	107	0.9	1.9		69.2	28.0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176	0.6	1.1		59.1	39.2
	② 100~199만원	183	0.5	7.1		62.3	30.1
	③ 200~299만원	250	0.4	3.2		66.8	29.6
	④ 300~499만원	126		4.0		67.5	28.6
	⑤ 500만원이상	49		4.1		63.3	32.7
계 총 의 식	① 상	125		2.4		61.6	36.0
	② 중	578	0.3	4.3		65.4	29.9
	③ 하	89	1.1	2.2		53.9	42.7
성 향	① 진보적	124		2.4		60.5	37.1
	② 중도적	454	0.4	5.3		64.3	30.0
	③ 보수적	214	0.5	1.4		63.6	34.6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4	0.2	3.9		63.6	32.3
	② 중소도시	184		3.3		62.0	34.8
	③ 읍·면 이하	171	1.2	4.1		64.3	30.4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행정부분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2.4	62.7	33.3	1.6	
	② 30대 초반	198	1.5	64.6	32.8	1.0	
	③ 30대 후반	188	1.6	68.1	29.8	0.5	
	④ 40대	196	4.6	69.9	25.5		
	⑤ 50대 이상	84	3.6	78.6	16.7	1.2	
직업	◎ 교수등	149	1.3	55.7	42.3	0.7	
	① 관위	50	6.0	86.0	8.0		
	② 당정책위원	19	5.3	57.9	36.8		
	③ 국회공무원	79	5.1	75.9	19.0		
	④ 행정공무원	100	5.0	87.0	8.0		
	⑤ 판사	50	2.0	62.0	36.0		
	⑥ 검사	49	2.0	85.7	12.2		
	⑦ 변호사	99	2.0	70.7	26.3	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0	66.0	30.0	2.0	
	⑨ 박사과정	100		47.0	51.0	2.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5	2.2	63.2	33.3	1.3	
	② 5~9년	185	1.1	64.9	34.1		
	③ 10~19년	181	4.4	70.2	24.9	0.6	
	④ 20년이상	107	3.7	83.2	12.1	0.9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1	60.2	36.9	1.7	
	② 100~199만원	183	3.8	69.4	26.8		
	③ 200~299만원	250	2.4	73.6	23.6	0.4	
	④ 300~499만원	126	3.2	65.9	29.4	1.6	
	⑤ 500만원이상	49	4.1	71.4	24.5		
계층 의식	① 상	125	0.8	66.4	32.8		
	② 중	578	2.8	69.7	27.0	0.5	
	③ 하	89	4.5	58.4	33.7	3.4	
성향	① 진보적	124	4.8	59.7	33.9	1.6	
	② 중도적	454	2.2	68.7	28.9	0.2	
	③ 보수적	214	2.3	70.6	25.7	1.4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4	2.1	67.5	30.4		
	② 중소도시	184	2.7	62.5	33.2	1.6	
	③ 읍·면 이하	171	4.1	74.9	19.3	1.8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경제부문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0.5	15.9	75.4	8.7	
	② 30대 초반	197		25.4	69.5	5.1	
	③ 30대 후반	188		31.9	63.8	4.3	
	④ 40대	193		20.2	75.6	3.6	
	⑤ 50대 이상	84		40.5	57.1	2.4	
직업	◎ 교수등	149	1.0	16.1	78.5	5.4	
	① 관위	48		41.7	58.3		
	② 당정책위원	19		26.3	63.2	10.5	
	③ 국회공무원	79		24.1	70.9	5.1	
	④ 행정공무원	100		35.0	61.0	3.0	
	⑤ 판사	50		20.0	78.0	2.0	
	⑥ 검사	49		26.5	71.4	2.0	
	⑦ 변호사	97		38.1	56.7	5.2	
	⑧ 사법연수원생	100		21.0	70.0	9.0	
	⑨ 박사과정	100		20.0	75.0	5.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4	0.6	21.3	72.0	6.7	
	② 5~9년	185		26.5	69.7	3.8	
	③ 10~19년	179		29.6	66.5	3.4	
	④ 20년이상	106		31.1	65.1	3.8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0.6	21.0	72.7	6.3	
	② 100~199만원	181		29.8	63.5	6.1	
	③ 200~299만원	250		20.4	76.4	3.2	
	④ 300~499만원	126		31.0	65.1	4.0	
	⑤ 500만원이상	47		46.8	51.1	2.1	
계층의식	① 상	124	1.1	29.0	63.7	7.3	
	② 중	575		26.1	70.3	3.7	
	③ 하	89		20.2	69.7	9.0	
성향	① 진보적	123	0.2	17.9	73.2	8.9	
	② 중도적	452		26.5	69.2	4.0	
	③ 보수적	213		29.1	66.7	4.2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3	0.6	26.1	69.3	4.6	
	② 중소도시	183		23.0	69.9	7.1	
	③ 읍·면 이하	169		29.0	67.5	3.0	

부 록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노사부문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 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0.8	29.4	65.1	4.8
	② 30대 초반	197	0.5	33.0	61.9	4.6
	③ 30대 후반	187	0.5	31.0	65.8	2.7
	④ 40대	193		31.6	64.8	3.6
	⑤ 50대 이상	84		36.9	58.3	4.8
직 업	◎ 교수등	148		29.7	68.2	2.0
	① 선관위	49	2.0	36.7	59.2	2.0
	② 당정책위원	19		15.8	73.7	10.5
	③ 국회공무원	78		29.5	67.9	2.6
	④ 행정공무원	100		34.0	60.0	6.0
	⑤ 판 사	50		34.0	64.0	2.0
	⑥ 검 사	49		32.7	63.3	4.1
	⑦ 변호사	97	1.0	38.1	58.8	2.1
	⑧ 사법연수원생	100		30.0	66.0	4.0
	⑨ 박사과정	100	1.0	30.0	61.0	8.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3	1.0	30.7	63.9	4.5
	② 5~9년	185		29.7	68.1	2.2
	③ 10~19년	178		36.0	59.6	4.5
	④ 20년이상	107		32.7	62.6	4.7
개 인 소	① 100만원미만	176	1.1	29.0	64.2	5.7
	② 100~199만원	181		34.3	63.0	2.8
	③ 200~299만원	250		29.2	65.6	5.2
	④ 300~499만원	125		32.8	65.6	1.6
	⑤ 500만원이상	47	2.1	48.9	48.9	
계 총 의 식	① 상	123		30.9	62.6	6.5
	② 중	575	0.2	31.5	65.6	2.8
	③ 하	89	2.2	36.0	53.9	7.9
성 향	① 진보적	122	0.8	26.2	68.0	4.9
	② 중도적	452	0.2	33.4	63.7	2.7
	③ 보수적	213	0.5	31.9	61.5	6.1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1	0.5	32.7	63.1	3.7
	② 중소도시	184	0.5	28.8	65.2	5.4
	③ 읍·면·이하	169		33.7	63.3	3.0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교육부문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4.8	61.1	31.0	3.2
	② 30대 초반	195	1.0	67.2	30.3	1.5
	③ 30대 후반	187	3.7	63.1	30.5	2.7
	④ 40대	193	1.0	69.4	28.5	1.0
	⑤ 50대 이상	84	7.1	63.1	29.8	
직업	◎ 교수등	149	2.7	66.4	28.9	2.0
	① 선관위	49	6.1	71.4	22.4	
	② 당정책위원	19	5.3	57.9	36.8	
	③ 국회공무원	77	1.3	54.5	41.6	2.6
	④ 행정공무원	99		70.7	28.3	1.0
	⑤ 판사	49	6.1	61.2	32.7	
	⑥ 검사	49	6.1	67.3	24.5	2.0
	⑦ 변호사	97	3.1	69.1	25.8	2.1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65.0	32.0	2.0
	⑨ 박사과정	100	4.0	62.0	31.0	3.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2	2.2	64.7	30.4	2.6
	② 5~9년	184	3.3	62.0	33.2	1.6
	③ 10~19년	179	2.2	69.3	26.8	1.7
	④ 20년이상	106	5.7	66.0	28.3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2.3	63.1	31.8	2.8
	② 100~199만원	180	1.7	61.1	35.6	1.7
	③ 200~299만원	249	3.2	66.7	28.9	1.2
	④ 300~499만원	124	4.8	66.1	27.4	1.6
	⑤ 500만원이상	48	4.2	79.2	16.7	
계층의식	① 상	123	4.1	63.4	30.1	2.4
	② 중	573	3.1	65.4	29.5	1.9
	③ 하	89		66.3	33.7	
성향	① 진보적	123	3.3	60.2	32.5	4.1
	② 중도적	451	2.9	65.0	30.6	1.6
	③ 보수적	211	2.8	68.7	27.5	0.9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1	2.8	65.4	29.7	2.1
	② 중소도시	183	1.1	63.9	32.8	2.2
	③ 읍·면 이하	168	5.4	66.7	27.4	0.6

부 록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 교통부문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1.6	19.0	65.9	13.5
	② 30대 초반	197	0.5	18.3	71.1	10.2
	③ 30대 후반	188	1.1	22.9	66.5	9.6
	④ 40대	194	0.5	19.6	68.6	11.3
	⑤ 50대 이상	84		16.7	70.2	13.1
직업	◎ 교수등	148		16.2	68.9	14.9
	① 선관위	49	2.0	24.5	61.2	12.2
	② 당정책위원	19	5.3	15.8	78.9	
	③ 국회공무원	79		12.7	73.4	13.9
	④ 행정공무원	100		23.0	71.0	6.0
	⑤ 판사	50		22.0	64.0	14.0
	⑥ 검사	49		24.5	67.3	8.2
	⑦ 변호사	98	1.0	21.4	67.3	10.2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16.0	66.0	17.0
	⑨ 박사과정	100	2.0	23.0	68.0	7.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4	1.0	17.8	69.7	11.5
	② 5~9년	184	1.1	18.5	68.5	12.0
	③ 10~19년	180	0.6	22.8	67.2	9.4
	④ 20년이상	107		22.4	64.5	13.1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1	18.2	68.8	11.9
	② 100~199만원	182	0.5	19.2	69.8	10.4
	③ 200~299만원	249	0.4	16.9	69.9	12.9
	④ 300~499만원	126	0.8	23.8	66.7	8.7
	⑤ 500만원이상	48	2.1	31.3	58.3	8.3
계층 의식	① 상	125	1.6	26.4	60.0	12.0
	② 중	575	0.5	18.8	69.7	11.0
	③ 하	89	1.1	15.7	70.8	12.4
성향	① 진보적	122	1.6	17.2	66.4	14.8
	② 중도적	453	0.4	20.1	68.4	11.0
	③ 보수적	214	0.9	20.1	68.7	10.3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4	0.9	21.0	66.1	12.0
	② 중소도시	183		19.1	69.9	10.9
	③ 읍·면 이하	169	1.2	16.6	72.8	9.5

문 항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환경부문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7.9	67.5	24.6	
	② 30대 초반	196		7.1	71.9	20.9	
	③ 30대 후반	188		9.0	67.6	23.4	
	④ 40대	193		4.7	74.1	21.2	
	⑤ 50대 이상	84		6.0	75.0	19.0	
직 업	◎ 교수등	147		6.8	70.7	22.4	
	① 선관위	49		4.1	73.5	22.4	
	② 당정책위원	19			68.4	31.6	
	③ 국회공무원	78		7.7	52.6	39.7	
	④ 행정공무원	100		9.0	80.0	11.0	
	⑤ 판사	50		12.0	70.0	18.0	
	⑥ 검사	49		8.2	79.6	12.2	
	⑦ 변호사	98		6.1	73.5	20.4	
	⑧ 사법연수원생	100		7.0	63.0	30.0	
	⑨ 박사과정	100		5.0	77.0	18.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3		7.3	68.4	24.3	
	② 5~9년	184		6.0	71.2	22.8	
	③ 10~19년	179		8.4	74.9	16.8	
	④ 20년이상	107		5.6	70.1	24.3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176		6.3	68.8	25.0	
	② 100~199만원	181		6.6	71.3	22.1	
	③ 200~299만원	249		7.2	71.9	20.9	
	④ 300~499만원	125		8.0	71.2	20.8	
	⑤ 500만원이상	48		8.3	70.8	20.8	
계 총 의 식	① 상	125		11.2	67.2	21.6	
	② 중	573		6.5	72.8	20.8	
	③ 하	89		4.5	62.9	32.6	
성 향	① 진보적	120		5.8	64.2	30.0	
	② 중도적	453		5.5	73.7	20.8	
	③ 보수적	214		10.7	68.2	21.0	
지 역 구 모	① 대도시	432		8.8	69.2	22.0	
	② 중소도시	183		6.6	68.9	24.6	
	③ 읍·면 이하	169		3.0	77.5	19.5	

문 항 8. 선생님께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②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③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연 령	① 20대	126	62.7	27.0	10.3	
	② 30대 초반	198	66.2	18.2	15.7	
	③ 30대 후반	191	72.8	12.6	14.7	
	④ 40대	195	63.1	15.9	21.0	
	⑤ 50대 이상	85	71.8	16.5	11.8	
직 업	◎ 교수등	149	68.5	16.1	15.4	
	① 선관위	50	64.0	10.0	26.0	
	② 당정책위원	20	80.0	10.0	10.0	
	③ 국회공무원	80	47.5	27.5	25.0	
	④ 행정공무원	100	66.0	16.0	18.0	
	⑤ 판사	50	92.0	4.0	4.0	
	⑥ 검사	50	72.0	24.0	4.0	
	⑦ 변호사	99	70.7	11.1	18.2	
	⑧ 사법연수원생	100	59.0	27.0	14.0	
	⑨ 박사과정	100	70.0	19.0	11.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7	64.0	21.1	14.8	
	② 5~9년	186	71.0	14.5	14.5	
	③ 10~19년	181	68.0	15.5	16.6	
	④ 20년이상	107	66.4	15.9	17.8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176	64.8	22.2	13.1	
	② 100~199만원	185	63.2	17.3	19.5	
	③ 200~299만원	250	68.0	17.6	14.4	
	④ 300~499만원	127	71.7	12.6	15.7	
	⑤ 500만원이상	50	72.0	14.0	14.0	
계 총 의 식	① 상	125	68.0	12.8	19.2	
	② 중	581	66.8	18.8	14.5	
	③ 하	89	66.3	16.9	16.9	
성 향	① 진보적	124	65.3	17.7	16.9	
	② 중도적	455	69.5	15.6	14.9	
	③ 보수적	215	62.3	21.9	15.8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7	69.8	17.6	12.6	
	② 중소도시	184	58.2	22.3	19.6	
	③ 읍·면 이하	171	68.4	12.9	18.7	

문 항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가)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부정 부패	② 탈세	③ 부동산 투기 사범	④ 환경 사법	⑤ 공안 사법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6	73.0	11.1	4.0	11.9			
	② 30대 초반	196	81.1	6.6	2.0	9.2	0.5	0.5	
	③ 30대 후반	190	63.7	15.8	1.6	17.4	1.6		
	④ 40대	194	65.5	11.9	3.1	18.6			1.0
	⑤ 50대 이상	85	60.0	11.8	2.4	23.5	2.4		
직업	◎ 교수등	149	81.9	5.4	1.3	10.7	0.7		
	① 선관위	50	60.0	18.0	4.0	16.0	2.0		
	② 당정책위원	20	45.0	25.0		30.0			
	③ 국회공무원	78	61.5	15.4	1.3	17.9	3.8		
	④ 행정공무원	99	59.6	15.2	4.0	19.2	1.0	1.0	
	⑤ 판사	49	63.3	6.1	2.0	26.5			2.0
	⑥ 검사	50	48.0	30.0	2.0	20.0			
	⑦ 변호사	100	65.0	6.0	6.0	23.0			
	⑧ 사법연수원생	99	79.8	10.1	2.0	8.1			
	⑨ 박사과정	100	86.0	7.0	1.0	5.0			1.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4	73.6	9.6	3.8	12.1	0.6	0.3	
	② 5~9년	186	72.0	12.4	1.6	13.4	0.5		
	③ 10~19년	182	68.1	12.6	1.1	17.0			1.1
	④ 20년이상	105	54.3	13.3	2.9	26.7	2.9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4	81.0	9.2	1.7	7.5			0.6
	② 100~199만원	185	66.5	13.0	2.7	16.2	1.1	0.5	
	③ 200~299만원	247	64.0	13.4	3.2	17.8	1.2		0.4
	④ 300~499만원	127	70.9	9.4	1.6	17.3	0.8		
	⑤ 500만원이상	50	64.0	8.0	4.0	24.0			
계층 의식	① 상	126	69.0	10.3	2.4	18.3			
	② 중	577	68.5	11.8	2.9	15.6	0.9	0.3	
	③ 하	88	77.3	10.2		10.2	1.1	1.1	
성향	① 진보적	123	75.6	11.4	1.6	11.4			
	② 중도적	452	67.9	12.6	3.1	15.0	0.9	0.4	
	③ 보수적	215	69.3	8.8	1.9	18.6	0.9	0.5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5	73.3	12.0	2.3	12.4			
	② 중소도시	183	66.1	11.5	2.7	17.5	1.6	0.5	
	③ 읍·면 이하	170	63.5	9.4	2.9	21.2	1.8	1.2	

부 록

문 항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나)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성폭행	② 조직 폭력배	③ 마약 사범	④ 강· 절도 사범	⑤ 음주 운전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3	34.1	40.7	9.8	8.9	5.7	0.8	
	② 30대 초반	195	19.5	56.9	9.2	6.2	6.2	2.1	
	③ 30대 후반	187	15.0	48.7	13.4	13.4	9.1	0.5	
	④ 40대	193	18.7	49.2	10.9	14.0	3.6	3.6	
	⑤ 50대 이상	82	25.6	34.1	19.5	11.0	7.3	2.4	
직업	◎ 교수등	145	25.5	44.8	15.9	9.0	4.1	0.7	
	① 선관위	47	19.1	44.7	2.1	21.3	8.5	4.3	
	② 당정책위원	20	35.0	55.0	5.0	5.0			
	③ 국회공무원	80	30.0	41.3	3.8	16.3	6.3	2.5	
	④ 행정공무원	97	13.4	51.5	14.4	12.4	7.2	1.0	
	⑤ 판사	49	22.4	55.1	6.1	16.3			
	⑥ 검사	49	10.2	46.9	20.4	12.2	8.2	2.0	
	⑦ 변호사	99	13.1	45.5	22.2	7.1	7.1	5.1	
	⑧ 사법연수원생	99	28.3	42.4	12.1	9.1	8.1		
	⑨ 박사과정	98	18.4	60.2	4.1	6.1	8.2	3.1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4	23.2	46.2	11.8	9.2	8.3	1.3	
	② 5~9년	181	21.0	51.4	13.3	6.1	5.0	3.3	
	③ 10~19년	177	18.1	49.2	8.5	18.1	5.1	1.1	
	④ 20년이상	104	20.2	44.2	15.4	12.5	4.8	2.9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3	24.9	50.9	8.1	6.9	8.1	1.2	
	② 100~199만원	181	19.3	47.5	11.6	12.2	7.7	1.7	
	③ 200~299만원	244	20.1	50.8	9.4	13.5	4.1	2.0	
	④ 300~499만원	125	20.8	44.0	17.6	10.4	5.6	1.6	
	⑤ 500만원이상	49	18.4	40.8	22.4	6.1	8.2	4.1	
계총의식	① 상	123	20.3	43.9	13.0	13.8	5.7	3.3	
	② 중	570	22.6	48.6	11.4	10.9	5.3	1.2	
	③ 하	87	12.6	49.4	12.6	6.9	13.8	4.6	
성향	① 진보적	122	22.1	45.1	15.6	6.6	6.6	4.1	
	② 중도적	447	21.9	50.3	11.9	9.2	5.4	1.3	
	③ 보수적	210	18.6	44.3	10.0	17.1	8.1	1.9	
지역규모	① 대도시	429	22.4	47.3	11.7	11.0	6.3	1.4	
	② 중소도시	182	20.9	46.2	11.0	9.9	8.2	3.8	
	③ 읍·면 이하	166	18.7	51.8	12.0	12.0	4.2	1.2	

문 항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피해자 및 일반시민 의 철저한 신고정신	② 신고사에 대한 절저 한 보호	③ 관계 당국 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④ 가정과 학 교에서의 준법교육	⑤ TV·신문 등 대중 매체의 선 도적 역할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4	18.5	6.5	37.1	23.4	10.5	4.0	
	② 30대 초반	197	11.7	7.6	38.1	33.5	5.6	3.6	
	③ 30대 후반	190	18.9	6.8	33.7	28.4	10.0	2.1	
	④ 40대	194	21.6	6.2	38.7	19.6	13.9		
	⑤ 50대 이상	84	19.0	9.5	41.7	17.9	10.7	1.2	
직업	◎ 교수등	147	17.7	7.5	40.8	25.2	8.2	0.7	
	① 선관위	50	16.0	4.0	48.0	12.0	18.0	2.0	
	② 당정책위원	20	10.0		35.0	25.0	30.0		
	③ 국회공무원	78	21.8	11.5	48.7	9.0	7.7	1.3	
	④ 행정공무원	99	19.2	11.1	33.3	24.2	11.1	1.0	
	⑤ 판사	49	22.4	2.0	28.6	34.7	8.2	4.1	
	⑥ 검사	50	36.0	2.0	30.0	24.0	8.0		
	⑦ 변호사	100	13.0	4.0	36.0	30.0	13.0	4.0	
	⑧ 사법연수원생	99	17.2	8.1	34.3	29.3	8.1	3.0	
	⑨ 박사과정	100	10.0	10.0	34.0	35.0	7.0	4.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5	16.8	6.3	36.8	27.3	9.8	2.9	
	② 5~9년	184	20.7	8.2	33.2	28.3	7.1	2.7	
	③ 10~19년	180	15.0	7.2	42.8	23.3	10.6	1.1	
	④ 20년이상	106	21.7	7.5	36.8	18.9	14.2	0.9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5	15.4	5.7	34.3	30.9	10.3	3.4	
	② 100~199만원	183	18.6	9.8	34.4	26.8	7.7	2.7	
	③ 200~299만원	246	17.9	7.7	42.3	20.3	11.0	0.8	
	④ 300~499만원	127	21.3	3.9	37.8	22.8	12.6	1.6	
	⑤ 500만원이상	50	14.0	6.0	34.0	34.0	8.0	4.0	
계총 의식	① 상	126	18.3	9.5	32.5	24.6	12.7	2.4	
	② 중	574	17.9	6.4	40.2	24.4	9.1	1.9	
	③ 하	89	16.9	7.9	25.8	33.7	12.4	3.4	
성향	① 진보적	125	20.8	8.0	38.4	20.0	7.2	5.6	
	② 중도적	451	18.2	7.3	36.4	26.8	9.1	2.2	
	③ 보수적	212	15.6	6.1	39.2	25.5	13.7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4	17.1	7.4	38.7	25.3	9.4	2.1	
	② 중소도시	182	19.8	7.1	32.4	26.4	11.5	2.7	
	③ 읍·면 이하	170	18.2	6.5	39.4	24.1	10.0	1.8	

문 항 10. 선생님은 각종 법령을 주로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전문서적 이나 정기 간행물을 보고서	② 신문이나 TV를 통 해서	③ 관보를 보 고서	④ 다른 사람 과 대화를 통하여	⑤ 각종 컴퓨 터 통신망 을 통하여	⑥ 기 타
연 령	① 20대	125	65.6	27.2	4.8	1.6			0.8
	② 30대 초반	197	70.6	17.8	6.6	2.0		1.0	2.0
	③ 30대 후반	188	63.8	22.9	11.2			2.1	
	④ 40대	192	55.2	31.3	10.9	1.6			1.0
	⑤ 50대 이상	85	56.5	30.6	12.9				
직 업	◎ 교수등	146	79.5	15.1	4.1		1.4		
	① 선관위	50	28.0	50.0	20.0	2.0			
	② 당정책위원	18	33.3	55.6	11.1			2.5	
	③ 국회공무원	79	32.9	49.4	13.9	1.3			
	④ 행정공무원	100	49.0	23.0	24.0	1.0			
	⑤ 판사	48	66.7	18.8	6.3				
	⑥ 검사	50	62.0	18.0	16.0	4.0			
	⑦ 변호사	99	76.8	18.2	4.0	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65.0	31.0	3.0	1.0			
	⑨ 박사과정	100	82.0	12.0	2.0	2.0	2.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5	66.0	25.1	6.0	1.3	0.6	1.0	
	② 5~9년	183	69.9	18.6	7.1	1.6	1.6	1.1	
	③ 10~19년	179	57.5	26.3	15.1		0.6	0.6	
	④ 20년이상	106	49.1	35.8	12.3	1.9		0.9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176	73.9	21.0	2.8	1.7	0.6		
	② 100~199만원	184	56.0	28.3	12.5	1.1	1.1	1.1	
	③ 200~299만원	244	54.9	27.5	13.9	1.2	0.8	1.6	
	④ 300~499만원	126	67.5	24.6	7.1			0.8	
	⑤ 500만원이상	50	76.0	16.0	4.0	2.0	2.0		
계 총 의 식	① 상	124	71.8	22.6	4.0	0.8	0.8		
	② 중	574	61.1	25.6	10.1	1.2	0.9	1.0	
	③ 하	89	60.7	25.8	11.2	1.1		1.1	
성 향	① 진보적	125	56.0	30.4	8.8	2.4	0.8	1.6	
	② 중도적	447	66.4	21.3	9.8	0.7	0.7	1.1	
	③ 보수적	214	59.3	30.4	7.9	1.4	0.9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3	64.0	24.7	8.3	1.4	0.9	0.7	
	② 중소도시	181	61.9	24.3	11.0	0.6	0.6	1.7	
	③ 읍·면 이하	170	61.2	27.1	10.0	1.2		0.6	

문 항 11. 특정 전문분야(유전자 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전문가가 전문분야를 직접 연구하기 보다는 그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연령	① 20대	126	7.1	74.6	17.5	0.8
	② 30대 초반	197	17.3	61.9	19.3	1.5
	③ 30대 후반	190	17.9	56.8	21.6	3.7
	④ 40대	195	17.9	69.2	11.8	1.0
	⑤ 50대 이상	85	30.6	50.6	17.6	1.2
직업	◎ 교수등	149	23.5	51.7	21.5	3.4
	① 선관위	50	28.0	66.0	6.0	
	② 당정책위원	20	5.0	99.0	5.0	
	③ 국회공무원	80	18.8	72.5	8.8	
	④ 행정공무원	100	14.0	64.0	20.0	2.0
	⑤ 판사	49	14.3	63.3	16.3	6.1
	⑥ 검사	49	18.4	65.3	16.3	
	⑦ 변호사	99	14.1	58.6	24.2	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4.0	67.0	18.0	1.0
	⑨ 박사과정	100	15.0	66.0	18.0	1.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7	14.5	68.8	15.1	1.6
	② 5~9년	185	14.6	56.8	25.9	2.7
	③ 10~19년	180	18.3	66.1	13.9	1.7
	④ 20년이상	107	29.0	54.2	15.9	0.9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4.2	67.0	18.2	0.6
	② 100~199만원	185	16.2	65.9	16.8	1.1
	③ 200~299만원	248	18.5	64.1	14.5	2.8
	④ 300~499만원	127	20.5	56.7	19.7	3.1
	⑤ 500만원이상	49	14.3	57.1	28.6	
계층 의식	① 상	125	16.8	56.8	25.6	0.8
	② 중	579	17.3	64.8	16.1	1.9
	③ 하	89	19.1	62.9	15.7	2.2
성향	① 진보적	124	19.4	62.9	17.7	
	② 중도적	453	16.8	61.1	19.6	2.4
	③ 보수적	215	17.7	67.4	13.0	1.9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4	15.9	62.9	19.6	1.6
	② 중소도시	185	18.9	63.2	15.7	2.2
	③ 읍·면 이하	171	19.3	64.9	14.0	1.8

문 항 12.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법률자문에 응할때 이들이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알고 있다	③ 별로 알고 있지 않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연 령	① 20대	126	0.8	11.1	84.1	4.0	
	② 30대 초반	198		17.7	77.8	4.5	
	③ 30대 후반	190	1.1	21.6	71.6	5.8	
	④ 40대	195		13.8	81.5	4.6	
	⑤ 50대 이상	86		25.6	72.1	2.3	
직 업	◎ 교수등	150		17.3	76.7	6.0	
	① 선관위	50		14.0	84.0	2.0	
	② 당정책위원	20		35.0	60.0	5.0	
	③ 국회공무원	79		11.4	84.8	3.8	
	④ 행정공무원	100	1.0	23.0	72.0	4.0	
	⑤ 판사	50		16.0	80.0	4.0	
	⑥ 검사	49		16.3	79.6	4.1	
	⑦ 변호사	100	1.0	18.0	74.0	7.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8.0	80.0	2.0	
	⑨ 박사과정	100	1.0	16.0	78.0	5.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7	0.3	17.4	77.9	4.4	
	② 5~9년	186	0.5	15.1	78.5	5.9	
	③ 10~19년	180	0.6	19.4	75.0	5.0	
	④ 20년이상	108		18.5	79.6	1.9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176	0.6	18.2	79.0	2.3	
	② 100~199만원	185	0.5	17.3	76.8	5.4	
	③ 200~299만원	249	0.4	16.5	78.3	4.8	
	④ 300~499만원	127		16.5	77.2	6.3	
	⑤ 500만원이상	50		24.0	72.0	4.0	
계 총 의 식	① 상	126		16.7	79.4	4.0	
	② 중	581	0.5	17.0	78.3	4.1	
	③ 하	88		22.7	69.3	8.0	
성 향	① 진보적	125	0.8	12.8	79.2	7.2	
	② 중도적	454		19.8	76.7	3.5	
	③ 보수적	215	0.9	15.3	79.1	4.7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5	0.5	18.9	75.9	4.8	
	② 중소도시	185	0.5	14.1	81.6	3.8	
	③ 읍·면·이하	172		18.6	76.7	4.7	

문 항 13.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매우 잘 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되고 있다	③ 별로 되고 있지 않다	④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1.6	3.2	77.8	17.5	
	② 30대 초반	198	0.5	8.1	77.3	14.1	
	③ 30대 후반	190		10.0	73.7	16.3	
	④ 40대	194		9.8	83.5	6.7	
	⑤ 50대 이상	86		10.5	77.9	11.6	
직업	◎ 교수등	149		6.7	75.8	17.4	
	① 선관위	50		6.0	88.0	6.0	
	② 당정책위원	20		10.0	85.0	5.0	
	③ 국회공무원	80		7.5	78.8	13.8	
	④ 행정공무원	99		11.1	79.8	9.1	
	⑤ 판사	49		16.3	75.5	8.2	
	⑥ 검사	50	2.0	10.0	78.0	10.0	
	⑦ 변호사	100		12.0	75.0	1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0	7.0	78.0	13.0	
	⑨ 박사과정	100		4.0	76.0	20.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7	0.9	7.3	77.3	14.5	
	② 5~9년	185		4.9	81.1	14.1	
	③ 10~19년	182		14.3	75.3	10.4	
	④ 20년이상	106		7.5	79.2	13.2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1	5.7	77.3	15.9	
	② 100~199만원	185	0.5	8.6	77.3	13.5	
	③ 200~299만원	251		10.0	78.5	11.6	
	④ 300~499만원	124		4.8	79.8	15.3	
	⑤ 500만원이상	50		18.0	76.0	6.0	
계층 의식	① 상	126	0.8	10.3	73.8	15.1	
	② 중	579	0.3	7.9	78.9	12.8	
	③ 하	89		9.0	77.5	13.5	
성향	① 진보적	125		5.6	72.8	21.6	
	② 중도적	453	0.7	9.3	78.6	11.5	
	③ 보수적	215		8.8	79.1	12.1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6	0.7	8.3	76.6	14.4	
	② 중소도시	184		7.1	82.1	10.9	
	③ 읍·면 이하	171		10.5	76.6	12.9	

문 항 13.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선생님은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조직에 대한 지식	②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 활법규	③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④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을바른 인간 상 정립
연령	① 20대	126	12.7	31.0	11.9	44.4
	② 30대 초반	198	13.6	25.8	7.6	53.0
	③ 30대 후반	190	5.3	31.6	8.4	54.7
	④ 40대	196	8.2	35.7	2.0	54.1
	⑤ 50대 이상	86	5.8	26.7	5.8	61.6
직업	◎ 교수등	150	12.0	31.3	2.7	54.0
	① 선관위	50	2.0	44.0	2.0	52.0
	② 당정책위원	20	10.0	15.0	15.0	60.0
	③ 국회공무원	80	12.5	28.8	8.8	50.0
	④ 행정공무원	100	7.0	37.0	7.0	49.0
	⑤ 판사	49	6.1	26.5	6.1	61.2
	⑥ 검사	50	4.0	38.0	4.0	54.0
	⑦ 변호사	100	8.0	26.0	5.0	6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2.0	33.0	10.0	45.0
종사 기간	⑨ 박사과정	100	13.0	20.0	13.0	54.0
	① 5년미만	317	10.7	30.0	9.1	50.2
	② 5~9년	186	9.7	30.1	7.5	52.7
	③ 10~19년	181	9.4	29.3	5.5	55.8
개인 소득	④ 20년이상	108	5.6	34.3	1.9	58.3
	① 100만원미만	176	13.1	27.8	11.9	47.2
	② 100~199만원	185	9.7	31.4	8.1	50.8
	③ 200~299만원	251	6.8	31.9	5.6	55.8
	④ 300~499만원	126	8.7	31.7	0.8	58.7
계층 의식	⑤ 500만원이상	50	10.0	26.0	8.0	56.0
	① 상	126	12.7	27.8	7.9	51.6
	② 중	581	9.1	31.0	6.4	53.5
성향	③ 하	89	7.9	31.5	9.0	51.7
	① 진보적	125	13.6	29.6	12.8	44.0
	② 중도적	454	9.5	32.2	5.9	52.4
지역 규모	③ 보수적	216	7.4	27.8	5.1	59.7
	① 대도시	437	10.5	31.1	8.5	49.9
	② 중소도시	185	9.2	27.0	4.3	59.5
	③ 읍·면 이하	171	7.0	32.7	5.3	55.0

문 항 14. 선생님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뒤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자세히 본다	② 대충 본다	③ 보지 않는다
연령	① 20대	126	15.1	63.5	21.4	
	② 30대 초반	198	13.6	69.7	16.7	
	③ 30대 후반	191	15.7	71.2	13.1	
	④ 40대	196	10.7	63.3	26.0	
	⑤ 50대 이상	86	16.3	50.0	33.7	
직업	◎ 교수등	150	21.3	59.3	19.3	
	① 선관위	50	12.0	64.0	24.0	
	② 당정책위원	20	25.0	55.0	20.0	
	③ 국회공무원	80	7.5	70.0	22.5	
	④ 행정공무원	100	6.0	67.0	27.0	
	⑤ 판사	50	24.0	70.0	6.0	
	⑥ 검사	50	2.0	88.0	10.0	
	⑦ 변호사	100	15.0	64.0	2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6.0	66.0	28.0	
	⑨ 박사과정	100	23.0	58.0	19.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7	15.8	65.9	18.3	
	② 5~9년	186	12.9	67.2	19.9	
	③ 10~19년	182	15.4	68.7	15.9	
	④ 20년이상	108	8.3	52.8	38.9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3.6	62.5	23.9	
	② 100~199만원	185	11.9	70.8	17.3	
	③ 200~299만원	251	11.2	66.9	21.9	
	④ 300~499만원	127	19.7	62.2	18.1	
	⑤ 500만원이상	50	22.0	58.0	20.0	
계층의식	① 상	126	15.1	66.7	18.3	
	② 중	582	13.2	66.5	20.3	
	③ 하	89	16.9	55.1	28.1	
성향	① 진보적	125	14.4	59.2	26.4	
	② 중도적	455	14.1	67.0	18.9	
	③ 보수적	216	13.0	65.3	21.8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15.8	64.1	20.1	
	② 중소도시	185	13.0	68.1	18.9	
	③ 읍·면·이하	172	9.9	65.7	24.4	

문 항 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한 번 산 것 이니 어쩔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	③ 소비자고발센 터에 신고한다	④ 재판을 하여 손 해배상까지 받 아낸다
연령	① 20대	126	26.2	52.4	19.8	1.6	
	② 30대 초반	197	28.4	49.2	20.8	1.5	
	③ 30대 후반	189	27.5	47.6	24.3	0.5	
	④ 40대	193	30.6	48.7	20.7		
	⑤ 50대 이상	86	36.0	34.9	27.9	1.2	
직업	◎ 교수등	148	18.2	54.1	27.0	0.7	
	① 선관위	50	48.0	28.0	22.0	2.0	
	② 당정책위원	19	47.4	31.6	21.1		
	③ 국회공무원	79	24.1	55.7	19.0	1.3	
	④ 행정공무원	100	35.0	44.0	21.0		
	⑤ 판사	50	18.0	60.0	22.0		
	⑥ 검사	50	44.0	42.0	14.0		
	⑦ 변호사	99	35.4	39.4	24.2	1.0	
	⑧ 사법연수원생	99	31.3	48.5	20.2		
종사 기간	⑨ 박사과정	100	21.0	53.0	23.0	3.0	
	① 5년미만	316	27.8	51.3	19.3	1.6	
	② 5~9년	185	27.0	49.2	23.2	0.5	
	③ 10~19년	178	29.2	44.4	26.4		
개인 소득	④ 20년이상	108	38.0	38.9	22.2	0.9	
	① 100만원미만	175	25.1	52.0	21.1	1.7	
	② 100~199만원	185	29.7	48.6	20.5	1.1	
	③ 200~299만원	247	34.0	43.7	22.3		
	④ 300~499만원	126	26.2	48.4	24.6	0.8	
계층 의식	⑤ 500만원이상	50	26.0	46.0	26.0	2.0	
	① 상	125	31.2	46.4	21.6	0.8	
	② 중	577	29.1	47.5	22.5	0.9	
성향	③ 하	89	28.1	49.4	21.3	1.1	
	① 진보적	125	27.2	47.2	24.0	1.6	
	② 중도적	450	27.8	46.9	24.4	0.9	
지역 규모	③ 보수적	215	33.5	49.3	16.7	0.5	
	① 대도시	434	27.2	49.5	22.6	0.7	
	② 중소도시	183	30.1	43.2	25.1	1.6	
	③ 읍·면 이하	171	33.9	48.0	17.5	0.6	

문 항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 다	② 시간과 비용이 많 이 들어서 번거 롭다	③ 법정에 서는 것 은 그 자체가 불 명예스럽다	④ 기타
연령	① 20대	125	42.4	52.8	3.2	1.6	
	② 30대 초반	198	41.4	54.0	2.0	2.5	
	③ 30대 후반	190	51.6	43.7	3.7	1.1	
	④ 40대	194	35.1	58.2	6.2	0.5	
	⑤ 50대 이상	86	38.4	52.3	8.1	1.2	
직업	◎ 교수등	150	48.7	46.0	2.7	2.7	
	① 선관위	49	18.4	75.5	6.1		
	② 당정책위원	18	33.3	55.6	11.1		
	③ 국회공무원	80	20.0	73.8	6.3		
	④ 행정공무원	99	25.3	65.7	9.1		
	⑤ 판사	50	80.0	16.0	4.0		
	⑥ 검사	50	34.0	58.0	8.0		
	⑦ 변호사	100	68.0	29.0	1.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3.0	51.0	4.0	2.0	
	⑨ 박사과정	100	38.0	59.0		3.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6	42.7	52.8	3.2	1.3	
	② 5~9년	185	47.0	49.2	1.6	2.2	
	③ 10~19년	180	37.8	53.9	7.2	1.1	
	④ 20년이상	108	38.0	53.7	7.4	0.9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42.0	52.8	2.8	2.3	
	② 100~199만원	183	33.3	60.7	4.9	1.1	
	③ 200~299만원	249	34.1	58.6	6.8	0.4	
	④ 300~499만원	127	57.5	37.0	2.4	3.1	
	⑤ 500만원이상	50	66.0	34.0			
계층	① 상	125	51.2	44.8	2.4	1.6	
	② 중	579	41.6	52.7	4.3	1.4	
	③ 하	89	31.5	60.7	6.7	1.1	
성향	① 진보적	124	46.0	49.2	2.4	2.4	
	② 중도적	452	42.3	52.7	3.8	1.3	
	③ 보수적	216	39.4	53.2	6.5	0.9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4	45.4	50.2	2.5	1.8	
	② 중소도시	184	37.5	55.4	5.4	1.6	
	③ 읍·면 이하	172	38.4	54.1	7.6		

문 항 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연 령	① 20대	126	95.2	4.8
	② 30대 초반	198	91.4	8.6
	③ 30대 후반	191	82.7	17.3
	④ 40대	196	87.2	12.8
	⑤ 50대 이상	86	75.6	24.4
직 업	◎ 교수등	150	83.3	16.7
	① 선관위	50	92.0	8.0
	② 당정책위원	20	95.0	5.0
	③ 국회공무원	80	96.3	3.8
	④ 행정공무원	100	83.0	17.0
	⑤ 판사	50	78.0	22.0
	⑥ 검사	50	78.0	22.0
	⑦ 변호사	100	83.0	17.0
	⑧ 사법연수원생	100	95.0	5.0
	⑨ 박사과정	100	90.0	10.0
종 사 기 간	① 5년미만	317	91.5	8.5
	② 5~9년	186	87.6	12.4
	③ 10~19년	182	83.0	17.0
	④ 20년이상	108	80.6	19.4
개 인 소 득	① 100만원미만	176	93.8	6.3
	② 100~199만원	185	90.8	9.2
	③ 200~299만원	251	83.3	16.7
	④ 300~499만원	127	80.3	19.7
	⑤ 500만원이상	50	84.0	16.0
계 층 의 식	① 상	126	84.1	15.9
	② 중	582	87.3	12.7
	③ 하	89	89.9	10.1
성 향	① 진보적	125	90.4	9.6
	② 중도적	455	85.9	14.1
	③ 보수적	216	87.0	13.0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437	88.1	11.9
	② 중소도시	185	83.8	16.2
	③ 읍·면 이하	172	87.8	12.2

문 항 18. 우리나라의 입법예고제는 일반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법 전단계에서 법률상 문제를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법예고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예고대상 법률의 확 대	② 예고수단 의 다양화	③ 예고사항 의 구체화	④ 제출된 의견의 반영 도 제고	⑤ 입법예고 전담부서의 신설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6	3.2	53.2	14.3	25.4	2.4	1.6	
	② 30대 초반	197	4.6	52.8	9.6	27.9	4.6	0.5	
	③ 30대 후반	183	5.5	49.7	12.6	27.9	3.3	1.1	
	④ 40대	191	6.3	51.3	18.8	18.3	5.2		
	⑤ 50대 이상	85	11.8	42.4	21.2	14.1	10.6		
직업	◎ 교수등	146	10.3	38.4	17.8	27.4	5.5	0.7	
	① 선관위	50		68.0	14.0	10.0	8.0		
	② 당정책위원	19	5.3	57.9	15.8	15.8	5.3		
	③ 국회공무원	78	7.7	50.0	14.1	23.1	2.6	2.6	
	④ 행정공무원	98	2.0	55.1	25.5	12.2	4.1	1.0	
	⑤ 판사	49	8.2	40.8	12.2	36.7	2.0		
	⑥ 검사	48	6.3	60.4	4.2	25.0	4.2		
	⑦ 변호사	97	8.2	50.5	13.4	21.6	5.2	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0	47.0	13.0	35.0	3.0		
	⑨ 박사과정	100	5.0	58.0	8.0	22.0	7.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6	4.1	51.3	13.0	26.3	4.1	1.3	
	② 5~9년	180	6.7	51.7	10.0	29.4	2.2		
	③ 10~19년	174	6.9	50.0	15.5	20.7	6.3	0.6	
	④ 20년이상	108	7.4	48.1	24.1	12.0	8.3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4.0	48.9	11.9	30.1	5.1		
	② 100~199만원	182	5.5	53.8	12.1	23.1	3.8	1.6	
	③ 200~299만원	245	4.1	50.2	18.4	22.0	4.9	0.4	
	④ 300~499만원	124	9.7	50.0	16.9	17.7	5.6		
	⑤ 500만원이상	48	14.6	41.7	8.3	29.2	4.2	2.1	
계층 의식	① 상	124	9.7	46.8	12.9	25.0	4.8	0.8	
	② 중	569	5.1	52.7	14.1	22.8	4.7	0.5	
	③ 하	89	5.6	42.7	19.1	27.0	4.5	1.1	
성향	① 진보적	122	4.1	50.0	11.5	28.7	4.1	1.6	
	② 중도적	446	6.3	50.2	15.0	24.4	3.8	0.2	
	③ 보수적	213	6.1	51.6	14.6	19.7	7.0	0.9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1	5.6	50.6	14.6	23.9	4.4	0.9	
	② 중소도시	179	3.9	52.5	14.0	25.1	3.9	0.6	
	③ 읍·면 이하	169	8.3	49.1	14.8	21.3	6.5		

문 항 19.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중 의원입법이 전체의 입법중 10%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부문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국회사무처 내 입법지원 부서 확충과 예산증액	② 입법지원을 위한 의원보 좌관 확충	③ 정당의 입법 활동의 충실 화	④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	⑤ 기타
연령	① 20대	124	24.2	10.5	20.2	45.2	
	② 30대 초반	198	22.7	12.1	16.7	47.0	1.5
	③ 30대 후반	189	19.6	6.3	25.9	46.6	1.6
	④ 40대	194	16.5	5.2	24.7	51.5	2.1
	⑤ 50대 이상	86	23.3	7.0	23.3	46.5	
직업	◎ 교수등	149	18.8	9.4	23.5	46.3	2.0
	① 선관위	50	6.0	4.0	32.0	58.0	
	② 당정책위원	20	20.0	25.0	35.0	20.0	
	③ 국회공무원	80	71.3		12.5	12.5	3.8
	④ 행정공무원	98	8.2	4.1	25.5	59.2	3.1
	⑤ 판사	50	12.0	6.0	18.0	64.0	
	⑥ 검사	48	12.5	4.2	18.8	64.6	
	⑦ 변호사	100	14.0	6.0	30.0	50.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6.0	17.0	14.0	53.0	
	⑨ 박사과정	99	22.2	13.1	20.2	43.4	1.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5	24.8	10.5	20.6	43.5	0.6
	② 5~9년	184	19.6	8.7	21.7	47.8	2.2
	③ 10~19년	181	16.0	6.1	24.3	51.9	1.7
	④ 20년이상	107	17.8	4.7	24.3	52.3	0.9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5	18.3	15.4	15.4	50.3	0.6
	② 100~199만원	183	30.6	4.9	20.2	42.1	2.2
	③ 200~299만원	249	17.7	5.6	24.1	51.0	1.6
	④ 300~499만원	126	15.1	10.3	25.4	48.4	0.8
	⑤ 500만원이상	50	20.0	2.0	34.0	44.0	
계층 의식	① 상	126	15.1	4.8	26.2	53.2	0.8
	② 중	577	21.1	8.8	22.4	46.4	1.2
	③ 하	88	25.0	10.2	14.8	47.7	2.3
성향	① 진보적	123	24.4	17.1	25.2	31.7	1.6
	② 중도적	452	20.6	7.1	21.5	49.6	1.3
	③ 보수적	215	18.6	5.6	21.4	53.5	0.9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5	20.0	9.2	22.1	47.6	1.1
	② 중소도시	184	21.7	8.7	19.6	48.4	1.6
	③ 읍·면 이하	169	20.1	5.9	25.4	47.3	1.2

문 항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5.6	59.5	31.7	3.2	
	② 30대 초반	198	5.6	60.6	32.8	1.0	
	③ 30대 후반	191	8.9	66.5	23.0	1.6	
	④ 40대	196	8.2	68.4	23.5		
	⑤ 50대 이상	86	7.0	73.3	17.4	2.3	
직업	◎ 교수등	150	2.7	59.3	36.7	1.3	
	① 선관위	50	20.0	72.0	8.0		
	② 당정책위원	20	5.0	75.0	20.0		
	③ 국회공무원	80	5.0	71.3	22.5	1.3	
	④ 행정공무원	100	18.0	69.0	12.0	1.0	
	⑤ 판사	50	2.0	82.0	16.0		
	⑥ 검사	50	10.0	76.0	14.0		
	⑦ 변호사	100	4.0	68.0	26.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0	63.0	31.0	2.0	
	⑨ 박사과정	100	6.0	45.0	46.0	3.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7	6.6	59.0	32.2	2.2	
	② 5~9년	186	5.4	66.7	27.4	0.5	
	③ 10~19년	182	9.9	65.9	23.1	1.1	
	④ 20년이상	108	7.4	77.8	13.9	0.9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4.0	56.8	37.5	1.7	
	② 100~199만원	185	12.4	63.8	23.2	0.5	
	③ 200~299만원	251	8.8	69.7	19.9	1.6	
	④ 300~499만원	127	2.4	67.7	29.1	0.8	
	⑤ 500만원이상	50	4.0	74.0	20.0	2.0	
계총의	① 상	126	3.2	67.5	28.6	0.8	
	② 중	582	7.4	65.5	25.8	1.4	
	③ 하	89	11.2	58.4	28.1	2.2	
성향	① 진보적	125	8.8	56.8	32.8	1.6	
	② 중도적	455	6.2	66.8	26.2	0.9	
	③ 보수적	216	8.3	65.7	23.6	2.3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7.3	62.9	28.6	1.1	
	② 중소도시	185	4.3	68.1	25.4	2.2	
	③ 읍·면 이하	172	9.9	66.9	22.1	1.2	

문 항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 문제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가) 현행(1996년) 사법시험선발인원은 500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법조인선발인원 숫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②	③	④	⑤ 기타
			300여명	500여명	700여명	1000여명	
연령	① 20대	124	12.9	38.7	12.9	31.5	4.0
	② 30대 초반	197	16.2	27.9	7.6	38.1	10.2
	③ 30대 후반	190	31.1	19.5	6.3	31.6	11.6
	④ 40대	195	19.0	17.4	11.8	40.0	11.8
	⑤ 50대 이상	86	20.9	25.6	8.1	37.2	8.1
직업	◎ 교수등	149	1.3	11.4	14.8	54.4	18.1
	① 선관위	50	6.0	22.0	10.0	50.0	12.0
	② 당정책위원	20		15.0	15.0	70.0	
	③ 국회공무원	79	6.3	17.7	12.7	53.2	10.1
	④ 행정공무원	100	16.0	26.0	7.0	43.0	8.0
	⑤ 판사	50	56.0	26.0	10.0	6.0	2.0
	⑥ 검사	49	69.4	18.4	2.0	4.1	6.1
	⑦ 변호사	100	58.0	31.0	2.0	3.0	6.0
	⑧ 사법연수원생	99	15.2	61.6	12.1	9.1	2.0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99	1.0	11.1	6.1	65.7	16.2
	① 5년미만	315	16.8	31.7	10.2	33.7	7.6
	② 5~9년	184	21.2	18.5	9.8	38.6	12.0
	③ 10~19년	182	25.3	19.2	7.1	36.3	12.1
개인소득	④ 20년이상	107	20.6	23.4	9.3	38.3	8.4
	① 100만원미만	175	9.7	39.4	11.4	34.9	4.6
	② 100~199만원	183	14.2	15.3	8.7	49.2	12.6
	③ 200~299만원	250	21.2	22.8	8.4	36.0	11.6
	④ 300~499만원	127	27.6	19.7	12.6	29.9	10.2
계층의식	⑤ 500만원이상	50	60.0	28.0		4.0	8.0
	① 상	124	32.3	19.4	8.9	33.1	6.5
	② 중	579	19.0	24.9	9.8	35.9	10.4
성향	③ 하	89	12.4	30.3	5.6	41.6	10.1
	① 진보적	124	14.5	22.6	8.1	37.1	17.7
	② 중도적	453	22.3	25.2	11.0	34.4	7.1
지역규모	③ 보수적	214	19.6	24.3	6.1	39.3	10.7
	① 대도시	433	20.8	22.9	8.8	37.0	10.6
	② 중소도시	184	19.0	27.2	11.4	31.5	10.9
	③ 읍·면 이하	172	20.9	26.2	7.6	39.5	5.8

문 항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 문제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나) 이른바 “로-스쿨” 도입논쟁으로 인하여 현행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현행방식유지(사법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② “로-스쿨” 방식도입 (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③ 기타
연령	① 20대	125	76.8	23.2	
	② 30대 초반	197	60.9	36.5	2.5
	③ 30대 후반	188	59.6	37.8	2.7
	④ 40대	195	48.7	48.2	3.1
	⑤ 50대 이상	86	45.3	53.5	1.2
직업	◎ 교수등	148	46.6	48.6	4.7
	① 선관위	50	26.0	72.0	2.0
	② 당정책위원	20	10.0	90.0	
	③ 국회공무원	79	32.9	65.8	1.3
	④ 행정공무원	100	38.0	60.0	2.0
	⑤ 판사	49	100.0		
	⑥ 검사	49	91.8	6.1	2.0
	⑦ 변호사	100	86.0	14.0	
	⑧ 사법연수원생	99	92.9	7.1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43.0	52.0	5.0
	① 5년미만	316	68.4	29.7	1.9
	② 5~9년	183	55.2	41.0	3.8
	③ 10~19년	181	52.5	45.9	1.7
개인소득	④ 20년이상	107	43.9	55.1	0.9
	① 100만원미만	176	72.2	25.6	2.3
	② 100~199만원	183	41.0	56.8	2.2
	③ 200~299만원	248	54.4	43.1	2.4
	④ 300~499만원	127	60.6	37.0	2.4
계층의식	⑤ 500만원이상	50	88.0	12.0	
	① 상	124	70.2	27.4	2.4
	② 중	578	56.6	41.3	2.1
성향	③ 하	89	52.8	44.9	2.2
	① 진보적	124	50.8	46.0	3.2
	② 중도적	452	59.3	38.9	1.8
지역규모	③ 보수적	214	60.7	36.9	2.3
	① 대도시	433	60.0	37.2	2.8
	② 중소도시	183	62.3	36.6	1.1
	③ 읍·면 이하	172	50.0	48.3	1.7

부 록

문 항 2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 령	① 20대	126	7.9	76.2	15.1	0.8
	② 30대 초반	198	27.8	58.6	10.6	3.0
	③ 30대 후반	190	20.5	65.3	12.1	2.1
	④ 40대	195	21.5	66.2	9.7	2.6
	⑤ 50대 이상	86	24.4	64.0	10.5	1.2
직 업	◎ 교수등	150	28.7	66.7	4.7	
	① 선관위	50	26.0	74.0		
	② 당정책위원	20	30.0	60.0	10.0	
	③ 국회공무원	80	38.8	61.3		
	④ 행정공무원	100	25.0	71.0	4.0	
	⑤ 판사	50		16.0	54.0	30.0
	⑥ 검사	48	6.3	68.8	25.0	
	⑦ 변호사	100	6.0	70.0	22.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8.0	75.0	17.0	
종 사 기 간	⑨ 박사과정	100	32.0	68.0		
	① 5년미만	317	20.8	67.8	10.7	0.6
	② 5~9년	185	18.9	64.3	13.0	3.8
	③ 10~19년	181	19.9	67.4	9.9	2.8
개 소 인 득	④ 20년이상	108	26.9	59.3	11.1	2.8
	① 100만원미만	176	16.5	73.9	9.7	
	② 100~199만원	184	26.6	68.5	4.3	0.5
	③ 200~299만원	250	25.2	57.2	14.0	3.6
	④ 300~499만원	127	17.3	65.4	13.4	3.9
계 총 의 식	⑤ 500만원이상	50	6.0	68.0	24.0	2.0
	① 상	126	15.9	61.9	17.5	4.8
	② 중	580	21.2	65.9	11.0	1.9
성 향	③ 하	89	27.0	69.7	3.4	
	① 진보적	124	30.6	63.7	4.8	0.8
	② 중도적	454	18.7	67.0	11.2	3.1
지 역 규 모	③ 보수적	216	20.4	63.9	14.8	0.9
	① 대도시	435	19.5	65.3	12.4	2.8
	② 중소도시	185	21.1	65.4	11.4	2.2
	③ 읍·면 이하	172	25.0	66.3	8.1	0.6

문항 2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③ 기타
연령	① 20대	126	18.3	80.2	1.6	
	② 30대 초반	198	18.7	80.8	0.5	
	③ 30대 후반	191	18.3	79.6	2.1	
	④ 40대	196	20.9	78.6	0.5	
	⑤ 50대 이상	85	23.5	76.5		
직업	◎ 교수등	149	16.1	83.9		
	① 선관위	50	34.0	66.0		
	② 당정책위원	20	40.0	55.0	5.0	
	③ 국회공무원	80	35.0	65.0		
	④ 행정공무원	100	20.0	77.0	3.0	
	⑤ 판사	50	4.0	94.0	2.0	
	⑥ 검사	50	12.0	84.0	4.0	
	⑦ 변호사	100	15.0	85.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8.0	81.0	1.0	
	⑨ 박사과정	100	18.0	82.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7	20.8	78.5	0.6	
	② 5~9년	186	15.6	82.8	1.6	
	③ 10~19년	181	18.8	80.1	1.1	
	④ 20년이상	108	25.0	75.0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8.2	81.3	0.6	
	② 100~199만원	185	23.2	75.1	1.6	
	③ 200~299만원	250	19.2	79.2	1.6	
	④ 300~499만원	127	18.9	81.1		
	⑤ 500만원이상	50	16.0	84.0		
계층의식	① 상	126	15.9	83.3	0.8	
	② 중	581	19.1	79.9	1.0	
	③ 하	89	28.1	70.8	1.1	
성향	① 진보적	125	33.6	65.6	0.8	
	② 중도적	455	16.0	83.1	0.9	
	③ 보수적	215	19.1	80.0	0.9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18.1	80.5	1.4	
	② 중소도시	184	14.1	85.3	0.5	
	③ 읍·면 이하	172	29.1	70.3	0.6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48.4	49.2	2.4
	② 30대 초반	198		51.5	45.5	3.0
	③ 30대 후반	189	2.1	57.7	38.1	2.1
	④ 40대	194	1.0	66.0	32.0	1.0
	⑤ 50대 이상	85	2.4	70.6	24.7	2.4
직업	◎ 교수등	149	0.7	49.7	47.7	2.0
	① 선관위	48		50.0	47.9	2.1
	② 당정책위원	20	5.0	85.0	10.0	
	③ 국회공무원	79	1.3	74.7	24.1	
	④ 행정공무원	100	1.0	81.0	17.0	1.0
	⑤ 판사	50		56.0	40.0	4.0
	⑥ 검사	49	4.1	61.2	32.7	2.0
	⑦ 변호사	100	2.0	59.0	36.0	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53.0	44.0	3.0
	⑨ 박사과정	100		36.0	61.0	3.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6	0.6	52.8	44.0	2.5
	② 5~9년	185	1.1	57.3	40.5	1.1
	③ 10~19년	181	1.7	58.6	37.6	2.2
	④ 20년이상	106	0.9	73.6	22.6	2.8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47.7	49.4	2.8
	② 100~199만원	182	0.5	60.4	37.9	1.1
	③ 200~299만원	249	2.0	61.4	34.1	2.4
	④ 300~499만원	127	0.8	60.6	37.0	1.6
	⑤ 500만원이상	50	2.0	62.0	34.0	2.0
계층 의식	① 상	125	1.6	56.0	39.2	3.2
	② 중	578	0.9	60.6	36.7	1.9
	③ 하	89	1.1	42.7	53.9	2.2
성향	① 진보적	124	0.8	47.6	50.0	1.6
	② 중도적	451	0.7	60.8	36.8	1.8
	③ 보수적	216	1.9	57.4	37.5	3.2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3	0.2	56.8	40.9	2.1
	② 중소도시	185	1.6	55.7	40.0	2.7
	③ 읍·면 이하	171	2.3	62.6	33.3	1.8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0.5	54.0	43.7	2.4	
	② 30대 초반	198		57.6	39.4	3.0	
	③ 30대 후반	189		63.0	36.0	0.5	
	④ 40대	195		68.2	29.7	1.5	
	⑤ 50대 이상	85		71.8	23.5	2.4	
직업	◎ 교수등	149	2.0	51.7	45.6	2.7	
	① 선관위	49		81.6	12.2	4.1	
	② 당정책위원	20		70.0	25.0		
	③ 국회공무원	79		53.2	45.6	1.3	
	④ 행정공무원	100		83.0	15.0		
	⑤ 판사	50		66.0	32.0	2.0	
	⑥ 검사	49		81.6	18.4		
	⑦ 변호사	100		65.0	34.0	1.0	
	⑧ 사법연수원생	100		55.0	42.0	3.0	
종사기간	⑨ 박사과정	100		47.0	50.0	3.0	
	① 5년미만	316	0.6	55.1	42.1	2.2	
	② 5~9년	185		63.2	35.1	1.6	
	③ 10~19년	182	0.5	67.6	30.2	1.6	
개인소득	④ 20년이상	106	0.9	73.6	23.6	1.9	
	① 100만원미만	176	1.6	55.1	42.0	2.8	
	② 100~199만원	183		57.9	38.8	1.6	
	③ 200~299만원	249		69.9	28.5	1.2	
	④ 300~499만원	127		61.4	37.0	1.6	
계층의식	⑤ 500만원이상	50		70.0	30.0		
	① 상	125	0.5	64.0	32.8	3.2	
	② 중	579		63.4	35.2	0.9	
성향	③ 하	89		52.8	39.3	6.7	
	① 진보적	124	0.8	50.8	46.0	2.4	
	② 중도적	452	0.7	63.9	34.1	1.3	
지역규모	③ 보수적	216		65.3	31.9	2.8	
	① 대도시	433	0.7	59.4	38.1	1.8	
	② 중소도시	185		65.4	32.4	2.2	
	③ 읍·면 이하	172	0.6	65.7	32.0	1.7	

부 록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0.5	31.0	57.9	11.1	
	② 30대 초반	198		23.7	66.2	10.1	
	③ 30대 후반	189		42.9	50.3	6.3	
	④ 40대	193		33.7	63.2	3.1	
	⑤ 50대 이상	85		41.2	47.1	11.8	
직업	◎ 교수등	148	2.0	31.1	64.2	4.7	
	① 선관위	48		33.3	54.2	12.5	
	② 당정책위원	20		40.0	55.0	5.0	
	③ 국회공무원	79		25.3	59.5	15.2	
	④ 행정공무원	100		37.0	60.0	3.0	
	⑤ 판사	50		40.0	56.0	2.0	
	⑥ 검사	49		65.3	34.7		
	⑦ 변호사	100		35.0	57.0	8.0	
	⑧ 사법연수원생	100		32.0	60.0	8.0	
	⑨ 박사과정	100		21.0	63.0	16.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6	0.6	27.5	63.0	9.5	
	② 5~9년	184		35.3	58.7	6.0	
	③ 10~19년	181		39.8	52.5	7.2	
	④ 20년이상	106		37.7	54.7	7.5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0.6	30.7	57.4	11.9	
	② 100~199만원	181		32.6	59.1	7.7	
	③ 200~299만원	249		35.7	57.8	6.4	
	④ 300~499만원	127		35.4	59.8	4.7	
	⑤ 500만원이상	50		38.0	56.0	6.0	
계층 의식	① 상	125	0.8	36.8	55.2	7.2	
	② 중	578		33.7	58.8	7.4	
	③ 하	88		28.4	60.2	11.4	
성향	① 진보적	124	0.2	23.4	65.3	11.3	
	② 중도적	450		34.4	59.6	5.8	
	③ 보수적	216		37.5	52.3	10.2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3	0.2	32.3	59.6	7.9	
	② 중소도시	184		34.8	54.9	10.3	
	③ 읍·면·이하	171		35.7	59.6	4.7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3.2	62.7	30.2	4.0
	② 30대 초반	197	4.6	51.8	36.5	7.1
	③ 30대 후반	189	5.3	54.5	36.0	4.2
	④ 40대	192	3.1	53.1	39.6	4.2
	⑤ 50대 이상	85	5.9	54.1	31.8	8.2
직업	◎ 교수등	148	0.7	44.6	47.3	7.4
	① 선관위	48		54.2	37.5	8.3
	② 당정책위원회	20	5.0	45.0	35.0	15.0
	③ 국회공무원	79		32.9	55.7	11.4
	④ 행정공무원	99	5.1	55.6	38.4	1.0
	⑤ 판사	49	6.1	77.6	16.3	
	⑥ 검사	49	32.7	63.3	4.1	
	⑦ 변호사	100	4.0	72.0	22.0	2.0
	⑧ 사법연수원생	100	4.0	68.0	24.0	4.0
	⑨ 박사과정	100		43.0	49.0	8.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6	3.8	55.7	35.1	5.4
	② 5~9년	183	4.4	54.1	37.7	3.8
	③ 10~19년	181	4.4	51.4	38.1	6.1
	④ 20년이상	105	5.7	56.2	31.4	6.7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7	58.5	34.7	5.1
	② 100~199만원	181	5.0	46.4	40.9	7.7
	③ 200~299만원	248	6.0	55.2	35.1	3.6
	④ 300~499만원	126	4.8	54.0	34.9	6.3
	⑤ 500만원이상	50	2.0	72.0	24.0	2.0
계층 의식	① 상	124	4.8	56.5	33.9	4.8
	② 중	577	4.5	54.4	35.5	5.5
	③ 하	88	2.3	53.4	39.8	4.5
성향	① 진보적	124	2.4	37.1	49.2	11.3
	② 중도적	449	4.7	58.4	32.1	4.9
	③ 보수적	215	4.7	57.2	35.3	2.8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2	4.6	53.7	36.6	5.1
	② 중소도시	184	4.3	55.4	34.2	6.0
	③ 읍·면 이하	170	3.5	56.5	34.7	5.3

문 항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공정하다	② 대체로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하지 않다
연령	① 20대	126	18.3	73.0	8.7		
	② 30대 초반	197	11.2	81.7	7.1		
	③ 30대 후반	187	17.6	71.7	10.7		
	④ 40대	193	10.9	81.3	7.3		0.5
	⑤ 50대 이상	85	17.6	70.6	11.8		
직업	◎ 교수등	149	8.1	82.6	8.7		0.7
	① 선관위	48	12.5	81.3	6.3		
	② 당정책위원	20	10.0	75.0	15.0		
	③ 국회공무원	78	3.8	83.3	12.8		
	④ 행정공무원	99	6.1	79.8	14.1		
	⑤ 판사	49	51.0	49.0			
	⑥ 검사	49	28.6	65.3	6.1		
	⑦ 변호사	99	17.2	79.8	3.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5.0	70.0	5.0		
	⑨ 박사과정	100	4.0	81.0	15.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6	13.0	77.8	8.9		0.3
	② 5~9년	182	14.8	79.7	5.5		
	③ 10~19년	181	12.7	76.8	10.5		
	④ 20년이상	105	21.0	67.6	11.4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14.2	77.3	8.5		
	② 100~199만원	181	9.4	78.5	11.6		0.6
	③ 200~299만원	248	16.9	75.4	7.7		
	④ 300~499만원	126	15.9	75.4	8.7		
	⑤ 500만원이상	49	14.3	79.6	6.1		
계층 의식	① 상	124	20.2	72.6	7.3		
	② 중	576	13.9	76.7	9.2		0.2
	③ 하	88	10.2	81.8	8.0		
성향	① 진보적	123	8.9	78.0	13.0		
	② 중도적	449	16.3	75.9	7.6		0.2
	③ 보수적	215	14.0	77.2	8.8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2	14.8	76.2	8.8		0.2
	② 중소도시	185	14.1	81.1	4.9		
	③ 읍·면 이하	168	14.3	72.6	13.1		

문 항 25. 다음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범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시오.)

가)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선거 및 정치 관련부문	② 복지관련부문	③ 농어촌관련부문	④ 교육관련부문	⑤ 금융 · 조세관련부문	⑥ 중소기업관련부문	⑦ 노사관련부문	⑧ 환경관련부문	⑨ 건설 · 교통관련부문
연령	① 20대	125	61.6	17.6	4.8	4.8	3.2	1.6	5.6	0.8			
	② 30대 초반	196	68.9	8.7	3.6	4.1	7.7	1.0	3.6	1.0	1.0		
	③ 30대 후반	184	71.7	5.4	1.1	5.4	7.1	0.5	2.2	5.4	1.1		
	④ 40대	193	76.7	8.3	1.6	3.1	5.7		0.5	4.1			
	⑤ 50대 이상	78	73.1	7.7	2.6	3.8	10.3		1.3	1.3			
직업	◎ 교수등	147	70.1	9.5	2.0	5.4	8.2		0.7	3.4	0.7		
	① 선관위	47	74.5	8.5				10.6		6.4			
	② 당정책위원	20	80.0				10.0	5.0	5.0				
	③ 국회공무원	78	62.8	6.4	2.6	6.4	9.0		1.3	7.7	3.8		
	④ 행정공무원	90	78.9	4.4		2.2	10.0		2.2	2.2			
	⑤ 판사	50	76.0	4.0		2.0	10.0	2.0	4.0	2.0			
	⑥ 검사	49	75.5		2.0	2.0	12.2		2.0	6.1			
	⑦ 변호사	99	76.8	12.1	3.0	2.0	1.0	1.0	3.0	1.0			
	⑧ 사법연수원생	99	58.6	18.2	6.1	3.0	3.0	2.0	7.1	1.0	1.0		
	⑨ 박사과정	100	69.0	12.0	5.0	9.0	2.0	1.0	2.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4	64.6	12.1	4.5	6.4	4.1	1.3	3.8	1.9	1.3		
	② 5~9년	183	75.4	7.1	0.5	3.3	8.2	0.5	2.2	2.2	0.5		
	③ 10~19년	175	76.0	6.3	1.7	1.1	8.6		1.7	4.6			
	④ 20년이상	100	73.0	7.0	2.0	5.0	8.0		1.0	4.0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5	62.9	14.3	5.1	5.7	4.0	1.7	5.1	0.6	0.6		
	② 100~199만원	177	66.7	8.5	4.0	5.1	7.9		2.8	4.0	1.1		
	③ 200~299만원	242	73.1	5.8	0.8	3.7	9.9	0.4	1.2	4.1	0.8		
	④ 300~499만원	125	80.0	8.0	0.8	2.4	4.0	0.8	0.8	3.2			
	⑤ 500만원이상	49	81.6	10.2	2.0	4.1			2.0				
계총식	① 상	124	77.4	6.5	1.6	4.0	5.6		3.2	0.8	0.8		
	② 중	566	69.8	9.2	2.3	4.8	7.4	0.7	1.9	3.2	0.7		
	③ 하	86	68.6	11.6	5.8	1.2	2.3	1.2	5.8	3.5			
성향	① 진보적	121	70.2	9.9	3.3	6.6	5.0		3.3	0.8	0.8		
	② 중도적	443	69.5	10.8	2.9	3.6	6.3	0.7	2.0	3.6	0.5		
	③ 보수적	211	74.4	4.7	1.4	4.3	8.1	0.9	3.3	1.9	0.9		
지역규모	① 대도시	427	73.8	9.4	1.6	4.0	4.9	0.7	2.3	2.6	0.7		
	② 중소도시	180	65.0	10.0	2.2	5.0	11.7	0.6	3.3	1.7	0.6		
	③ 읍 · 면 이하	166	69.9	7.2	5.4	3.6	5.4	0.6	2.4	4.8	0.6		

부 록

문 항 25. 다음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범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시오.)

나)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선거 및 정치 관련부문	② 농지 관련부문	③ 농어촌 관련부문	④ 교육 관련부문	⑤ 금융 · 조세 관련부문	⑥ 중소기업 관련부문	⑦ 노사 관련부문	⑧ 환경 관련부문	⑨ 건설 · 교통 관련부문
연령	① 20대	115	12.2	6.1	9.6	6.1	6.1	17.4	27.8	14.8		
	② 30대 초반	177	0.6	8.5	4.5	6.8	21.5	4.0	15.8	20.9	17.5	
	③ 30대 후반	171		8.8	1.8	7.6	21.1	3.5	9.9	23.4	24.0	
	④ 40대	169	0.6	11.2	4.1	11.2	19.5	4.7	5.3	21.9	21.3	
	⑤ 50대 이상	67		6.0	6.0	4.5	17.9	1.5	10.4	35.8	17.9	
직업	◎ 교수등	138	0.7	9.4	4.3	15.2	16.7	4.3	8.7	21.7	18.8	
	① 선관위	38		7.9	2.6		21.1	5.3	2.6	26.3	34.2	
	② 당정책위원	20		5.0	5.0		30.0		10.0	40.0	10.0	
	③ 국회공무원	61	1.6	6.6	1.6	8.2	19.7	6.6	11.5	23.0	21.3	
	④ 행정공무원	86		9.3	4.7	5.8	18.6	3.5	12.8	17.4	27.9	
	⑤ 판사	42		9.5	4.8	7.1	11.9	4.8	16.7	26.2	19.0	
	⑥ 검사	40		12.5	5.0	2.5	22.5			15.0	42.5	
	⑦ 변호사	91		8.8	4.4	7.7	17.6	5.5	11.0	30.8	14.3	
	⑧ 사법연수원생	88		13.6	5.7	6.8	14.8	2.3	21.6	22.7	12.5	
	⑨ 박사과정	98		10.2	3.1	10.2	18.4	5.1	12.2	30.6	10.2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287	0.3	10.5	4.2	8.4	17.8	4.2	13.9	24.4	16.4	
	② 5~9년	168		11.3	4.8	10.7	14.9	3.6	13.1	26.2	15.5	
	③ 10~19년	157	0.6	7.6	2.5	8.3	22.9	5.7	7.0	18.5	26.8	
	④ 20년이상	84		8.3	4.8	3.6	15.5	2.4	7.1	32.1	26.2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60		11.9	5.0	8.8	15.0	3.8	16.9	26.9	11.9	
	② 100~199만원	159	0.6	9.4	3.8	6.9	18.9	4.4	11.9	20.8	23.3	
	③ 200~299만원	215	0.5	7.4	3.7	7.9	19.5	4.7	6.5	26.0	23.7	
	④ 300~499만원	111		9.0	3.6	11.7	22.5	2.7	11.7	20.7	18.0	
	⑤ 500만원이상	46		15.2	6.5	2.2	8.7	4.3	17.4	32.6	13.0	
계 총 의	① 상	115		9.6	1.7	6.1	23.5	2.6	11.3	22.6	22.6	
	② 중	502	0.4	10.4	5.0	8.6	14.9	5.0	11.6	25.3	18.9	
	③ 하	83		6.0	2.4	9.6	28.9	1.2	10.8	21.7	19.3	
성 향	① 진보적	111		9.0	4.5	10.8	12.6	2.7	18.9	27.0	14.4	
	② 중도적	400	0.3	10.5	4.8	8.0	19.8	4.3	10.0	22.8	19.8	
	③ 보수적	188	0.5	8.5	2.7	7.4	17.0	4.8	10.1	27.1	21.8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386	0.3	10.6	3.4	9.6	18.4	4.1	11.1	23.8	18.7	
	② 중소도시	164		9.1	3.7	5.5	15.2	3.7	13.4	31.1	18.3	
	③ 읍·면 이하	147	0.7	8.2	6.8	8.2	19.7	4.8	9.5	19.0	23.1	

문 항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십시오.)

가)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법정 선거 비용	② 소· 종· 대선 거구, 전국 구등 선거 제도	③ 자원 봉 사 자	④ 출 구 조 사 등 여론 조사	⑤ 후 보 자 공 천	⑥ 후 보 자 재 산 누 개	⑦ 사 전 선 거 운 동	⑧ 선 관 위 회 의 할 권 한	⑨ 무 소 속 후 보 자 에 대 한 평 등
연령	① 20대	124	67.7	8.1	8.1	4.0	8.1	0.8	0.8	2.4			
	② 30대 초반	196	64.8	8.2	7.1	3.6	9.2	3.6	2.0	1.5			
	③ 30대 후반	187	65.8	8.0	3.7	3.7	10.2	1.1	3.7	3.2		0.5	
	④ 40대	194	57.7	16.0	3.1	3.1	13.4	0.5	3.6	2.1		0.5	
	⑤ 50대 이상	85	67.1	11.8		4.7	7.1	2.4	3.5	3.5			
직업	◎ 교수등	150	62.7	13.3	1.3	2.7	14.0	0.7	2.0	2.7		0.7	
	① 선관위	50	50.0	10.0	8.0		18.0	2.0	12.0				
	② 당정책위원	20	50.0	10.0	10.0	10.0	10.0		5.0	5.0			
	③ 국회공무원	79	63.3	11.4	3.8	2.5	12.7	1.3	1.3	2.5			
	④ 행정공무원	98	67.3	15.3	2.0	1.0	5.1	1.0	5.1	3.1		1.3	
	⑤ 판사	50	72.0	6.0	6.0		6.0	4.0					
	⑥ 검사	49	77.6	8.2	4.1		6.1			4.1			
	⑦ 변호사	96	62.5	10.4	3.1	6.3	10.4	2.1	2.1	3.1			
	⑧ 사법연수원생	99	65.7	5.1	9.1	7.1	6.1	3.0	2.0	2.0			
	⑨ 박사과정	98	62.2	9.2	7.1	5.1	11.2	2.0	1.0	2.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3	66.5	7.7	7.3	5.4	7.7	2.2	1.6	1.6			
	② 5~9년	183	60.1	12.6	3.3	2.2	14.8	0.5	2.2	3.8		0.5	
	③ 10~19년	178	61.8	10.7	2.8	3.9	12.9	1.7	3.4	2.2		0.6	
	④ 20년이상	108	64.8	14.8	2.8	0.9	5.6	1.9	6.5	2.8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3	63.6	7.5	8.7	5.2	9.2	1.7	1.7	2.3			
	② 100~199만원	184	67.4	12.0	4.3	1.1	8.2	2.2	3.3	1.6			
	③ 200~299만원	248	60.5	10.5	3.6	4.0	12.9	2.0	3.2	2.8		0.4	
	④ 300~499만원	126	63.5	11.9	2.4	3.2	10.3	0.8	4.0	3.2		0.8	
	⑤ 500만원이상	47	72.3	10.6	4.3	4.3	8.5						
계층 의식	① 상	126	69.0	11.9	2.4	2.4	8.7	0.8		4.8			
	② 중	573	63.2	10.5	5.2	3.8	10.3	1.4	3.1	2.1		0.3	
	③ 하	87	60.9	8.0	4.6	4.6	11.5	4.6	4.6	1.1			
성향	① 진보적	122	58.2	12.3	4.9	3.3	14.8	2.5	1.6	1.6		0.8	
	② 중도적	451	63.9	10.6	4.4	3.1	10.2	2.0	2.4	3.1		0.2	
	③ 보수적	213	67.1	8.9	5.2	5.2	7.5	0.5	4.2	1.4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2	67.4	10.4	3.7	3.9	8.1	1.6	1.6	2.8		0.5	
	② 중소도시	183	57.9	10.4	8.2	4.4	11.5	2.2	3.8	1.6			
	③ 읍·면 이하	168	61.9	10.7	3.6	2.4	13.7	1.2	4.8	1.8			

문 항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십시오.)

나)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정거 법선용	② 소· 중· 대선 거구· 전국등 선거제 도	③ 자원 봉사 자	④ 출구 조사 등여론 조사	⑤ 후보자 공천	⑥ 후보자 재산 공개	⑦ 사전 선거 운동	⑧ 선거 관련 위원회 의 할 권한	⑨ 무속 후보자 에 대한 불평등
연령	① 20대	121		5.0	7.4	8.3	21.5	4.1	18.2	20.7	14.9		
	② 30대 초반	182		5.5	7.1	8.8	17.0	8.8	12.6	23.1	17.0		
	③ 30대 후반	176		2.3	9.1	5.7	13.6	7.4	21.6	25.0	15.3		
	④ 40대	175		7.4	13.7	1.1	12.0	4.0	26.9	18.9	16.0		
	⑤ 50대 이상	68		13.2	8.8	1.5	22.1	2.9	11.8	22.1	17.6		
직업	◎ 교수등	143		9.8	8.4	7.0	18.9	5.6	13.3	21.7	15.4		
	① 선관위	45			6.7		6.7	6.7	46.7	24.4	8.9		
	② 당정책위원	17		17.6	11.8				35.3	29.4	5.9		
	③ 국회공무원	65		3.1	12.3	6.2	23.1	4.6	20.0	15.4	15.4		
	④ 행정공무원	80		7.5	13.8	7.5	12.5	5.0	21.3	12.5	20.0		
	⑤ 판사	47		4.3	8.5	4.3	12.8		21.3	42.6	6.4		
	⑥ 검사	46		4.3	19.6	2.2	15.2	4.3	30.4	13.0	10.9		
	⑦ 변호사	91		4.4	4.4	3.3	17.6	7.7	17.6	22.0	23.1		
	⑧ 사법연수원생	91		3.3	7.7	6.6	18.7	12.1	13.2	23.1	15.4		
	⑨ 박사과정	100		6.0	8.0	7.0	16.0	7.0	11.0	25.0	20.0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294		4.8	8.5	8.5	18.0	8.5	14.6	20.1	17.0		
	② 5~9년	172		4.1	7.6	5.2	18.0	2.9	23.8	26.2	12.2		
	③ 10~19년	168		7.7	8.9	3.0	10.1	6.5	21.4	23.2	19.0		
	④ 20년이상	86		8.1	17.4		16.3	3.5	20.9	18.6	15.1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65		3.6	5.5	7.3	20.0	8.5	13.3	24.8	17.0		
	② 100~199만원	164		9.1	11.0	7.9	14.6	6.7	17.7	20.1	12.8		
	③ 200~299만원	220		3.6	11.8	4.1	11.8	4.5	25.5	21.8	16.8		
	④ 300~499만원	118		7.6	9.3	0.8	21.2	3.4	19.5	19.5	18.6		
	⑤ 500만원이상	48		8.3	8.3	4.2	12.5	10.4	16.7	27.1	12.5		
계 총 식	① 상	122		5.7	10.7	5.7	21.3	4.9	17.2	18.0	16.4		
	② 중	518		5.6	9.1	5.6	17.0	6.4	20.3	21.0	15.1		
	③ 하	83		7.2	9.6	3.6	2.4	6.0	15.7	33.7	21.7		
성 향	① 진보적	118		6.8	7.6	5.9	9.3	5.9	22.9	22.0	19.5		
	② 중도적	408		5.9	9.8	5.6	16.4	5.4	16.7	24.5	15.7		
	③ 보수적	196		4.6	9.7	4.6	19.4	8.2	22.4	16.8	14.3		
지 역 규 모	① 대도시	399		6.3	9.8	5.8	16.5	7.0	19.0	21.3	14.3		
	② 중소도시	171		4.7	7.0	5.8	15.2	5.8	20.5	22.2	18.7		
	③ 읍·면 이하	150		6.0	10.7	4.0	16.0	4.0	18.0	24.0	17.3		

문항 27.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③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④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연령	① 20대	126	2.4	2.4	68.3	27.0
	② 30대 초반	198	1.5	1.5	67.2	29.8
	③ 30대 후반	191	6.8	2.6	71.2	19.4
	④ 40대	196	6.1	6.1	64.3	23.5
	⑤ 50대 이상	86	17.4		58.1	24.4
직업	◎ 교수등	150	5.3		58.0	36.7
	① 선관위	50	14.0	16.0	60.0	10.0
	② 당정책위원	20	5.0	5.0	60.0	30.0
	③ 국회공무원	80	2.5	2.5	80.0	15.0
	④ 행정공무원	100	14.0	6.0	62.0	18.0
	⑤ 판사	50	4.0		80.0	16.0
	⑥ 검사	50	2.0		80.0	18.0
	⑦ 변호사	100	5.0	3.0	68.0	24.0
	⑧ 사법연수원생	100	1.0	1.0	76.0	22.0
	⑨ 박사과정	100	6.0	2.0	53.0	39.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7	2.8	1.6	67.2	28.4
	② 5~9년	186	2.7	2.7	71.5	23.1
	③ 10~19년	182	8.8	3.8	64.3	23.1
	④ 20년이상	108	15.7	5.6	61.1	17.6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3.4	2.3	69.3	25.0
	② 100~199만원	185	5.4	5.4	63.2	25.9
	③ 200~299만원	251	8.4	2.8	69.3	19.5
	④ 300~499만원	127	7.9	0.8	62.2	29.1
	⑤ 500만원이상	50		2.0	68.0	30.0
계층의식	① 상	126	5.6	4.0	64.3	26.2
	② 중	582	5.8	3.1	67.2	23.9
	③ 하	89	6.7		65.2	28.1
성향	① 진보적	125	4.8	1.6	52.8	40.8
	② 중도적	455	5.9	3.7	69.0	21.3
	③ 보수적	216	6.5	1.9	69.0	22.7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3.4	2.1	65.0	29.5
	② 중소도시	185	7.6	3.2	73.5	15.7
	③ 읍·면 이하	172	10.5	4.7	63.4	21.5

부 록

문 항 28.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보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낙태는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연령	① 20대	126	30.2	63.5	6.3
	② 30대 초반	198	18.7	71.7	9.6
	③ 30대 후반	191	17.8	71.2	11.0
	④ 40대	196	22.4	67.3	10.2
	⑤ 50대 이상	86	31.4	57.0	11.6
직업	◎ 교수등	150	18.0	64.7	17.3
	① 선관위	50	22.0	72.0	6.0
	② 당정책위원	20	55.0	30.0	15.0
	③ 국회공무원	80	25.0	67.5	7.5
	④ 행정공무원	100	18.0	73.0	9.0
	⑤ 판사	50	20.0	78.0	2.0
	⑥ 검사	50	28.0	60.0	12.0
	⑦ 변호사	100	26.0	68.0	6.0
	⑧ 사법연수원생	100	21.0	70.0	9.0
	⑨ 박사과정	100	23.0	67.0	10.0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7	22.4	66.9	10.7
	② 5~9년	186	20.4	69.4	10.2
	③ 10~19년	182	24.7	68.1	7.1
	④ 20년이상	108	23.1	64.8	12.0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6	23.9	65.9	10.2
	② 100~199만원	185	19.5	71.9	8.6
	③ 200~299만원	251	21.5	67.7	10.8
	④ 300~499만원	127	23.6	65.4	11.0
	⑤ 500만원이상	50	24.0	68.0	8.0
계층	① 상	126	29.4	61.9	8.7
	② 중	582	21.5	68.6	10.0
	③ 하	89	20.2	68.5	11.2
성향	① 진보적	125	29.6	58.4	12.0
	② 중도적	455	21.3	69.0	9.7
	③ 보수적	216	21.8	69.0	9.3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7	23.3	64.8	11.9
	② 중소도시	185	18.4	73.5	8.1
	③ 읍·면 이하	172	25.0	68.0	7.0

문 항 29.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정부형태 부문(의원내각제 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② 통일정책 부문(영토조항 등)	③ 헌법재판소 위상의 재정립	④ 기본권 부문	⑤ 기타
연령	① 20대	124	23.4	40.3	16.9	17.7	1.6	
	② 30대 초반	195	26.7	30.3	13.3	26.2	3.6	
	③ 30대 후반	185	37.3	23.2	11.9	24.9	2.7	
	④ 40대	190	42.6	22.1	10.0	21.6	3.7	
	⑤ 50대 이상	85	48.2	15.3	14.1	16.5	5.9	
직업	◎ 교수등	148	35.1	22.3	18.2	18.9	5.4	
	① 선관위	48	52.1	16.7	2.1	29.2		
	② 당정책위원	20	60.0	10.0	5.0	25.0		
	③ 국회공무원	80	43.8	21.3	6.3	26.3	2.5	
	④ 행정공무원	96	35.4	26.0	9.4	25.0	4.2	
	⑤ 판사	48	47.9	16.7	18.8	16.7		
	⑥ 검사	49	40.8	28.6	4.1	18.4	8.2	
	⑦ 변호사	97	34.0	23.7	12.4	24.7	5.2	
	⑧ 사법연수원생	97	21.6	50.5	15.5	9.3	3.1	
	⑨ 박사과정	99	17.2	28.3	20.2	34.3		
종사 기간	① 5년미만	311	27.0	34.1	13.5	22.2	3.2	
	② 5~9년	182	32.4	23.1	13.2	27.5	3.8	
	③ 10~19년	175	43.4	22.3	12.0	19.4	2.9	
	④ 20년이상	107	48.6	16.8	12.1	19.6	2.8	
개인 소득	① 100만원미만	172	20.9	43.0	15.7	19.2	1.2	
	② 100~199만원	181	32.0	20.4	13.3	30.4	3.9	
	③ 200~299만원	245	42.0	22.4	10.6	20.0	4.9	
	④ 300~499만원	125	43.2	20.0	14.4	20.0	2.4	
	⑤ 500만원이상	48	35.4	27.1	8.3	27.1	2.1	
계층 의식	① 상	123	33.3	22.0	14.6	23.6	6.5	
	② 중	570	36.5	26.3	13.0	21.4	2.8	
	③ 하	86	26.7	33.7	9.3	29.1	1.2	
성향	① 진보적	122	29.5	34.4	9.8	23.8	2.5	
	② 중도적	446	34.5	24.9	13.5	23.8	3.4	
	③ 보수적	210	39.0	24.8	13.8	19.0	3.3	
지역 규모	① 대도시	432	31.3	28.0	15.0	21.5	4.2	
	② 중소도시	177	32.8	27.1	13.0	24.3	2.8	
	③ 읍·면 이하	167	46.7	22.2	7.2	22.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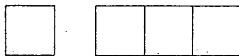
부 록

문 항 30. 선생님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 발전방향이 다음중 어느 분야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민주법치 국가 완성을 위한 법제기능	② 민족동질 성 확보를 위한 통일 법제마련	③ 국제화시대에 부응 하는 법제 정비	④ 첨단과학 및 정보화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⑤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법제 정비	⑥ 기타
연령	① 20대	124	22.6	24.2	21.0	12.1	20.2	1.0	
	② 30대 초반	197	34.0	19.8	14.2	12.7	18.3		
	③ 30대 후반	188	31.4	16.0	15.4	9.6	27.7		
	④ 40대	194	32.0	13.4	14.9	9.8	29.9		
	⑤ 50대 이상	86	30.2	17.4	24.4	15.1	12.8		
직업	◎ 교수등	148	35.8	13.5	19.6	7.4	23.6	2.5	
	① 선관위	50	30.0	14.0	22.0	6.0	28.0		
	② 당정책위원	20	20.0	30.0	10.0		40.0		
	③ 국회공무원	80	27.5	20.0	12.5	10.0	27.5		
	④ 행정공무원	99	30.3	15.2	16.2	17.2	21.2		
	⑤ 판사	49	38.8	8.2	14.3	6.1	32.7		
	⑥ 검사	50	28.0	24.0	16.0	16.0	16.0		
	⑦ 변호사	98	33.7	18.4	13.3	12.2	22.4		
	⑧ 사법연수원생	99	26.3	28.3	16.2	12.1	17.2		
	⑨ 박사과정	99	27.3	14.1	22.2	16.2	20.2		
종사기간	① 5년미만	313	27.8	20.1	17.3	11.5	22.7	0.6	
	② 5~9년	185	35.7	20.0	12.4	9.7	22.2		
	③ 10~19년	179	29.6	12.3	18.4	15.1	24.6		
	④ 20년이상	108	32.4	15.7	21.3	7.4	23.1		
개인소득	① 100만원미만	174	24.7	21.8	18.4	16.1	19.0	1.1	
	② 100~199만원	184	29.3	19.0	15.2	11.4	23.9		
	③ 200~299만원	249	33.7	15.7	16.9	8.0	25.7		
	④ 300~499만원	125	31.2	14.4	20.8	13.6	20.0		
	⑤ 500만원이상	49	34.7	18.4	10.2	8.2	28.6		
계층의식	① 상	125	31.2	15.2	18.4	12.0	23.2	0.3	
	② 중	576	31.3	18.2	17.4	10.8	22.0		
	③ 하	88	25.0	18.2	12.5	13.6	30.7		
성향	① 진보적	123	31.7	20.3	13.0	10.6	24.4	0.9	
	② 중도적	449	31.6	17.4	16.9	11.1	22.9		
	③ 보수적	216	28.2	16.7	19.4	11.6	23.1		
지역규모	① 대도시	432	30.6	17.8	16.9	11.6	22.9	0.2	
	② 중소도시	183	30.6	17.5	15.8	9.8	25.7		0.5
	③ 읍·면 이하	171	29.2	18.1	18.7	12.3	21.6		

V. 설문지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에 대한 법전문가의 생각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법제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후원하고 입법정책을 지원하여 주시는 뜻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통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996년 5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백 남진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	1	0
-	0	6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TEL (02) 722-0162 FAX : (02) 722-2900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박 상 철
선임연구원	김 일 환
선임연구원	최 철 영

설문지 기입요령

1. 이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평소의 느낌이나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한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2. 각 문항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점선 이하는 통계처리를 위한 공란이오니 표기하지 마십시오.

법에 대한 선생님의 느낌과 생각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_____ 1) 공평하다
_____ 2) 민주적이다
_____ 3) 엄격하다
_____ 4) 편파적이다
_____ 5) 권위적이다

2.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_____ 1) 바람직하다
_____ 2) 합리적이다
_____ 3) 물인정하다
_____ 4) 불쾌하다

3.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선생님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최고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 2) 최고제한속도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5) 기타 (자세히 : _____)

법생활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과 의견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 록

가)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2)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2) 공무원
 3) 법조인
 4) 기업인
 5) 근로자
 6) 교육자
 7) 대학생
 8) 기타 (자세히 : _____)

7.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 정치부문				
나) 행정부문				
다) 경제부문				
라) 노사부문				
마) 교육부문				
바) 교통부문				
사) 환경부문				

8. 선생님께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1 가지만 고르시오.)

가)

- 1) 부정부패
- 2) 탈세
- 3) 부동산투기사범
- 4) 환경사범
- 5) 공안사범
- 6) 기타 (_____)

나)

- 1) 성폭행
- 2) 조직폭력배
- 3) 마약사범
- 4) 강·절도사범
- 5) 음주운전
- 6) 기타 (_____)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 4) 가정과 학교에서의 준법교육
-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6) 기타 (자세히 : _____)

10. 선생님은 각종 법령을 주로 어떻게 알게 됩니까?

- 1)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보고서
- 2)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 3) 관보를 보고서
- 4)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 5) 각종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 6) 기타 (자세히 : _____)

부 록

11. 특정 전문분야(유전자 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 전문가가 전문분야를 직접 연구하기 보다는 그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적으로 찬성한다
- 2) 대체로 찬성한다
-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2.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법률자문에 응할 때 이들이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대체로 잘 알고 있다
- 3) 별로 알고 있지 않다
- 4) 전혀 모르고 있다

13. 다음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선생님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나) 선생님은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 5) 기타 (자세히 : _____)

14. 선생님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2) 대충 본다
 3) 보지 않는다

15.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 끝까지 따져서 바꿔 온다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16. 선생님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4) 기타 (자세히 : _____)

입법·행정·사법 등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7.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8. 우리나라의 입법예고제는 일반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법 전단계에서 법률상 문제를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고대상법률의 확대
 2) 예고수단의 다양화
 3) 예고사항의 구체화

부 록

- _____ 4) 제출된 의견의 반영도 제고
_____ 5) 입법예고 전담부서의 신설
_____ 6) 기타 (자세히 : _____)

19.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중 의원입법이 전체의 입법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부문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국회사무처내 입법지원부서 확충과 예산증액
_____ 2) 입법지원을 위한 의원보좌관 확충
_____ 3) 정당의 입법활동의 충실회
_____ 4)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
_____ 5) 기타 (자세히 : _____)

20. 선생님은 일선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 _____ 1) 그렇다
_____ 2) 대체로 그렇다
_____ 3) 별로 그렇지 않다
_____ 4) 전혀 그렇지 않다

21. 최근까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 문제와 법조인양성방식에 관하여는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가) 현행(1996년) 사법시험선발인원은 500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법조인선발인원 숫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300여명
_____ 2) 500여명
_____ 3) 700여명
_____ 4) 1000여명
_____ 5) 기타 (자세히 : _____)

나) 이른바 “로-스쿨” 도입논쟁으로 인하여 현행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 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행방식유지(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선발)
 2) "로-스쿨" 방식도입(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3) 기타 (자세히 : _____)

2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하지 않다

24. 다음의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공정하다	2) 대체로 공정하다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다) 과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현행법령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25. 다음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시오.)

- 1) 선거 및 정치관련부문
- 2) 복지관련부문
- 3) 농어촌관련부문
- 4) 교육관련부문
- 5) 금융·조세관련부문
- 6) 중소기업관련부문
- 7) 노사관련부문
- 8) 환경관련부문
- 9) 건설·교통관련부문

26. 최근(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무성합니다. 선생님은 잘 지켜지는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중 어떤 부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2 가지를 고르십시오.)

- 1) 법정선거비용
- 2) 소·중·대선거구, 전국구 등 선거제도
- 3) 자원봉사자
- 4)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 5) 후보자공천
- 6) 후보자재산공개
- 7) 사전선거운동
- 8)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 9) 무소속입후보자에 대한 불평등

27.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성동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4)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28.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3)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낙태는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29.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부형태 부문(의원내각제 또는 4년중임 대통령제)
 2) 통일정책 부문(영토조항 등)
 3) 헌법재판소 위상의 재정립
 4) 기본권 부문
 5) 기타 (자세히 : _____)

30. 선생님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발전방향이 다음중 어느 분야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민주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법제기능
 2)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일법제 마련
 3)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법제정비
 4) 첨단과학 및 정보화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5)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법제 정비
 6) 기타 (자세히 : _____)

설문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2. 선생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선생님의 학력은?

_____ 1) 고졸 이하

_____ 2) 대졸

_____ 3) 대학원 이상

4. 선생님과 선생님댁의 한 달 평균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가) 개인소득

_____ 1) 없다

_____ 2) 100만원 이하

_____ 3) 100만원 ~ 149만원

_____ 4) 150만원 ~ 199만원

_____ 5) 200만원 ~ 249만원

_____ 6) 250만원 ~ 299만원

_____ 7) 300만원 ~ 399만원

_____ 8) 400만원 ~ 499만원

_____ 9) 500만원 이상

나) 가계소득

_____ 1) 없다

_____ 2) 100만원 이하

_____ 3) 100만원 ~ 149만원

_____ 4) 150만원 ~ 199만원

_____ 5) 200만원 ~ 249만원

_____ 6) 250만원 ~ 299만원

_____ 7) 300만원 ~ 399만원

_____ 8) 400만원 ~ 499만원

_____ 9) 500만원 이상

5. 선생님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_____ 1) 미혼

_____ 2) 기혼(별거 · 이혼 · 사별 등 포함)

6.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 1) 불교

- 2) 기독교(개신교)
 3) 카톨릭교(천주교)
 4) 유교
 5) 민족종교(원불교·천도교·증산교·대종교 등)
 6) 없다
 7) 기타 (_____)

7. 선생님의 주된 성장지는 어느 곳입니까? (만 20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

가) 지 역

- | | |
|------------------------------------|------------------------------------|
| <input type="checkbox"/> 01) 서울 | <input type="checkbox"/> 07) 광주·전남 |
| <input type="checkbox"/> 02) 인천·경기 | <input type="checkbox"/> 08) 대구·경북 |
| <input type="checkbox"/> 03) 강원 | <input type="checkbox"/> 09) 부산·경남 |
| <input type="checkbox"/> 04) 충북 | <input type="checkbox"/> 10) 제주 |
| <input type="checkbox"/> 05) 대전·충남 | <input type="checkbox"/> 11) 이북 |
| <input type="checkbox"/> 06) 전북 | <input type="checkbox"/> 12) 해외 |

나) 규 모

- 1)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2) 중소도시
 3) 읍·면·이하

8. 선생님은 현재의 직종에 몇년동안 종사하셨습니까?

(_____ 년)

9. 선생님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2) 잘 사는 편이다
 3) 중간 정도이다
 4) 못 사는 편이다
 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쭈워 보고자 합니다.

10. 선생님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부가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 2) 가급적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
- 3) 남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선생님은 여성의 흡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괜찮다
- 2) 가급적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 3) 안된다

12.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진보적이다
- 2) 중도적이다
- 3) 보수적이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96-10

法專門家의 法意識調査 研究

1996년 12월 25일 印刷

1996년 12월 31일 發行

發 行 人 朴 松 圭

發 行 處 **한국법제연구원**

印 刷 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a0190호

값 8,0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20-7 93360

